

2009년

# 자본시장 제도동향

2010

연구위원      김갑래  
연구위원      이승진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서 언

2009년은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우리 자본시장이 금융혁신과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시기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금융규제강화의 추세 속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금융규제완화라는 자본시장법 본래 취지를 이행하며 양자 간에 균형을 이룬 발전을 추구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EF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시장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펀드판매보수를 규제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 신뢰에 바탕을 둔 장기적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균형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한해 동안 우리 자본시장법 체제는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반면, 투자은행(IB)의 육성이나 금융혁신의 촉진에 있어서는 미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미비점은 향후 대형 IB가 다수 등장하고 혁신적 금융투자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잘 구축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제도동향」은 발전하는 자본시장에 관한 법과 제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본 보고서는 2009년 한해 동안의 자본시장 제도변화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본문과 부록의 2원적 체제로 편성되었다. 먼저 본문에서는 자본시장제도의 변동사항을 자본시장·금융투자업·감독행정·상장법인·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등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서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융위원회규정·한국거래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보고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연구위원과 이승진 연구원에 의하

여 작성되었다. 저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원고 정리와 편집을 담당한 김지희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가 우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0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 형 태

# 목 차

<b>I. 자본시장</b> .....	<b>1</b>
1. 주식시장 .....	1
2. 채권시장 .....	41
3. 파생상품시장 .....	47
4. 예탁, 결제, 청산 .....	78
5. 기업공시 .....	108
<b>II. 금융투자업</b> .....	<b>123</b>
1. 금융투자회사 .....	123
2. 집합투자기구 .....	133
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149
<b>III. 감독행정</b> .....	<b>167</b>
1. 법적규제기관 .....	167
2. 자율규제기관 .....	171
<b>IV. 상장법인</b> .....	<b>189</b>
1. 기업경영감시 .....	189
2. 지원·관리제도 .....	194
<b>V. 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b> .....	<b>196</b>
1. 일반기업 .....	196
2. 금융기관 .....	197
<b>VI. 기타</b> .....	<b>204</b>

## <부 록> 규정별 변경내용

<b>I. 법령 등</b> .....	<b>219</b>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1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3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31
4. 상법 .....	232
5. 상법 시행령 .....	234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38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9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240
9. 부동산투자회사법 .....	242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242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43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4
13. 한국산업은행법 .....	245
1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246
1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	247
16. 금융지주회사법 .....	248
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51
18. 은행법 .....	253
19. 은행법 시행령 .....	255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256
21. 상법 회사편 개정안 .....	258
22.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	263

<b>II. 금융위원회 규정</b> .....	<b>272</b>
1. 금융투자업 규정 .....	272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78
3.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85
4.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	286
5.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	287
6.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	288
7.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	288
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289
9.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	290
<b>III. 한국거래소 규정</b> .....	<b>292</b>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292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299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312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320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324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329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332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340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356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359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363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368
1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371
14.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384

15. 선물시장 업무규정 .....	396
16.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396
17. 시장감시규정 .....	398
1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399
19. 시장감시위원회 운영규정 .....	403
20.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	404
21. 회원관리규정 .....	404
<b>IV. 금융투자협회 규정 .....</b>	<b>406</b>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406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418
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419
4.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425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427
6.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433
7.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433
8.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	434

# I. 자본시장

## 1. 주식시장

### 가. 발행시장

####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시 예비인가제도 적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비인가제도를 적용하되, 변경인가 시에도 최초인가와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
  -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

#### □ 유상증자시 발행가격 산정방법 변경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1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할인율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 폐지
  - \* 발행가 : 기준가격(이론권리락주가)에서 할인율로 할인하여 결정

#### □ 제3자 배정 증자시 기준주가 산정방법 변경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1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제3자 배정시 최근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던 기준주가를 “청약일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 1항 : 2009/7/6 개정 · 시행)

— 일반공모 및 3자배정 증자 기준주가 산정방법 정비

- 발행가액 산정방식의 통일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자배정의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일반공모증자와 동일하게 규정

□ 외국기업의 국제공시기준(IDS) 선택 허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11조 1항 4호 : 2009/1/28 제정, 2/4 시행)

—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시기준(IDS)의 사용을 인정하여 외국기업의 부담을 경감

□ 파생결합증권 발행인 요건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1조의2 1항 1호, 43조 1호 등 : 2009/1/28 개정, 2/4 시행)

- 금융기능별 규제체제를 반영하여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대상 투자 매매업자에게 발행인 자격 허용
-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상장요건 중 발행인 자격요건으로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상장폐지시는 200% 미만)은 유지

□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조 1항~2항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 · 증서 시장을 개설하고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로 하여 정규시장으로 한정함
  - 제도의 시행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안)(2009/9/29 입법예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신주인수권증권**

일정기간(행사기간)내에 당해회사에 대하여 신주 발행을 청구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증권으로, 보통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함. 사채와 해당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으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분리형 사채의 발행에 있어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해야 함(상법 516조의5)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사채 발행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행사기간 내에 일정 수의 발행회사 주식을 일정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할 것을 사채발행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라고 하며, 워런트채라고도 함. 사채액면이 주식으로 전환돼 사채가 소멸되는 전환사채(CB)와는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시점에 신주대금납입을 통해 신주가 발행, 교환된 이후에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차이가 있음

**신주인수권증서(Warrant)**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주주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신주인수권)를 증서로 나타내어 주주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가 가능함

**나. 유통시장**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 축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 제한
  -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의결권 공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보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분자 본인도 공개매수, 주식등의 대량 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으로 규정

□ 공매도 규제 근거 명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8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조~51조 : 2009/7/1 개정·시행)

-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한해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하고,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의 정보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4조 3항~4항, 155조 : 2009/7/1 개정·시행)

- 신규 보고의 경우에는 경영참여 목적을 불문하고 보고기한을 5일 이내로 함
  - 사후에 보유목적 변경을 통한 경영권 위협에 대처하게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주식 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연장
-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고 공공성이 높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시부담을 경감

□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 단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조 1항 : 2009/7/1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그 정보의 주지기간을 공개 이후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
  - 정보전달매체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있어서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

□ 공개매수의 면제사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조 13호 : 2009/1/28 제정, 2/4 시행)

- “공개매수 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 개시 이전 대차하여 매도한 주식의 상환을 위한 장내매수”를 공개매수 면제사항에 추가

□ 주채무계열의 재무개선 목적 주식처분시 해당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의무 면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조 14호 : 2009/9/16 개정·시행)

## 주채무계열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해 전년도말 은행권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며,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채무도 회수해야 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143조)은 주식의 장외매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공개매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융위의 공개매수 예외사유를 추가적으로 마련함
  - 원칙적으로 장외에서 10명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매수자는 금융위 신고와 일간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매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133조 3항, 동법 시행령 140조 2항)
- 주채무계열이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채무구조 개선 약정(MOU)에 따라 채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당해 주채무계열 및 공동보유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함
  - 주채무계열이 내놓은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매수자는 금융위의 신고 및 공고 등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 명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54조 1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201조 3항)에 따라 미공개정보이용이 금지되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으로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을 10% 또는 최대주주가 되거나 벗어나는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

□ 공매도규제 관련 제도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7조 3항~4항, 18조 2항, 44조의2~3 : 2009/1/28 개정, 2/4 시행)

-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 결제가능여부 확인의무를 부과
  - 확인면제 제도는 폐지
- 시장안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차입공매도 제한 대상종목은 차입공매도 집중종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으로 함
- 외국주식예탁증권과 원주와의 차익거래와 ETF LP 및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를 가격제한(up-tick rule) 예외사유로 추가
-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추어 주식관련사채권 등으로 공매도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호가 및 가격제한 등은 주식 공매도규제 방법을 준용

□ 용어정비 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조, 20조의2, 55조, 71조의2 : 2009/1/28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상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종전 거래법의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용어를 업무규정으로 수용
-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기능별로 구분된 영업인가단위를 반영하여 LP 및 채권딜러 자격요건을 정비
  - 주식 LP : 주식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
  - ETF LP :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지정참가회사
  - ELW LP :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3배 이상일 것
  - 국채딜러 : 국채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 받은 자

- 소매딜러 : 채무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허가 받은 자
- 외국주식예탁증권(KDR)이 LP 대상증권임을 명시

□ 차입공매도 주문 확인내용 및 확인절차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7조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회원은 차입공매도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보관
  - 종래 결제이행확약서제도는 차입공매도 확인방법에서 삭제

□ 차입공매도 미실행확약서(long sell confirmation)제도 도입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7조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계좌에서 차입공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 조치를 한 경우는 확인의무 이행으로 간주

□ 공매도규정 준수여부 확인체계 구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8조의2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결제일에 결제부족이 발생한 위탁자에 대해 공매도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
  - \* 결제부족 : 증권보유잔고(수탁·보관은행 잔고 + 차입 수량)가 당일 결제수량(매도수량) 보다 적은 경우
- 신탁업자(보관기관)는 회원이 결제부족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등(전자우편, 전자통신방법 포함)으로 결제부족사유, 결제부족수량 등을 회원에 통보

□ 공매도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7조 4항, 18조의2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공매도규정 위반자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0일간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회원이 차입계약 성립사실을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
  - 최근 6개월 동안 공매도규정 위반 일수가 2일 이상이거나 공매도규정 위반금액이 10억원(1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차입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의 예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44조의3 : 2009/3/4 개정, 3/16 시행)

- 수익증권의 조성호가에 대해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의 예외로 인정

□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제한 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2 3항 : 2009/4/15 개정, 4/2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 급감 및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제한 적용시기를 정비
  - 유동성공급자(LP)의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3배(영업용순자본비율 300%) 미만이 될 경우 이미 체결한 유동성공급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을 허용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금액기준에서 비율기준으로 변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4 1항 2호 : 2009/7/16 개정, 7/17 시행)

- 호가스프레드범위를 국내기초자산 추적시 2%, 해외기초자산 추적시 3% 이내에서 신고한 비율로 규정

□ ETF의 괴리율기준에 의한 상장폐지 기준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4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괴리율기준(3%) 위반시 상장폐지요건과 유동성공급회원 교체요건에  
동시 적용되는 이중규제를 해소
  - 상장규정상 괴리율기준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을 업무규정상 유동성공  
급회원의 괴리율 준수 의무로 단일화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괴리율기  
준 미충족시 상장폐지
- 국내자산 추적 ETF의 경우 괴리율 기준을 3%로, 해외자산추적  
ETF의 경우 괴리율 기준을 6%로 적용

□ 공매도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전 확인수단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3 2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공매도규정 위반자의 차입공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계약서  
또는 대차중개기관의 대차거래확인서를 징구

□ 공매도규정 위반자 통보기준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4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공매도 위반자 통보기준 중 최근 6개월의 기간 산정은 “거래소가  
확인한 날”을 기산일로 함

□ 투자자분류 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4조 1항 6호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투자자 속성과 무관한 외국인투자자분류코드(9000)는 폐지
  -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속성(은행, 보험, 개인 등)에  
따라 구분코드 입력·관리
- 정부(7000)와 기타법인(7100)을 별도 코드로 구분 관리

□ 호가입력 관련 제도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조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호가입력내용의 체계적 정비

	변경 내용
호가유형 구분 체계화	- 시장(정규 및 시간외) 구분 -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유형(종가, 단일가, 대량매매 등) 구분 - 순수 호가유형(5종류)으로 호가 종류 단순화
시장관리기능	- 차익거래(4종류→6종류), 주식집단매매거래(2종류→3종류) 세분화 - 자기주식취득·처분의 경우 매매방법에 따른 구분 추가 - 미수동결계좌 구분 신설

- 상대매매(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호가입력항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쟁매매와 구분하여 명시
  - 협상번호, 협상자명 등 고유 입력항목 명시
-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 변경시 회원의 거래소 통보 의무 신설 및 그 밖에 호가입력에 관한 세부사항을 거래소가 회원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장참가자 편의제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조 1항~2항, 34조 3항 3호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 결정 후 상·하한가를 벗어난 호가에 대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취소할 필요가 없도록 거래소시스템이 일괄 취소 처리
- 호가폭주 등으로 채무증권의 호가접수중단이 된 경우에는 증권 등과 달리 기 접수된 호가에 대해서 가격이 합치되면 매매가 체결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이 최저호가가격단위(5원)로 결정된 경우는 시가 결정시 접수된 호가에 대해 동시호가 배분방식을 적용

□ 매매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조 1항, 17조, 56조 2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상한가(하한가)인 매수(매도)의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장종료 단일가 시 우선순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상한가 또는 하한가 입력을 제한
-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및 최우선지정가의 호가정정시 정정 전·후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가정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각기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을 제한
-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시 호가접수시간이 10분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다음 매매체결시점까지 호가접수시간 연장

□ 기타 전산시스템 변경 사항의 반영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조 1항, 11조 1항, 52조 7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호가 1회당 입력수량 1억주 한도 폐지
- 시간외 상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을 매매거래시간에 맞추어 변경
  - 15:00~18:00 → 15:10~18:00
- K-BloX 시스템 자체 장애시에는 시간외대량매매는 체결시키지 않음

□ 신주인수권증서(권)의 매매수량단위 변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3조 1항 : 2009/8/3 개정, 8/10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권)의 매매수량단위를 10증서(권)에서 1증서(권)로 하향 조정

□ 착오매매 정정신청 시간 확대 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5조 3항 : 2009/8/3 개정, 10/19 시행)

- 착오매매 정정신청 시한을 착오발생 다음 매매일의 15시까지로 확대하고, 정정 신청시 사유서 등의 제출의무 폐지

□ 권리락 기준가 조정 시 발행가격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2 2. 주3 : 2009/8/3 개정, 8/10 시행)

- 상장법인이 발행가를 공시한 경우는 그 가격으로, 발행가액 산식을 공시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산식에 따라 발행가를 적용
- 상장법인이 발행가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준주가, 할인율 등의 가산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정해진 발행가액 산식에 따라 거래소가 발행가를 산정
  -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1+무상비율+유상비율×할인율)
  - 거래소의 발행가액 산정시 이용되는 기준주가의 산출 기준일이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의 경우는 주주확정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출

□ 증권의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1항, 2조 16항, 3조 3항 등 : 2009/1/28 개정, 2/4 시행)

- 유가증권의 명칭을 증권으로 변경하고, 전통적 유가증권 개념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6가지 증권으로 분류
  -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에 맞추어 종전 채권으로 분류하던 일부 수익증권(MBS등) 및 추가연계증권(ELS)을 각각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

□ 상장대상 증권범위 포괄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1항, 25조 1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상장대상 유가증권을 열거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권 출현 및 상장에 대비

□ 전문투자자 개념 도입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27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산정시 제외되는 개념인 기관투자자 개념을 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 개념으로 전환

□ 해산사유 등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1항 14호 : 2009/1/28 개정, 2/4 시행)

- 해산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관리 및 투자자 보호

□ 발행인의 유동성공급자(LP) 의무화 및 제3자 LP의 예외적 허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1조의2 1항 6호 : 2009/4/15 개정, 4/2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은 원칙적으로 발행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되, 제3자 유동성공급자(LP)의 파산시에도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 LP를 허용

□ 전문투자자의 범위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조의2 : 2009/2/3 개정, 2/4 시행)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범위를 종전 기관투자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 거래소가 전문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가연계증권의 상장신청서류 및 신고사항 등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3조의3, 35조의5 : 2009/2/3 개정, 2/4 시행)
  - 종전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던 추가연계증권의 상장 및 관리 등을 위해 상장신청서류 및 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규정 신설
  
- 유동성공급계약요건 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의3 : 2009/4/16 개정, 4/20 시행)
  - 유동성공급계약서에 LP 보유 ELW의 질권설정을 의무화
  - ELW LP의 자격 박탈시 발행인에게 유동성공급 의무를 부여
  - LP가 분기별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1개월간 해당 발행사의 신규 유동성공급 계약을 제한
  - 제3자 LP의 경우 질권설정을 담보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이 설정된 ELW 잔고증명서, 유동성공급회원의 본점이 승인한 질권설정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ELW 발행인·LP의 재무상황 공시 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5조의2 1항 11호 : 2009/4/16 개정, 4/20 시행)
  - ELW 발행인 및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매월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발행인의 신고사항을 추가
    - ELW 발행인의 신고의무에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추가함에 따른 별지 (영업용순자본비율 보고서) 신설
  
-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조의2 : 2009/4/16 개정, 4/20 시행)
  - ELW 발행인의 재무상황을 매월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월별 업무 보고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제외

□ 주식배당 예고기한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마목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예정내용을 “사업연도말 10 일전까지” 투자자에게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투자정보의 중요성 및 시장조치 측면에서 일정 시점까지 투자자에 대한 주식배당 예고사항의 공표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함

□ 현금배당시 시가배당률 산식 위임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마목 : 2009/7/1 개정, 7/6 시행)

-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도록 명확화

□ 전문투자자의 정의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조 2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법인세법 시행령(17조의2 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일부를 선별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 현금배당 신고의 기준이 되는 시가배당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4조의2 : 2009/7/2 개정, 7/6 시행)

- 현금배당 신고의 기준이 되는 시가배당률 산식 신설
  - 시가배당률 :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 주식배당 예고기한 계산방법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5조 2호 : 2009/7/2 개정, 7/6 시행)

-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의 기간계산은 매대일이 아닌 역(calendar)에 의하여 계산함을 명확화

□ 공매도 제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2 1항~4항, 9조의3 1항~2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공매도로 보지 않는 매도 및 차입공매도 제출시 회원과 위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업무규정에서 재차 확인함
- 차입공매도 제출 제한 허용
  - 예측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및 시장조치간 절차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제한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하지 못하지만,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를 확대
  - ELW LP, ETF LP 및 선물시장 시장조성자가 유동성공급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와 주식(외국주식에탁증권)과 주식선물·옵션(원주)간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을 하지 않음

□ 차입공매도 확인시 내용 및 절차 명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2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
  - 다만, 예탁(보관)기관의 확인서는 활용 빈도가 낮고, 결제이행확약서는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곤란하므로 폐지

□ 차입공매도 미실행확약 제도(long sell confirmation) 도입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2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실행  
확약을 받은 투자자에 대해 전산적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매도 명시 및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공매도 규정 준수 확인체계의 구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4 1항~2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결제부족을 직접 확인한 위탁자와 신탁업자 등으로부터 통보받  
은 위탁자에 대해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
- 거래소는 해당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 거래소는 관련 회원에게 통보하고 해당 회원은 그 사실을 다른 회원  
에게 통보

□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9조의2 4항, 9조의4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간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시에 차입증빙 자료  
를 확인
  - 최근 6개월간 공매도 위반 횟수가 2일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거래대금이 1일 10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

□ 현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제도(사이드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3조 1항 : 2009/7/1 개정, 7/6 시행)

- 비정상적인 선물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이드카의 발동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가격의 변동에 선물거래 대상지수의 변동  
을 추가하여 사이드카를 발동함

기 준	개 정
선물가격이 $\pm 6\%$ 변동하여 1분간 지속	선물가격 $\pm 6\%$ & 선물거래 대 상지수 $\pm 3\%$ 변동하여 1분간 지속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 대한 호가의 가격제한폭 미적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14조 1항~2항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의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하여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음
  -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펀드의 경우는 호가가격을 상·하한가 15% 이내로 제한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5조 2항 : 2009/10/21 개정)

- 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정지시 해당 주권을 기초 주권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실질심사대상 종목의 대응증권 지정 배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4조 6호 : 2009/1/16 개정, 2/4 시행)

- 실질심사대상 종목은 상장폐지 우려에 따른 담보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심사 기간 동안은 대상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대응증권 지정에서 배제

□ 차입공매도 통보 방법의 기록·유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5 1항 : 2009/3/12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차입공매도 관련 사항의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등을 통보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

□ 공매도규정 위반자의 차입공매도 확인방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의5 2항 : 2009/3/12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계약서 또는 대차거래확인서를 제출받아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조의5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회원은 결제부족 위탁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3년 이상 보관
- 회원은 신탁기관 등으로부터 업무서식에 따라 결제부족 위탁자 현황을 결제일 12시까지 통보받음
- 공매도 위반자 통보기준 중 최근 6개월의 기간 산정은 “거래소가 확인한 날”을 기산일로 함

□ 호가 입력내용 변경 및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 1항~2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순수한 의미의 호가입력만 허용함에 따라 관련 구분값을 변경
  - 지정가, 시장가 등 순수한 호가유형 5개
- 대량매매와 일반매매를 구분하여 별도로 구분값을 입력
  - 일반호가 : 정규시장,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 대량호가 : 정규시장, 시간외시장
- 자기주식매매의 경우 매매목적과 매매방법으로 자사주 취득·처분을 구분
  - 자사주 매매목적 : 스탁옵션 목적, 자사주신탁, 자사주일반
  - 자사주 매매방법(가격제한등 관련) : 정부등, 한은등, 기타
-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입력 신규 도입

- 주식 · 외국주식에탁증권 차익거래
- ELW · ETF · 선물옵션 LP헤지거래

□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 변경시 통보 의무 및 호가입력사항 준수 의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 5항~6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회원에게 별도로 호가입력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 “상장주식수 5% 초과”의 계산방법 변경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3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상장주식수 5% 계산시 매매수량단위 미만 주식이 발생하면 이를 매매수량단위로 절상시켜 이를 초과한 수량의 입력을 불허

□ 상한가 매수 및 하한가 매도 조건부지정가호가 입력 불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6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상한가 매수 및 하한가 매도의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결정시점에 순서가 열위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력 금지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대량매매 매매거래시간과 호가접수시간 일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조 1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호가접수의 시작시간이 매매거래시간과 일치하도록 호가접수의 시작시간을 “장종료후부터”에서 “15시 10분부터”로 변경

□ 의무스프레드비율을 초과한 LP 호가의 예외적 허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조의6 3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스프레드비율을 감안한 가격이 Tick size보다 작은 경우 1 Tick의 가격을 가감한 가격으로 LP호가 제출 허용
  - 매도호가는 최우선매수호가 + 1 Tick의 가격, 매수호가는 최우선매도호가 - 1 Tick의 가격으로 제출 가능

□ 호가의 정정 개념 명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조 3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지정가호가와 지정가호가의 성격을 보유한 최유리지정가호가·최우선지정가호가 3개(지정가·최유리·최우선)의 호가간에 호가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격 변경을 수반하도록 함
  - 가격변경 없이 조건(IOC, FOK) 부여만으로는 정정 불가
  - 동일 종류 호가간(시장가호가 제외) 정정시도 가격 변경 수반

□ 동시호가 적용 Case 추가 및 명확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9조 3항~4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출시 그 가격이 5원으로 결정되는 경우 5원으로 제출한 호가(9시 이전에 제출한 호가)는 동시호가로 적용하여 배분에 참여
- 시가 또는 장중 단일가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가격 형성이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참여한 호가는 동시호가임을 명시

□ 기세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1조 : 2009/3/19 개정, 3/23 시행)

- 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에 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당일 중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모든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 불가능

- 다만, 시가가 형성되지 않아 연장된 상태에서 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당일 중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세결정에 참여 가능

□ 랜덤엔드(Random-end) 발동예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조 1항, 25조의2 2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랜덤엔드는 시가 등 가격 결정시 가장 높거나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 등 보다 5%(시간외단일가시 3%)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발동하지만,
  - 시가(종가) 결정시 잠정적인 시가(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직전가격) 기준으로 1% 내로 변동되어 결정되는 경우이거나,
  - 시간외 단일가매매시에 잠정적인 단위매매체결시점에서의 가격이 직전가격의 1% 내로 변동되어 결정되는 경우에는 발동하지 않음

□ 대량매매 관련 시스템 장애시 처리방법 일원화 등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조의2 3항~4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K-BloX와의 접속장애 발생시 회원 또는 거래소가 협상내용을 호가하는 방식에서 회원이 호가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 K-BloX 장애로 협상내용을 코스닥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량거래를 체결시키지 않음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불성립 사유 확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 2009/3/19 개정, 3/23 시행)

-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않음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7조의2 : 2009/3/19 개정, 3/23 시행)

- 목표가주문 등에 준거가격이 되므로 보다 정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을 호가가격단위에서 1원 단위로 변경 산출

□ 관리종목에 대하여 30분 단위의 주기적 단일가매매 실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조 1항~2항 : 2009/3/30 개정, 4/6 시행)

- 관리종목의 매매체결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함
- 장중에는 장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체결시점)마다 체결
  - 시가 및 종가를 포함하여 총 13회 체결
  - 다만, 시장임시정지 등의 사유로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에 체결
- 다만, 종목별 거래정지 사유로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단위체결시점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단위체결시점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체결

□ 정규시장 중의 단일가매매 이외의 매매거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조 3항 : 2009/3/30 개정, 4/6 시행)

- 장중대량매매,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등의 경우는 종래와 동일하게 매매거래 가능

□ 관리종목 랜덤엔드 적용시 참여호가 범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조 4항 : 2009/3/30 개정, 4/6 시행)

- 시가 및 종가 결정시 랜덤엔드를 적용함에 있어 참여호가의 범위는 일반종목과 동일
  -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까지 제출된 호가

- 관리종목의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8조 4항 : 2009/3/30 개정, 4/6 시행)
  - 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 불가능
  
- 관리종목에 입력 가능한 호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 2009/3/30 개정, 4/6 시행)
  -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만 제출이 허용되고,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제출 불가능
    - 다만,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라도 조건(IOC, FOK)이 부여된 경우에는 제출 불가능
  
- 관리종목 지정시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미개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6조 : 2009/3/30 개정, 4/6 시행)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음
    - 다만, 관리종목 지정 중에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의 시행일 변경 및 적용례 추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부칙 : 2009/3/30 개정, 4/6 시행)
  - 업무규정이 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시행을 2009년 4월 1일에서 2009년 4월 6일로 연기함에 따라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단축조항의 시행일을 조정(2009년 4월 6일)하고,

- 2009년 4월 3일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다음 매매 거래일(2009년 4월 6일)에 단일가매매가 가능하도록 적용례 추가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발동예고 요건 추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조 1항 : 2009/7/1 개정, 7/6 시행)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요건에 “선물거래대상지수가 동일방향으로 3%이상 변동될 것”을 추가함에 따라 발동예고에 이를 반영

기 존	개 정
선물가격이 $\pm 6\%$ 변동	선물가격 $\pm 6\%$ & 선물거래 대상지수 $\pm 3\%$ 변동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발동예고해제 요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조 2항 : 2009/7/1 개정, 7/6 시행)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요건에 “선물거래대상지수가 동일방향으로 3%이상 변동될 것”을 추가함에 따라 발동예고해제에도 이를 반영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조, 2조 4항, 25조 등 : 2009/1/28 개정, 2/4 시행)

- 최대주주 산정시 제외대상인 법인세법상 기관투자자 개념을 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 개념으로 전환
-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상장주선인 자격 개선
  - 금융투자업이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상장주선업을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 지정특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8조 13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연도에는 매출액 발생이 곤란한 점을 감안, 동연도에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배제

□ 상장법인 해산에 따른 상장폐지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1항 5호 : 2009/1/28 개정, 1/29 시행)

-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는 해산사유에 대한 상장폐지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운영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

□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 심사요건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6조의2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함
  - 당해 증권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는 “1만증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잔존권리행사기간은 상장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함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의 액면이 5천원인 경우를 기준
-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다만, 주주에게 당해 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는 제외

□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 심사요건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6조의3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함
  - 당해 증권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는 신주의 액면이 5천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1만 증서 이상”이어야 함
- 유통기간이 단기인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가능기간은 5일 이상이 되도록 함

□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일괄상장신청 근거 마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8조의3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예정 주식을 일괄하여 상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세부적인 상장신청 절차는 세칙에서 마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폐지 사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44조의2~3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 공통되는 상장폐지 요건
  -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거래소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증서의 상장을 폐지함
-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완료되면 당해 증권의 상장을 폐지함
- 신주인수권증서의 신주청약개시일의 5일전이 된 경우에는 당해 증서의 상장을 폐지함

□ 전문투자자의 범위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조 11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최대주주 산정시 제외대상인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규정
  -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

□ 파산신청 관련 관리종목 기간 명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1항 14호의3 : 2009/2/3 개정, 2/4 시행)

— 규정상 파산신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신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간 명시

-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법원의 기각결정일의 익일

□ 관리종목 이의신청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공시규정상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운영에 따른 절차중복 방지를 위하여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의 경우 이의신청 제외대상에 포함

□ 매매거래 정지기간 정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009/2/3 개정, 2/4 시행)

— 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시행(2009/4/1)에 따른 투자자의 주의환기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 (29조 1항 1호: 2009/4/1 시행)

- 사유확인일 및 익일 정지 → 사유확인일만 정지

—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제외하여 투자자의 거래제한을 해소 (29조 1항 5호: 2009/3/2 시행)

-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파산신청 등은 별도규정

□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상장폐지 기준 명확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 11항 3호 나목 : 2009/7/3 개정, 7/6 시행)

-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이상의 증권발행제한, 일정금액 이상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

□ 주식배당 예고기한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마목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예정내용을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 투자자에게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
  - 상장법인의 주식배당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주식배당 예고제도를 공시규정에 반영

□ 현금배당 결정시 시가배당률 산식 반영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마목 : 2009/7/1 개정, 7/6 시행)

-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도록 명확화
  - 시가배당률 :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7조 4항 : 2009/10/21 개정)

- 주권에 적용되는 품문 등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재개의 기준 및 절차를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도 그대로 준용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도록 함
  - 품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 사업보고서등 신고서 제출기간을 위반한 때,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문투자자 및 시설외 투자 범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조, 6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전문투자자 범위

-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및 그에 준하는 투자자

— 시설외 투자 범위

- 게임·영화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 신규시설투자에 준하는 투자

□ 매매거래정지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8조 : 2009/2/3 개정, 3/2 시행)

— 중요내용공시 등 매매거래정지시간 단축(60분→30분)

— 중요도가 낮은 매매거래정지 항목 삭제

-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확인된 경우
- 최대주주 변경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및 탈퇴
- 물적분할

□ 현금배당 신고의 기준이 되는 시가배당률 산식 마련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6조의2 : 2009/7/3 개정, 7/6 시행)

- 시가배당률 = (주당배당금/과거 1주일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100

- \* 과거 1주일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 명부폐쇄일 2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주식배당 예고기한 계산방법 구체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3조 2항 : 2009/7/3 개정, 7/6 시행)

-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의 기간계산은 매매일이 아닌 역(calendar)에 의하여 계산함을 명확화

□ 회원감리 개념 및 관련 조항 정비

(시장감시규정 2조 5항, 11조 1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회원감리 개념을 자본시장법에 맞춰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위반여부 확인”으로 한정하고,
- 시장감시 업무내용을 이상거래혐의종목 선정과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위반 우려가 있는 거래의 선정으로 구분·명확화함

□ 연계거래 개념을 구체화

(시장감시규정 2조 9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가격 연동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증권의 종목 간,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 또는 증권의 종목과 장내파생상품의 종목간을 연계하는 거래

□ 투자주의종목 지정대상 증권의 범위 및 감리의 종류별 구체적 실시내용

(시장감시규정 5조 3항, 16조 3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투자주의종목의 지정대상 증권의 범위를 세칙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정기 및 수시감리의 구체적 실시내용을 세칙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회원의 일임매매·일임선물거래 결과보고 폐지

(시장감시규정 7조 3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법에서 일임매매거래 및 일임선물거래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일임매매 관련 사항을 투자일임업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보고제도를 폐지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 실효성 제고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조의2 : 2009/2/3 개정, 2/16 시행)

- 종래 거래소 내부지침 및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예방조치요구와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 조치대상 선정 및 조치방법 등을 세칙에 명시
  -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준법감시인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회원의 업무 편의성 도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19조 2항 2호 : 2009/2/3 개정, 2/4 시행)

- 위원회가 회원에게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회원의 처리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 투자주의종목 지정시 주가방향성 반영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 2항~3항, 4항 3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종래에는 소수 계좌로 매수나 매도가 몰리는 경우 주가 등락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 투자주의종목 중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집중종목, 단일계좌집중종목(단일계좌거래량 상위종목)”의 지정시 주가방향성을 반영하여 지정하도록 함
  - 주가 상승시에는 매수부분(매수 관여일, 매수 관여율)을 고려함

- 주가 하락시에는 매도부분(매도 관여일, 매도 관여율)을 고려함
-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의 경우 모두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일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함

□ 투자주의종목 중 증가급변종목 지정시 유동성요건 강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 4항 1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종래에는 증가 직전 대비 5% 이상 변동할 때 투자주의종목 중 증가급변종목으로 지정하였으나, “당일 거래량 30,000주 이상일 것”이라는 유동성 요건을 추가함

□ 투자경고종목 지정요건의 완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3 1항 1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신규상장종목 및 감자 후 재상장종목의 단기급등시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일로부터의 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라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장 또는 매매거래 재개일을 포함한 날부터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2일간 연속되는 종목
  - 이 경우 2일째 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기간) 중 최고가
  - 또한 2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 중 합지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이어야 함

□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주의종목 유형 확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3 1항 3호, 2항 3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종래에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유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또는 소수계좌거래집중”의 사유로 20일의 기간동안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반복 지정된 경우에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였으나, 종목간의 단계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주의종목 유형을 확대함

- 투자주의종목 중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동 규정 3조의3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동 규정 3조의3 5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5회 이상 반복하여 투자주의종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증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동 규정 3조 1항~4항) 중 하나에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해당하고,
  - 반복 지정된 20일의 기간동안 주가상승률이 100%이상인 경우가 2일간 연속되어야 함
- 5회 이상 반복 지정되는 20일의 기간동안 2일 연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함
- 다만,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을 제외하고는 동 규정 시행(2009/12/14) 후부터 지정되는 투자주의종목부터 적용함

□ 거래 정지 후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 해당 대상 확대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3 3항 3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종목”의 경우에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날부터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나 지정예고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시가기준종목의 적용을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경우에 한해서 매매거래 재개시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 또는 지정예고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음

□ 투자위험종목 지정 대상을 투자경고종목에 한정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3조의4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 대상을 투자경고종목에 한정함으로써 위험정도에 따라 시장경보제도가 단계적으로 발동되도록 함
  - 종래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이 해제된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을 투자위험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으로 하였으나,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에서 “투자경고종목”으로 투자위험종목 지정 대상을 변경

□ 약식제재금 부과 관련 감면 사유 명확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회원의 귀책사유 없는 신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는 약식제재금 감면에 있어 해당 요건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서 “자기주식매매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명확히 함

□ 공정공시 신고시한의 변경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7조 6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매매거래 개시전 간담회 등의 개최시 제공되는 공정공시정보의 제출시한 변경
  - 당일 오전 7시 20분까지 → 당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는 경우 정규시장 매매개시 30분전까지)
- 전자공시시스템 접수마감 후 발생하는 공정공시 제출시한 변경
  - 그 다음 개장초일 오전 7시 20분까지 → 그 다음 개장초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는 경우 정규시장 매매개시 30분전까지)

□ 연계 불공정거래 대상 증권 범위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7조 3호 마목 : 2009/12/21 개정·시행)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출자지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법 4조 4항)

-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는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된 지분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법 176조 4항 3호, 동법 시행령 207조 3호),
- “상장된 지분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유형에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을 추가함
  - 지분증권의 한 유형인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에서 상장신주권증권 외의 지분증권의 시세조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고가우선주의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 불인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조 9항 : 2009/12/29 개정, 2010/1/18 시행)

- 보통주와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TF LP에 대한 유동성공급 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조의7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유동성공급 평가(동규정 20조의6)결과에 따라 당해 LP의 ETF 거래 수수료 범위 내에서 거래소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함

□ 매수 기세 불인정 종목 기준 명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조의3 : 2009/12/1 개정, 2010/1/18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조 9항)에서 보통주와의 가격 괴리가 큰 우선주는 제출된 매수호가에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 보통주와 가격 괴리가 “당일 기준가 기준으로 우선주 종가가 보통주 종가를 10배 초과하는 경우”에 매수의 기세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우선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ETF LP 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간 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1조의11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조의7)에서 ETF LP에 대한 유동성공급 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함
- 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간
  - 당해 LP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비율 만큼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
  - 지급은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거래수수료 수준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지원금 지급 비율 변경을 허용함
  -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대량매매 수량요건 기준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2조 2항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대량매매 수량요건 기준을 “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로 명확하게 규정함

□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큰 우선주에 대한 호가의 기세 불인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조 16항 : 2009/12/29 개정, 2010/1/18 시행)

-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초과하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에 없는 것으로 의제함

□ 증권의 종류별 제출가능한 호가의 종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조의3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시장 개설과 함께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펀드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
  -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 지정가호가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호가 입력 제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8조 5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의 입력을 금지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호가수량 단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8조 1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1 증권·증서”로 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결정시 2개 이상의 합치가격이 있는 경우의 가격결정방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조 4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가격이 호가가격단위 미달시에는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 대한 랜덤엔드(Random End) 적용 배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2조 5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 대해서는 랜덤엔드(Random End)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시가 및 장종료시 가격결정의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지 않음

**랜덤엔드(Random End)**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 체결 가격 등이 급변하는 종목의 단일가 매매 참여 호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 2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 및 그 재개는 해당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적용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신규상장시 제출서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7조의2~3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신규상장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 제출서류를 명시함
  - 신규상장신청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권종별 건양 2매 또는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9조 4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목적주권의 매매거래정지시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수수료 면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8조 3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수수료 등을 거래소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변경 등으로 인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변경상장수수료,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 상호변경 등 자본금이 증가되지 않는 복수의 변경상장사유 발생시 신청 접수일이 동일한 경우 1건으로 간주하여 수수료 부과

## 2. 채권시장

### 가. 발행시장

□ 반사채의 해외 발행시 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조 1항 4호 : 2009/1/28 제정, 2/4 시행)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 발행시 1년 내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 일반투자자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 일괄신고서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간소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4조 2항~3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금융기관이 빈번하게 채권을 발행하는 현실을 감안, 추가서류 제출 시에는 대표이사 등의 서명 의무 면제
- 이사회가 구체적 범위를 정해 대표이사에게 발행 세부내역을 위임한 경우 기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의 재사용을 허용

□ 채권발행시 실적공시 확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8조 1항 : 2009/2/28 개정, 3/9 시행)

- 채권 발행시 사모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채권발행 주선인의 경우에도 실적공시 의무화

## 나. 유통시장

□ 장개시전 소매채권의 차입공매도 호가입력 제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조 1항 4호 : 2009/3/4 개정, 3/16 시행)

- 장개시전(08:00~09:00)에 접수된 차입공매도 호가가 직전가격의 변동으로 장개시(09:00)이후 거부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매채권시장의 장개시전 차입공매도 호가입력을 제한

□ 국채금융 Repo 신고매매의 매수호가를 비지정매수호가로 간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6조 3항 : 2009/4/27 개정, 5/4 시행)

- 동규정 69조에 따른 채권대체가 가능하도록 국채금융 Repo 신고매매의 매수호가를 비지정매수호가로 간주
  - 채권대체 : Repo 거래의 담보로 매매된 채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Repo매도자가 Repo매수자에게 대체를 신청함

□ 국채금융 Repo 신고매매 거래기간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6조 7항 : 2009/4/27 개정, 6/22 시행)

- 정부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국채금융 Repo의 신고매매 거래기간을 360일 이내로 확대

□ 국채거래와 Repo거래의 분리 결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0조 1항, 100조의2 3항 : 2009/7/2 개정, 7/6 시행)

— 익일결제의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국채거래)와 당일결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거래)를 분리하여 결제

- 국채거래 : T+1일 결제
- Repo거래 : T+0일 결제
- 차감·확정된 국채거래의 결제내역은 매매거래일에 통지

— 국채거래의 결제준비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국채거래 결제의 원활화 도모

□ Repo거래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적용 제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4, 101조의10 1항 : 2009/7/2 개정, 7/6 시행)

— Repo거래는 결제준비시간이 40분에 불과하고 결제금액이 적어 수령회원에 대한 결제와 관련한 유동성리스크가 크지 않으므로,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외국채권 상장요건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4조 1항 2호 다목 : 2009/1/28 개정, 2/4 시행)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제도 폐지로 인한 기업정보 부족현상 방지를 위해 신규상장요건 중 “등록법인 요건”을 “공모실적 요건”으로 대체

□ 국고채전문딜러의 양방향조성호가 체결 후 호가실적 인정시간 축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79조 3항 : 2009/10/23 개정, 11/2 시행)

###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 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일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채딜러를 말함.

국고채 발행시장에서는 우선적인 입찰참여권, 비경쟁입찰참여자의 입찰대행 그리고 국채인수 및 유통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받으며, 국고채 전문유통시장에서는 국채지표종목 장내거래의무, 해당 딜러 총 국고채거래량의 50%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의무, PD와 PPD의 총국고채거래량의 5% 거래의무 등의 시장조성의무를 수행함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양방향의 조성호가를 한 전문딜러는 당해 양방의 조성호가 중 어느 일방의 물량이 전량 매매체결 된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다시 호가를 하도록 함
  - 종래에 “6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호가실적 인정시간을 축소함

###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공시체계 정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7-8조 1항 3호, 7-24조 1항·3항 : 2009/7/21 개정, 11/2 시행)

- 증권회사 보고방식에 의한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공시 조항 삭제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산정을 위한 수익률 보고증권사(10사)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
- 채권평가회사(회원 3사) 제출정보에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추가
  - 기존에 제출하는 평가가격에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추가하고 제출시한을 당일 18시로 명시
-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이 시장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시근거 신설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1조 2항~3항 : 2009/7/21 개정, 11/2 시행)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공시중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제출서식 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5조, 별지 44호 : 2009/7/21 개정, 11/2 시행)
  -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포함되는 채권의 종류와 잔존만기를 별지 서식으로 지정
  
- 소매채권시장의 시장조성 대상종목수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1조의4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투자수요가 큰 일부 채권의 경우에는 조성호가 제출대상 종목수를 종래 1종목에서 2종목 이상으로 확대함
    - 투자수요가 큰 일부 채권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함
  
- 소매채권시장 시장조성자 명칭 변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1조의2, 71조의4, 71조의6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종래 “소매전문딜러, 소매딜러, 소매전문딜러지정위원회”를, “소매채권전문딜러, 소매채권딜러, 소매채권전문딜러지정위원회”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함
  
- 소매채권시장의 시장조성 대상종목수 확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3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소매채권시장의 투자수요가 큰 일부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조성호가 제출대상 종목수가 2종목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업무규정 71조의4),
  - 투자수요가 큰 일부 채권의 종류를 "금융채와 회사채"로 명확히 함

□ 소매채권시장의 딜러 평가방법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4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금융채 및 회사채의 시장조성 대상종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조성호가 제출실적 및 거래실적 평가시 금융채 및 회사채의 평가배점을 확대함
  - 조성호가 제출실적 평가시 가점대상을 특수채 및 회사채에서 금융채 및 회사채로 변경
  - 거래실적 평가시 금융채 및 회사채에 가점을 부여
- 거래실적 평가기준이 되는 평균 매매거래실적 산출시 상위 2개사 및 하위 1개사의 매매거래실적을 제외함
  - 다른 딜러들에 비해 매매거래실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딜러가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

□ 소매채권시장 시장조성자 명칭 변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3, 99조의5, 99조의8~10 : 2009/12/1 개정, 2010/1/4 시행)

- 종래 “소매전문딜러, 소매딜러, 소매전문딜러지정위원회”를, “소매채권전문딜러, 소매채권딜러, 소매채권전문딜러지정위원회” 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변경에 따른 것임

### 3. 파생상품시장

□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5항 4호, 28조의2, 46조의2, 47조 3항, 50조 1항 단서, 51조 1항, 122조 1항, 166조의2 : 2009/2/3 개정, 2/4 시행)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
-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1인 이상의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상근임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 부담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
-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 추가
  -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정
  -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동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일반투자자의 범위 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3항 : 2009/7/1 개정·시행)

-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문투자자로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금 운용법인, 공제사업 경영법인, 해외상장 국내법인 등

□ 상품 ETF 등에 관한 위임사항 반영

(금융투자업 규정 7-26조 : 2009/2/4 개정·시행)

- 지수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범위를 외국의 거래소,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인정하는 시장으로 정하고,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요건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출, 매일 공표 등”으로 정함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한도 보고제도 도입

(금융투자업 규정 5-49조 1항~2항 : 2009/7/6 개정·시행)

-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를 내부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용어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조, 4조, 15조, 18조, 20조, 20조의2, 31조, 88조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펀드”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로 변경
  
- 국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심사요건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2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적하는 지수범위 확대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신설
  - 자산구성요건 개선
    -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자산구성 내역 신설
    -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 납입자산내역을 달리 구성하거나 금전납부의 방법으로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허용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심사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2조의2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심사요건을 신설
    - 외국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을 것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을 것
    - 상장요건 중 자본금, 발행주식수, 유동성공급계약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요건 및 기타 지수범위, 자산구성요건, 자산운용방법, 지수사용계약 체결 등의 요건은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상장요건 중 상장을 위한 최소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 등은 국내 유통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판매회사의 명의로 예탁원이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상장예정 주식총수(또는 수익증권총좌수)가 10만주 이상일 것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7조의2 1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하여 현금설정 방식으로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세척이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1개월 이내 거래상대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 괴리율 기준(3%) 위반시 상장폐지요건과 유동성공급회원 교체요건에 동시 적용되는 이중규제를 해소
  - 괴리율기준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을 유동성공급회원의 괴리율 준수의 무로 대체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괴리율기준 미충족시만 상장폐지하도록 단일화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87조의2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을 위한 최소 자본금(신탁원본) 및 발행주식수(발행좌수) 등의 기준은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증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함
  - 주식시가총액(또는 수익증권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 또는 상장예정 주식총수(또는 상장예정 수익증권총좌수)가 5만주 미만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 본국 법령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 기타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요건 등은 국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신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추적방법의 적격성 심사 근거 신설 및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5조의2, 42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신규상장 신청 전 거래소와 사전 협의의무를 부과
- 거래소의 자산운용방법 등의 적격성 심사 및 상장거부권 신설
  - 추적 가격 또는 지수의 정확성, 자산운용방법 등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 거부
-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경우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현금설정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공시 강화
  - 장외파생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유지 요건 반영

□ 상장폐지와 관련한 예고근거 추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1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세척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변경상장신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9조, 51조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 또는 환매로 인한 상장수량 변경의 경우 변경상장신청서 및 신청기간 등 근거 신설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신고의무사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67조의2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현금설정 방식으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및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등의 신고의무를 국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적용

□ 유동성공급회원 평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제재조치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42조의2 1항 2호 나목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집합투자업자가 상장한 종목의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최근 평가에서 일부가 최저등급을 받은 경우는 3개월간, 모두가 최저등급을 받은 경우는 6개월간 신규상장을 제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5조의2, 42조의2, 49조, 67조의2, 87조의2, 91조의2, 99조, 102조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정의 신설
- 투자회사 주권 또는 수익증권 조항에 부속되어 규정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항목을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허용에 따른 관련 규정 특례조항 추가

□ 집합투자기구의 상장신청 및 신고사항 등 정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0조, 14조, 35조 등 : 2009/2/3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법 체제에 맞추어 투자회사 및 수익증권 등의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신고사항 등을 정비하고, 각종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 유가증권신고서 → 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 투자설명서, 영업보고서 → 업무보고서, 지정판매회사 → 지정참가회사 등

□ 장외파생상품 편입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기준 신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의4, 48조의3, 49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적격 요건은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 원리금지급 능력이 우수하고 투자위험 발생이 낮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정
  - 국내신용평가사인 경우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중의 한 곳의 평가가 “A” 일 것
  - 외국신용평가사인 경우 S&P나 Fitch의 평가가 “A”이거나 Moody’s의 평가가 “A2”에 해당할 것
  - 기타 신용평가사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상기 등급기준에 상당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장폐지 및 상장폐지 예고시 동세칙 제24조의4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집합투자업자 및 유동성공급회원의 신고의무 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6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 추가
  - 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해소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를 초과한 종목 교체시
  - 추적가격 또는 지수 산출의 일시적 중단 또는 이용 불가시
- 외국ETF 관리에 필요한 관리서류 제출 및 신고사항을 국내ETF에 준용하여 적용

□ 통화선물거래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인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4조 : 2009/3/4 개정)

- 중소기업들이 통화선물거래를 환헤지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를 종래의 1/5로 인하
  - 5만 → 1만

□ 통화선물 결제월 수 확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5조 : 2009/3/4 개정)

- 통화선물의 거래기간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결제월 수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분기월 이외의 결제월의 거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도입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75조, 75조의3 : 2009/3/4 개정)

- 외환 현물보유자들이 선물거래를 통하여 원활하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포지션을 조기에 인수도하는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 도입
  - 선물포지션을 보유한 당사자가 해당 포지션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그 기초자산의 조기 인수도를 조건으로 하는 비경쟁방식의 거래제도
- 선물거래는 협의대량거래제도와 유사한 “협의거래”로 거래를 체결
  - 다만, 원활한 기초자산의 조기 인수도를 위해 협의대량거래(최소 200계약)와 같은 최소 수량제한을 하지 않음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도입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3조, 64조의2~5, 75조, 75조의4, 76조, 83조, 96조 등 : 2009/3/4 개정)

-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이 표준화된 미국달러선물거래와 별도로 거래당사자가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을 협의할 수 있는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도입
  - 기초자산, 거래단위, 거래수량단위, 1계약의 금액, 거래승수, 가격의 표시 등은 미국달러선물거래와 동일
  - 미국달러선물시장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미국달러플렉스선물시장도 거래를 중단
- 종목의 구분
  - 결제월로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협의한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으로 종목을 구분
- 최종거래일
  - 플렉스선물협의거래 신청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미국달러선물 연속 6개 결제월종목 중 마지막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까지의 거래일 중 매 거래일별로 선택
  - 다만, 미국달러선물 각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 및 전후 3거래일은 제외
- 최종결제
  - 미국달러선물거래와 동일한 실물결제방식(최종결제일 : T+2일)과 주식상품과 같은 현금결제방식(최종결제일 : T+1일) 중 선택
  -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직전 30분간 (14:25~14:55)의 현물시장 거래량가중평균환율
- 거래체결방법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방법(플렉스협의거래)” 적용하여, 지정가호가에 의한 신청만 인정
- 당사자간 협의거래만 인정되므로 “시장조성상품 및 유동성관리상품” 대상에서 제외

□ 장개시 전 거래시간 신설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조 : 2009/3/18 개정, 3/23 시행)

- 정규거래시간(09:00~15:15)으로는 EUREX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선물의 최종결제를 위한 코스피200옵션 인수도거래 수용이 곤란하여, 정규시장 개장 전에 인수도거래를 위한 “장개시전 거래시간” 신설
  -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 협의거래유형 추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75조 : 2009/3/4 개정)

- 코스피200옵션의 인수도거래를 협의거래로 체결할 수 있도록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협의거래의 유형에 추가
  - \* 협의거래 : 경쟁거래로 체결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 체결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참가자 제한 등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75조의5 : 2009/3/4 개정)

- 장개시전협의거래 참가자를 EUREX 코스피200옵션선물 최종결제수량 보유자로 제한
- 협의거래 신청은 장개시전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척에서 정하는 시간 동안에 당사자간 협의된 종목·수량으로 회원이 신청
  - 신청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장 가능
  - 신청가격은 당일 해당 옵션종목의 기준가격(전일종가)

□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시간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조의2 1항·3항 : 2009/9/23 개정, 11/16 시행)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해외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와의 협약을 통해 정규거래가 종료한 후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코스피200선물의 연계거래를 말함.

거래에 대한 매매체결(matching) 및 호가접수 서비스는 CME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의 법률 및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이므로 한국거래소가 거래제도, 청산·결제 및 시장운영을 담당함

- 정규거래 종료 후 야간시간에도 CME의 Globex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거래시간(이하 글로벌거래)을 신설함
  - 정규거래시간 종료 후 청산·결제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익일 정규거래의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를 글로벌거래시간으로 정함
  - 정규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15분까지로 종래와 동일함
- 거래소는 정규거래시간이 변경되거나 거래시스템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글로벌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글로벌거래 제도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 마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3편 2장의2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제도는 정규시장의 코스피200선물 거래제도와 대부분 동일하나, 현물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 및 CME Globex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일부 제도는 정규거래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가격제한폭, 호가한도수량, 거래체결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글로벌거래의 호가 및 거래체결 제도를 정규거래와 구분한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여 투자자의 글로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편의를 제고함
  - “제3편 거래의 체결”에 “제2장의2 글로벌거래의 특례” 신설

□ 글로벌거래 휴장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조의2 2항, 5조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휴장일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글로벌거래 시간이 속하는 2일 중 거래시간 개시 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휴장일을 적용함
  - 글로벌거래의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및 거래시스템 운영 정지 등으로 CME가 휴장할 경우에는 글로벌거래를 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의 임의적 중단 및 정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2조의9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거래소시스템 또는 회원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정규거래의 필요적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도입하지 않음
  - 거래의 중단·정지 후 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함

□ 글로벌거래 호가접수시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2조의4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호가는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간부터 종료 전까지 접수하며, 해당 글로벌거래의 종료 때까지 효력을 지속함

□ 호가의 취소 및 정정방법의 개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2조의5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외국인 투자자의 글로벌거래 참여에 따른 거래편의를 위하여 호가의 취소 및 정정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호가수량의 일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수량 전부취소만 가능하나, 이미 제출한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으로 정정하는 수량정정은 가능
- 일부수량에 대한 가격정정도 불가능하며, 전체수량의 가격 정정만 가능
-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호가수량 및 가격을 동시에 정정할 수 있는 가격수량정정을 신설

**<호가의 취소·정정방법 비교>**

구 분		정규거래	글로벌거래
취소	전부수량	가능	가능
	일부수량	가능	불가
정정	전체수량 가격정정	가능	가능
	일부수량 가격정정	가능 (잔량 우선권 유지)	불가
	수량정정 (수량증가 포함)	없음	가능
	가격수량정정	없음	가능

□ 글로벌거래의 호가한도수량 및 가격제한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2조의6~7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 호가한도수량을 1호가당 100계약으로 정함
  - 글로벌거래의 안정적인 시장운영 및 회원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규시장(1호가당 1,000계약)의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할 것임
- 글로벌거래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상하 5%로 함
  - 다음날 정규거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야간시간대 거래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10%)보다 축소
-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다음 거래일의 정규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함
  - 정규거래의 기준가격은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주로 종가)이므로, T일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T일 정규거래의 종가가 됨

□ 글로벌거래의 거래체결방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2조의8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거래체결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접속거래)의 방법에 의함
  - 정규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단일가거래)는 도입하지 않음
  - 거래중단 후에도 접속거래로 거래를 재개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세칙에서 정함

□ 우선호가수량 공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2조의11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는 호가한 수량이 있는 가격대(호가잔량)별 연속 5개의 우선호가 가격 및 수량을 공표
  - 정규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tick)로 연속 5개의 우선가격(호가수량 존재 여부 불문)을 공표
- 호가잔량 기준으로 우선호가를 공표하므로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 수량은 공표하지 않음

□ 과다호가의 접수 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56조의2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과도한 호가제출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호가접수 처리를 위한 접속회선 별로 일정한 기준 초과시 호가접수를 제한하며, 세부기준은 세칙에서 정함
  - 접속회선은 회원별로 다수가 배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다호가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접속회선만 호가접수를 거부함

□ 글로벌거래 체결분의 결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88조, 96조~98조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에서 체결된 거래는 단독으로 일일정산하거나 청산·결제를 하지 않고, 직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합산 결제함
  - 글로벌거래 종료 후에 별도의 결제 및 거래증거금 확인 등의 결제업무 처리는 없음
  - 글로벌거래에 대한 일일정산(당일차금 및 갱신차금)은 익일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실시하며, 정산가격은 정규거래의 정산가격을 사용
  -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의 충족 확인은 정규거래 종료 시점에 1일 1회만 실시하며, 글로벌거래 종료 후에는 확인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의 수탁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4조의2, 134조~136조, 137조, 140조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위탁자가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위탁자와 증권·선물사는 계좌개설과 별도로 글로벌거래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글로벌거래 참여 계약은 참가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서면 이외에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도 계약체결을 허용함
- 글로벌거래의 사전위탁증거금과 관련하여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의 산출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주문시마다 산출하여 적용함
  - 위탁증거금률, 계약당증거금률 등은 정규거래와 동일
- 사후위탁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의 산출은 매일 정규거래 종료 후 1회 실시하며, 글로벌거래 종료 후 별도로 위탁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가 야간거래 시간대에 이루어지므로 위탁자가 파생상품 계좌에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응증권 등의 인출을 제한함

- 세부적인 제한 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계좌번호 체계 및 자리수 변경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8조, 114조 : 2009/3/18 개정, 3/23 시행)

- 회원영업소번호와 투자자번호로 구분되던 “과생상품계좌번호”의 체계를 “회원영업소번호”와 “투자자계좌번호”로 분리
  - 계좌번호는 회원이 열두자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회원영업소번호(3자리→5자리)는 별도로 입력

□ 회원 착오거래정정 신청방법 다양화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7조 : 2009/3/18 개정, 3/23 시행)

- 착오거래 신청방법을 기존의 신청서 제출 또는 회원과생상품단말기를 통한 제출 이외에 회원과생상품시스템으로 직접 거래소시스템에 제출하는 방법을 추가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신고방법 변경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3조 : 2009/3/18 개정, 3/23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신고방법을 기존의 회원과생상품단말기에서 회원과생상품시스템을 통한 제출로 변경

□ 통화선물스프레드거래 종목 수 확대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6조 : 2009/4/6 개정, 4/27 시행)

- 통화선물의 결제월수 확대(6개→8개)에 따라 통화선물스프레드거래 종목 수를 확대
  - 5개 → 7개

□ 거래승수 인하 관련사항 조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0조, 99조, 별표18 : 2009/4/6 개정, 4/27 시행)

- 통화선물 거래승수 인하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정한 협의대량거래 최소·최대수량을 그에 상응하게 조정
  - 협의대량거래의 규모를 최소 1천만달러·최대 1억 5천만달러(미국달러 기준, 기존 수량의 5배)가 되도록 최소·최대수량을 조정
    - \* 최소수량: 200계약 → 1,000계약
    - \* 최대수량: 3,000계약 → 15,000계약
- 매도옵션에 대한 거래증거금 산출시 적용되는 선물·옵션승수배율 변경
  - 미국달러선물·옵션간 거래승수 차이(선물 5만, 옵션 1만)를 감안하여 5배로 하고 있는 미국달러선물·옵션승수배율을 동일하게 1배로 변경
    - \* 선물·옵션승수배율 : 매도옵션에 적용되는 조정옵션거래증거금 관련 선물·옵션미결제약정을 감안 순매도옵션미결제약정을 산출하기 위한 선물·옵션간 상쇄 비율
- 통화선물 증거금산출 변수 중 1계약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변수에 대하여는 1/5로 축소

구 분		기 준	개 정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증거금액	거래	30만원	6만원
	위탁	50만원	10만원
	유지위탁	30만원	6만원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주문위탁증거금액		50만원	10만원
계약당최소증거금(거래/위탁)		5만원	1만원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7조의2, 72조의2~4, 77조, 118조 : 2009/8/21 개정, 8/31 시행)

— 신청수량

- 신청수량은 협의대량거래와 동일하게 15,000계약을 한도로 하였으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대량거래와 달리 최소 수량제한은 두지 않음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란?**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란 양 거래 당사자가 선물계약과 이에 상응하는 현물을 동시에 맞교환하는 거래로서 선물 매수자는 현물 매도자가 되고, 선물 매도자는 현물 매수자가 됨.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는 선물계약 당사자인 외환의 실수요자들이 만기 전이라도 선물계약을 만기 전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을 제공함

— 신청내용 및 방법

- 회원이 거래상대방 회원과 협의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소 시스템에 신청
- 신청시 입력사항 : ①종목, ②선물가격, ③수량, ④계좌번호, ⑤매도/매수, ⑥상대회원 및 계좌번호, ⑦협의완료일 및 시각, ⑧현물가격(실물인수도가격), ⑨기타
- 양 당사자간 협의완료 후 10분 이내에 거래소에 신청하며, 회원은 EFP주문 수량이 고객의 보유미결제약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당일 중 형성된 현물환율(실물인수도가격)이 없는 경우 신청 거부
- 실물인수도가격(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제공하는 환율로서 협의 완료시각 직전 현물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

— 취소·정정 및 착오거래정정 제한

- 회원이 EFP거래를 신청한 이후에는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하여 취소 가능
- 거래체결 즉시 인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착오거래의 정정 대상에서 제외

— 실물인수도 및 대금의 수수

- 회원이 EFP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고 거래가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지체없이 실물인수도 이행하고, 실물인수도는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미국달러와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실시

- 위탁자는 EFP거래 신청 전에 회원에게 해당 기초자산(미국달러) 또는 현금을 예탁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47조의2~3, 55조, 72조의5~7, 168조의2 : 2009/8/21 개정, 8/31 시행)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FLEX, Flex Exchange)란?**

미국달러선물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및 결제 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거래제도를 말함. 거래소가 구축한 협의거래 상대방 탐색 시스템을 통해 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찾아 협의 후 성사되는 방식으로 거래되며, 동제도에 의해 현행 달러선물시장과 별도로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만기를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결제방식도 실물인수도방식과 현금결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거래일

- 당해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표준물 최원월 연속 6번째 결제월물 만기의 2거래일전 까지의 거래일 중 선택
- 만, 표준물(미국달러선물) 각 결제월물 만기일 및 만기의 인접거래일 ( $\pm 1$ 거래일)은 제외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플렉스거래 신청시간 종료전 30분간(2시25분~2시55분) 서울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현물시장의 거래량 가중평균 환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용
- 다만, 동 시간 중 체결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신청시간 종료 직전 체결된 최종 5건에 대하여 거래량 가중평균을 적용하고, 당일 체결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날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율 사용

— 기준가격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기준가격은 항상 선물이론가격을 사용

— 신청기간

- 최종거래일 및 평일 모두 9시10분~14시55분 중 표준종목의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
-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11시20분~11시30분)은 거래 가능

— 가격범위 및 신청수량

- 신청가격범위 : 플렉스협의거래기준가격±(플렉스협의거래기준가격×1.0%)  
\* 플렉스협의거래기준가격 : 표준물기준종목의 협의완료 직전 약정가격 + (당해 플렉스종목의 전일 정산가격 - 기준종목의 전일 정산가격)
- 신청수량 : 10계약 이상 ~ 1,000계약 이하

— 미결제약정의 인수에 대한 특례

- 거래상대방 미확보 등으로 반대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사가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자기거래로 인수
- 추가증거금예탁 불이행 또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한 날에 당해 반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원의 자기거래인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위탁자로부터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거래일부터는 일정한 가격으로 회원이 자기거래로 인수 가능

□ 파생상품시장 호가제도개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0조, 54조 : 2009/8/21 개정, 8/31 시행)

- 상·하한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입력 제한
- 지정가호가에 한하여 허용되는 호가의 조건(일부충족조건·전량충족조건)을 시장가·최유리지정가에도 확대 허용
- 최유리지정가간 또는 지정가와 최유리지정가간의 호가정정이 가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가정정을 거부

□ 파생상품시장 장 종료 후 업무처리시한 단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3조, 26조, 38조, 77조, 106조, 153조, 157조 : 2009/8/21 개정, 8/31 시행)

- 실물인수도 선물상품(통화선물, 10년국채선물, 금선물)의 최종결제 수량 신고 폐지
- 10년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신고시한을 장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30분 이내로 단축
  - 통화선물의 신고시한 폐지
- 착오거래정정 신고시한 및 권리행사 신고시한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

□ 글로벌거래 호가입력내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의2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호가입력내용은 정규시장의 호가입력내용(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8조~49조)과 동일함
  - 다만, 호가의 입력내용 중에서 국적의 구분, 투자자의 구분, 대용주권 계좌번호 등 투자자정보에 관한 사항은 호가를 입력할 때마다 제출하지 않고 글로벌거래의 전까지 거래소에 일괄하여 제출 가능
- 호가를 제출한 때 호가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의제함

□ 글로벌거래 호가입력의 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의3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에서는 지정가호가의 입력만 가능
  -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입력 제한
  - 시장조성계좌, 옵션매수전용계좌 및 거래증거금할인계좌에서의 호가 입력 금지
  - 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조건부여정정호가의 입력 금지

□ 글로벌거래 호가접수시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의4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간부터 종료 전까지로 함
  - 18시부터 익일 5시까지(한국시간)
-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하여 호가를 접수함
  - 다만,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 거래소 착오거래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호가를 접수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 호가의 정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의5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 호가는 수량의 일부취소가 불가능하며 수량의 전부취소만 가능함
  - 정규거래의 경우 수량전부취소 뿐만 아니라 호가수량 일부취소(잔량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도 가능
- 글로벌거래 호가는 전체수량에 대한 가격정정만 허용하며, 일부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은 허용하지 않음
  - 정규거래는 전체수량에 대한 가격정정뿐만 아니라 일부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잔량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도 가능
-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호가의 수량과 가격을 동시에 정정할 수 있는 “가격수량정정”을 신설함
  - 가격정정과 동시에 수량정정이 가능하며 가격정정 없이 수량정정만 하는 것도 가능
  - 호가의 가격변동 없이 수량만 감소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시간우선순위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함
- 호가의 수량정정시에는 반드시 체결포함기준 또는 호가잔량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여야 하며, 기준 선택 이후에는 이에 대한 변경 불가능함

- 호가잔량기준 : 거래가 체결된 수량에 관계없이 정정 후 체결되기를 바라는 총 호가수량을 제출하는 것
- 체결포함기준 : 거래가 체결된 수량을 포함하여 정정 후 체결되기를 바라는 총 호가수량을 제출하는 것

□ 글로벌거래 호가의 가격제한 및 호가한도수량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의6~7, 별표14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다음 거래일의 정규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함
  - 정규거래의 기준가격은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주로 종가)이므로, T일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T일 정규거래의 종가가 됨
- 글로벌거래의 상하한가의 가격제한폭은 정규거래(10%)보다 축소하여 기준가격의 상하 5%로 함
  - 상한가 및 하한가 : 기준가격  $\pm$  가격제한폭(5%)
- 글로벌거래 호가한도수량을 1호가당 100계약으로 정함
  - 글로벌거래의 안정적인 시장운영 및 회원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규시장(1호가당 1,000계약)의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

□ 글로벌거래 착오거래 정정 신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의9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와 관련한 착오거래의 정정신청은 다음 거래일의 장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 선물거래 정산가격 결정시 글로벌거래 제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3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결정시 글로벌거래의 약정가격은 감안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함

□ 거래중단 후 재개하는 경우 취소호가 제출시간 부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79조의8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거래소·회원시스템 장애등으로 거래가 임의적으로 중단된 후 재개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하여 호가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함

- 글로벌거래는 정규거래와 달리 거래중단 후 재개 시에도 접속거래(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방식에 의하며, 단일거래는 도입하지 않음

#### **접속거래(Continuous Auction)**

단일가거래방식이 적용되는 시점 이외의 시간 동안에 거래체결 조건이 맞는 호가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시간우선 및 가격우선(저가 매도호가 우선, 고가 매수호가 우선)의 원칙에 따라 즉시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을 말함. 매매거래시간 중에 계속적으로 복수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라고도 함

#### **단일가거래(Periodic Call Auction)**

매매거래 전 비거래 시간이 존재하거나, 시장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호가를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시키는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시키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가격을 도출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됨. 주로 시가 또는 종가 등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 시장의 정지 또는 중단 후 재개시 최초의 가격, 정리매매종목의 경우에 이용됨

□ 글로벌거래 참여계약 미체결 위탁자에 대한 수탁 거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9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은 위탁자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를 위탁받을 경우 글로벌거래에서는 이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도록 함
  - 정규거래시에는 이에 대한 수탁을 허용함

□ 글로벌거래의 대용가격 임의산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26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당일 장종료 후 거래소가 대용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자체적으로 당일 종가를 이용하여 대용가격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당일체결순손실상당액에 글로벌거래 체결분을 포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7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당일체결순손실금액 적용범위를 “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 개시 시간부터 당일의 장종료 때까지”로 설정함으로써 당일선물순손실금액 산출시에 직전 거래일의 글로벌 거래분을 포함시킴

□ 위탁자의 예탁불이행시 글로벌거래시간 중 반대거래 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2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회원은 추가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를 정규거래시간 중에만 실시하고 글로벌거래시간 중에는 금지함

□ 글로벌거래의 과다호가 접수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64조의2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경우 호가접수 처리를 위한 접속회선 별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시 거래소가 호가접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동 기준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해제하도록 함
  - 3초간 초당 평균 750건 초과할 경우 : 취소호가만 접수 (신규·정정호가의 접수 거부)
  - 3초간 초당 평균 1,000건 초과할 경우 : 모든 호가의 접수 제한

□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규정체계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2009/1/14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393조)에서 거래·결제·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모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기존 「선물시장 업무규정」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 동 업무규정에 수탁편을 포함하고, 기존 「수탁계약준칙」은 폐지

□ 기본예탁금제도 전 상품 적용

(선물시장 업무규정 124조, 127조 : 2009/1/14 개정, 4/27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국채, 통화, 일반상품 파생상품시장에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예탁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국채등 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국채상품, 통화상품 및 금선물에 기본예탁금 징수

□ 거래증거금 구분 보관 명확화

(선물시장 업무규정 92조 : 2009/1/14 개정, 2/4 시행)

- 회원으로부터 예치받은 거래증거금은 거래소 재산과 구분 보관

□ 규정체계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9/1/20 개정, 2/4 시행)

- 거래·결제·수탁제도를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모두 정함에 따라, 기존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명칭을 변경
  - 동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수탁편을 포함하여 개정하고, 기존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은 폐지

□ 현금위탁증거금 제도의 전상품 적용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5조, 148조, 부칙 3조 : 2009/1/20 개정, 4/27 시행)

- 금융시장 급변시 단기자금 경색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방지, 증권회사 업무영역 확대에 의한 개인투자자 증가 대비를 위하여 주식상품에 적용되는 현금위탁증거금제도를 전 상품에 적용하되,
- 기존투자자의 자금부담 최소화 및 회원사시스템 변경 소요시간 확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 단계적 적용 대상은 금리·통화·일반상품만 거래하는 계좌(주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계좌 및 신규상품 제외)에 한정
  - 단계적 적용 대상 현금위탁증거금은 선물거래의 신규주문현금위탁증거금액 및 전일기준순위험현금위탁증거금액 산출시의 현금비율로 한정

□ 통화상품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6조, 58조~59조, 97조, 133조, 150조, 별표14·18 : 2009/1/20 개정, 2/4 시행)

- 환율변동성 증대 및 선물시장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통화상품의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

□ 적격기관투자자 범위 조정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32조 : 2009/1/20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 중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추가 편입
  - 국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및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된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집합투자기구 형태 중 자본시장통합법상 추가된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 국내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 다만, 파생상품시장의 고위험성 및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 중 일부는 적격기관투자자에서 제외
  - 주권상장법인, 금융위원회에 전문투자자로 신고한 법인·개인,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투자자문업자

□ 호가한도수량 회원 변경시 보고제도 폐지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61조 : 2009/1/20 개정, 2/4 시행)

- 거래소가 정한 호가한도수량(선물 1,000계약, 옵션 5,000계약) 이내에서 회원이 낮은 수량으로 정하는 경우의 거래소 보고의무제도 폐지

□ 위탁·결제불이행시 반대거래 호가가격 명확화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2조 : 2009/4/27 시행 : 2009/1/20 개정, 2/4 시행)

- 위탁자의 추가예탁금 미납 또는 결제불이행시 회원이 위탁자의 포지션을 강제반대거래 함에 있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의 호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

□ 연계거래 개념을 구체화

(시장감시규정 2조 9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가격 연동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증권의 종목 간,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 또는 증권의 종목과 장내파생상품의 종목간을 연계하는 거래
  
- 미결제약정수량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3조 1항 4호의2, 별표 2 : 2009/3/27 개정, 4/1 시행)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약식제재금을 부과
    - 약식제재금의 부과에 불구하고 고의적·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수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정식 제재조치
  
- 파생상품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7조 : 2009/2/26 개정, 3/9 시행)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가 금지됨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에서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대행을 제외
  
- 파생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조 3항~4항, 별표3 : 2009/5/29 개정, 6/10 시행)
  - 파생상품등 거래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이외에도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 적정성 원칙 :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자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자자에게 고지할 의무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의 “금융투자회사 면책조항”을 삭제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금융투자회사 면책 조항은 위험고지서의 내용으로 부적합하고 오히려 투자자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요소(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통화위험, 관리위험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진입규제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29조 : 2009/8/28 개정, 9/7 시행)

- 위탁증거금을 거래단위당 미화 2천 달러 이상으로 하던 것을 미화 5천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레버리지를 50배에서 20배로 축소함
  - 위탁증거금은 거래대상 통화와 관계없이 정액(미화)으로 징수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자본시장법(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5조 3호~4호)에 의해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로, 선물회사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고 표준화된 계약단위, 소액의 증거금 등을 적용함으로써 통화매매를 통한 환차익과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차이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의미함. 자본시장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종래에 위탁증거금의 2분의 1로 설정하고 있던 유지증거금을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미화 3천 달러(2천 달러에 상당하는 Buffer 인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다만, 투자자로 하여금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거나 예탁금 추가납부를 위한 기간 보장이 필요하므로, 동 규정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복수 FDM 호가정보 제공 의무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0조 : 2009/8/28 개정, 2010/4/5 시행)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 Forex Dealer Member)이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복수 FDM의 호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 호가제공시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의 축소를 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설명의무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2조, 별표2-1 : 2009/8/28 개정, 9/7 시행)

-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와 관계없이 FX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위험, 투자 구조 및 성격 등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도록 함
  - 자본시장법상 적정성원칙의 구체화

□ 글로벌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의 산출시점 명시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9조 1항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글로벌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을 글로벌거래 종료 후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당일 정규거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산출함

□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 도입 근거를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 1항 5호, 2항 4호 : 2009/12/21 개정·시행)

- 투자자가 펀드환매를 하지 않고서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나,
  - 투자자가 투자매매업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신청한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 판매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판매보수의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상품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펀드 기준가격 정정공시의 차등화 및 범위 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2조 1항 : 2009/12/21 개정·시행)

- 지나치게 잦은 정정공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공시해야 하는 펀드 기준가격의 오차범위를 0.1%로 정형화 되어 있던 것을 펀드유형에 따라 0.05% ~ 0.3%로 차등화 함

#### 4. 예탁, 결제, 청산

□ 청산업무의 세부내용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2조, 72조의2, 74조, 75조의6 : 2009/1/28 개정, 2/4 시행)

- 매매거래 확인 절차 신설
- 거래소는 매매거래 성립 후 회원채무를 인수하기에 앞서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
- 차감대상 명확화
- 종래에는 “매매거래 종류별”, “증권별”로 차감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간 대금은 임의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실무에 부합되도록 서로 다른 매매거래 종류간, 증권외 종목간은 물론 양 시장의 대금간에도 필수적으로 차감하도록 함

- 결제지시의 내용 구체화
  - 결제지시의 개념을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대해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 인도 및 대금 지급의 지시”로 정의
  - 결제지시의 내용을 “어느 시점에”, “어느 회원에게”, “얼마만큼의 증권인도·대금지급”을 지시하는 것으로 구체화
- 예탁결제원의 회원결제진행상황의 거래소 통지
  - 세척이 정하는 시간(결제시한전 30분부터)부터 결제종결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통지
-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근거마련
  -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주·유자를 받아 행한 각 결제회원의 매매거래(유통매매거래)는 해당 회원의 청산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소가 직접 증권금융과 청산결제

□ 결제원활화 및 결제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5조의2~3, 75조의6~9, 76조, 76조의2, 96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방법 개선 및 결제지시의 간주제도 도입
  -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 외에 종목별 결제방식도 도입하고, 다수종목·다수회원에 대해 그 때마다 지시함에 따른 결제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가능상태인 때에 결제지시한 것으로 간주
    - \* 결제시한 전에 모든 증권·대금이 납부 완료된 경우 : 결제시한(16시)에 증권 및 대금의 동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
    - \* 대금(거래소의 유동성공급 포함)이 납부 완료된 경우 : 납부 완료된 때(결제시한 전 완료시 결제시한)에 증권납부의무를 완료한 회원에게 대금지급의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간주
    - \* 결제계좌에 납부된 종목의 경우 : 세척에서 정함
  - 예탁결제원은 결제지시가 있거나 간주된 때에는 즉시 계좌대체를 하여야 함
- 미납 대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결제이행보증)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5조의4 : 2009/1/28 개정, 5/4 시행)

- 거래소는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미납한 대금에 대해 결제시한 기준으로 지체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
  - 다만, 당일결제거래인 일반채권 대금은 결제시한준수가 곤란하므로 제외
- 대금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신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75조의9 : 2009/1/28 개정, 5/4 시행)
-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 미납한 결제회원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결제지연손해금 납부의무를 부과(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 청산결제담당자 및 청산결제책임자 제도 신설
- 회원은 회원을 대리하여 결제내역의 확인,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 등 청산·결제업무를 행하는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청산결제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결제계좌의 개념 정의 및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법적 관계 정립
- 증권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
  - 대금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
  - 회원이 예탁결제원계좌를 통한 증권·대금 수수는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한 것과 동일한 효력(대리 효과)이 있는 것으로 하여 거래소는 본인, 예탁결제원은 대리인임을 명확히 함
- 대금결제계좌의 개설절차 및 결제은행 요건
- 예탁결제원이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고, 은행업 영위 금융기관 중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
- 결제대용증
- 거래소는 미납된 증권에 갈음하여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회원으로부터 수령에 대한 동의를 얻어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면,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회원은 결제한 것으로 간주
- 결제불이행 조치 제도 개선
- 결제불이행의 개념 정의 및 결제불이행 경우의 구체적 열거

- 결제불이행조치에 거래소의 채무인수 정지 추가
- 지급정지한 현금 및 증권(처분한 현금을 포함)과 결제불이행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과 상계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가 지급정지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조치를 받은 회원의 원활한 결제의 지원을 위해 소속직원 파견 가능
- 결제불이행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의 해지 신청 허용

— 증권결제의 특례

-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대물 결제허용 근거 마련

— 회원과 고객간 차감 근거 마련 및 회원·고객간 결제시한의 회원 자율화

□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관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12~13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증권금융이 결제불이행(결제를 이행할 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차감에서 제외하고 거래소가 유통매매거래를 한 결제회원과 직접 청산결제

- 유통매매거래의 범위에는 대여 받은 자금 또는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매거래도 포함

- 거래소가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를 증권금융과 행하더라도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신청 및 공동기금 적립은 결제회원이 행함

- 증권금융과 결제회원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 증권금융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공동기금 사용방법을 정함

□ 유통매매거래의 결제내역 통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99조의14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유통매매거래를 한 회원은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에 거래소에 통지
  - 착오매매정정 등으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의 다음날까지 통지

#### □ 차감대상 및 차감방법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0조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 산출시 차감대상
  - 보통거래(T+2)간 차감 : 주식·수익증권·신주인수권증권(증서)·ETF·ELW
  - 당일결제거래(T+0)간 차감 : 일반채권
  - 익일결제거래(T+1)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T+0)간 차감 : 국채 Repo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해당 거래를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결제불이행처리를 위해 거래소가 타 회원에게 위탁하여 거래한 주식에 대해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조기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결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 결제내역 및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0조의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회원(증권금융 포함)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
  -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종목별 수량 및 대금 등
- 통지시기
  - 회원 : 결제내역 확정시(매매당일) 지체없이 통지하고, 착오매매정정 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정내역을 포함한 결제내역 확정시 지체없이 통지

- 예탁결제원 : 차감확정 대상(보통거래간 차감, 당일결제거래간 차감 등)에 따라 달리 함

□ 결제계좌 개설 은행의 재무요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결제회원의 결제 가능여부 통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3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결제회원에 대해 다음 사항 통지 요구 가능
  -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증권의 현황 및 사유
  -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가능여부,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금 유동성공급 제외대상 및 유동성공급시 사용되는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4~5 : 2009/2/20 개정, 5/4 시행)

- 일반채권의 대금결제는 유동성공급 제외
-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 결제적립금, Credit Line, 공동기금, 회원보증금,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 결제이행재원의 사용 순서
  -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 대금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산출 방법 등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10 : 2009/2/20 개정, 5/4 시행)

- 당일결제거래간 차감(Repo 제외)에는 유동성 공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제지연손해금도 징수하지 않음
- 결제지연손해금= 납부되지 아니한 대금 × 손해율
  - 손해율

구 분	손해율
결제일부터 기산 3일(납부일, 매매일기준)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4/1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매매일기준)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6/1만
납부기간의 마지막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매매일기준) 후에 납부하는 경우	8/1만

□ 예탁결제원의 회원결제진행상황 통지시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6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예탁결제원은 “결제시한 전 30분(15시30분)부터 결제 종결시까지”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회원결제진행상황을 통지

□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의 수령회원계좌로의 결제지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7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시한 후 대금 및 종목의 증권을 완납한 경우(완납종목)
  - 증권인도 가능한도 이내에서 증권의 종목별 수령 가능
- 16시 30분 이후 대금 및 종목의 증권을 완납한 경우
  - 결제교착시 결제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결제 가능하며, 선결제시에도 증권인도 가능한도 이내에서 수령 가능
- 완납종목 또는 미완납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종목의 인도우선 순위

-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할 수량이 많은 종목
-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할 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결제할 종목의 평가액이 큰 종목
- 평가액이 동일한 때에는 납부완료시간이 빠른 종목

□ 결제대용증 인도에 대한 회원의 수령동의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8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거래소는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회원과 종목 및 수량에 대해 합의함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별 종목의 수령수량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회원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수량을 배정
- 결제대용증이 결제회원에게 교부된 때 거래소가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수령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전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증 발행신청회원의 결제대용금을 확인 가능
- 예탁결제원이 결제대용증으로 증권의 납부에 갈음한 결제회원으로부터 해당 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
-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금으로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을 직접 매수 가능
  - 해당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대용증 발행대상 증권이 납부시한 까지 미납된 경우 등

□ 증권결제의 특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9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착오때때 등으로 결제할 수량이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원종목에 갈음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은 수령할 회원이 선정 가능

- 단, 선정된 종목으로 결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수령할 회원과 협의하여 선정

— 같음할 현금의 금액 및 선정된 종목의 수량

- 같음할 현금의 금액 : ①과 ②중 큰 금액
  - ① : 원종목의 매매일의 증가×미결제수량×120%
  - ② : 현금지급일의 원종목의 증가(당일 증가 확정전 인도시 직전 매매일의 증가)×미결제수량
- 선정된 종목의 수량은 같음할 현금의 금액을 선정된 종목의 인도일의 증가(당일 증가 확정전 인도시 직전매매일의 증가)로 나눈 수량
- 미결제회원과 수령할 회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현금 또는 유사종목의 수량으로 함

□ 거래소 직원의 결제불이행회원의 결제 지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11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해 거래소 직원을 파견하여 결제업무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직원은 결제지원명령서를 해당 회원에게 제시
  - 해당 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극한 비밀 엄수 의무

□ 청산결제 담당자의 자격요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1조의1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청산결제담당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거래소의 청산결제담당자 등록취소 또는 교체 요구
  -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등록되었거나, 청산·결제와 관련한 법규 또는 법규에 따른 처분·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
  - 다만, 청산·결제 제도 또는 운영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신규 회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별도로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

- 회원의 결제부족 위탁자 확인사항 기록·유지 기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4 1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결제부족 위탁자에 대해 확인한 내용과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

- 신탁업자등의 결제부족정보 통보 기한·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4 2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신탁업자등은 결제일 12시까지 결제부족 현황을 별지 서식으로 회원에게 통보

- 국채거래와 Repo거래의 분리 결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00조 1항, 100조의2 3항 : 2009/7/2 개정, 7/6 시행)

- 익일결제의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국채거래)와 당일결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거래)를 분리하여 결제

- 국채거래 : T+1일 결제
- Repo거래 : T+0일 결제
- 차감·확정된 국채거래의 결제내역은 매매거래일에 통지

- 국채거래의 결제준비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국채거래 결제의 원활화 도모

□ 청산업무의 세부내용 구체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8조, 28조의2, 29조~31조, 31조의2·5·6 :  
2009/1/28 개정, 2/4 시행)

— 매매거래 확인 절차 신설

- 거래소는 거래시간 종료 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기에 앞서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

—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의 내용”을 명확히 함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간 대금의 임의적 차감을 양 시장의 대금 간 필수적 차감으로 변경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및 예탁결제원 통지

-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 및 예탁결제원에 통지

—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방법 개선

-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대로 결제시한(16시)까지 증권 및 대금을 납부하고, 거래소는 결제시한후 결제회원에게 지급

— 예탁결제원의 회원결제진행상황의 거래소 통지 신설

- 통지내용 : 회원별·종목별 납부·미납수량, 대금의 납부·미납금액, 수령회원에 대한 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지급금액, 증권 및 대금의 납부·인도 및 지급시간 등
- 통지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통지
- 통지시간 : 세칙이 정하는 시간(결제시한 전 30분)부터 결제종결시까지

— 결제지시의 내용 구체화

- 결제지시의 개념을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대해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 인도 및 대금 지급의 지시”로 정의하고, 결제지시는 결제시한 이후에 하도록 함
- 결제지시의 내용을 “어느 시점에”, “어느 회원에게”, “얼마만큼의 증권인도·대금지급”으로 구체화

—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근거마련

-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주·용자를 받아 행한 각 결제회원의 매매거래(유통매매거래)는 해당 회원의 청산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소가 직접 증권금융과 청산결제 하도록 함

□ 결제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1조의3·4·6·9, 32조의3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방법 개선 및 결제지시의 간주제도 도입

- 현행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 외에 종목별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다수종목·다수회원에 대해 그 때마다 지시함에 따른 결제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가능상태인 때에 결제지시한 것으로 간주
- 예탁결제원은 결제지시가 있거나 간주된 때에는 즉시 계좌대체

— 미납 대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결제이행보증) 신설

- 거래소는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미납한 대금에 대해 결제시한기준으로 지체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되, 증권의 경우는 배제
- 유동성을 공급받은 회원이 공급분을 상환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상환하고, 거래소는 상환사실을 즉시 예탁결제원에 통지
- 예탁결제원은 상환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해당 회원에게 결제 가능

— 대금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신설

- 지연된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손해금으로 함

— 청산결제담당자 및 청산결제책임자 제도 신설

- 회원에게 결제내역의 확인,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 등 청산·결제업무를 행하는 담당자 1인 이상(담당자 및 임·직원 청산결제업무를 총괄할 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거래소에 등록

□ 결제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1조의2·7, 32조, 32조의2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계좌의 개념 정의

- 증권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
- 대금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

— 거래소와 예탁결제원간 법적 관계 명확화

- 회원이 예탁결제원계좌를 통한 증권·대금 수수는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한 것과 동일한 효력(대리 효과)이 있는 것으로 하여 거래소는 본인, 예탁결제원은 대리인임을 명확히 함

— 대금결제계좌의 개설절차 및 결제은행 요건

- 예탁결제원이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고, 일정한 재무요건(세척에서 자기자본비율 8%이상으로 정할 예정) 충족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결제대용증

- 거래소는 미납된 증권에 갈음하여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회원으로부터 수령에 대한 동의를 얻고, 결제대용증은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
- 회원의 예탁결제원계좌를 통한 결제대용증 수수는 직접 거래소를 통한 수수와 동일한 효력(대리효과)이 있음

— 결제불이행 조치 제도 개선

- 결제불이행의 개념 정의 및 결제불이행 사례의 구체적 열거
- 결제불이행 조치에 거래소의 채무인수 정지 추가
- 지급정지한 현금 및 증권(처분한 현금을 포함)과 결제불이행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과 상계근거 마련
- 거래소의 지급정지한 증권의 매도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증권의 매수 허용
- 결제불이행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의 해지 신청 근거 및 당해 회원의 원활한 결제지원을 위해 거래소 소속직원 파견 근거 마련

□ 증권결제의 특례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1조의8 : 2009/1/28 개정, 2/4 시행)

- 소형주 및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의 대량착오매매등으로 결제물량이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등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대물 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회원과 고객간 차감 및 회원·고객간 결제시한의 회원 자율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45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회원과 위탁자가 같은 날에 동일한 증권의 종목을 수수하거나 대금을 수수할 경우에는 각각 종목 간, 대금 간에 차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객과 위탁자간 결제시한을 결제일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자율화

□ 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및 거래소의 결제위험 파악·관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31조의3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가 곤란한 회원은 결제가능여부를 거래소에 통지
- 거래소는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위험을 파악·관리

□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관련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5조의2~3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증권금융이 결제불이행(결제를 이행할 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차감에서 제외하고 거래소가 유통매매거래를 한 결제회원과 직접 청산결제 함
  - 유통매매거래의 범위에는 대여 받은 자금 또는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매거래도 포함

- 거래소가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를 증권금융과 행하더라도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신청 및 공동기금 적립은 결제회원이 행함
  - 증권금융과 결제회원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
- 증권금융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기금 사용방법
  - 결제회원별 사용금액은 각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 중에서 유통매매거래로 적립된 변동적립금(유통변동적립금)을 안분비율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 유통변동적립금을 안분비율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결제불이행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제회원별로 현재 각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변동적립금에서 해당 결제회원의 유통변동적립금을 뺀 금액을 안분비율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각 회원의 사용금액으로 함

□ 유통매매거래의 결제내역 통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5조의4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유통매매거래를 한 회원은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에 거래소에 통지해야 함
  -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종목명, 매수수량 및 용자금액 등의 유통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착오매매정정 등으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의 다음날까지 통지

□ 차감방법 구체화 및 보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 : 2009/2/20 개정, 3/23 시행)

- 대금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간의 차감을 의무화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해당 거래를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결제불이행처리를 위해 거래소가 타 회원에게 위탁하여 거래한 주식에 대해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조기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결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제내역 및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회원(증권금융 포함)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
  -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종목별 수량 및 대금 등
- 통지시기
  - 회원 : 결제내역 확정시(매매당일) 지체없이 통지하고, 착오매매정정 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정내역을 포함한 결제내역 확정시 지체없이 통지
  - 위탁결제원 : 매매거래일의 다음날 매매거래가 종료된 때 지체없이 통지

□ 결제계좌 개설 은행의 재무요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4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8%이상

□ 결제회원의 결제 가능여부 통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5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결제회원에 대해 다음 사항 통지 요구 가능
  -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증권의 현황 및 사유
  -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가능여부,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금 유동성공급시 사용되는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6·11 : 2009/2/20 개정, 5/4 시행)

—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 결제적립금, Credit Line, 공동기금, 회원보증금,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 결제이행재원의 사용 순서

- 거래소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결제적립금 또는 Credit Line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며,
-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제이행재원 사용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

□ 대금결제지연손해금 산출 방법 등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11 : 2009/2/20 개정, 5/4 시행)

— 산출방법 : 결제지연금액 × 손해율

- 손해율

구 분	손해율
결제일부터 기산 3일(납부일, 매매일 기준)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4/1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6/1만
납부기간의 마지막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매매일 기준) 후에 납부하는 경우	8/1만

□ 예탁결제원의 회원결제진행상황 통지시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7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시한 전 30분(15시30분)부터 결제 종결시까지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통지

□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외 수령회원계좌로의 결제지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8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시한 후 대금 및 종목의 증권을 완납한 경우(완납종목)
  - 증권인도 가능한도 이내에서 증권의 종목별 수령 가능
- 16시 30분 이후 대금 및 종목의 증권을 완납한 경우
  - 결제교착시 결제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결제 가능하며, 선결제시에도 증권인도 가능한도 이내에서 수령 가능
- 완납종목 또는 미완납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종목의 인도우선 순위
  -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할 수량이 많은 종목
  -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할 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결제할 종목의 평가액이 큰 종목
  - 평가액이 동일한 때에는 납부완료시간이 빠른 종목

□ 결제대용증 인도에 대한 회원의 수령동의 방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9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거래소는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회원과 종목 및 수량에 대해 합의함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별 종목의 수령수량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회원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수량을 배정
- 결제대용증이 결제회원에게 교부된 때 거래소가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수령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전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증 발행신청회원의 결제대용금을 확인 가능
- 예탁결제원이 결제대용증으로 증권의 납부에 갈음한 결제회원으로부터 해당 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
-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금으로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을 직접 매수 가능
  - 해당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대용증 발행대상 증권이 납부시한까지 미납된 경우 등

□ 증권결제의 특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10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착오매매 등으로 결제할 수량이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원종목에 갈음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은 수령할 회원이 선정 가능
  - 단, 선정된 종목으로 결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수령할 회원과 협의하여 선정
- 갈음할 현금의 금액 및 선정된 종목의 수량
  - 갈음할 현금의 금액 : ①과 ②중 큰 금액
    - ① : 원종목의 매매일의 증가×미결제수량×120%
    - ② : 현금지급일의 원종목의 증가(당일 증가 확정전 인도시 직전 매매일의 증가)×미결제수량
  - 선정된 종목의 수량은 갈음할 현금의 금액을 선정된 종목의 인도일의 증가(당일 증가 확정전 인도시 직전매매일의 증가)로 나눈 수량
  - 미결제회원과 수령할 회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현금 또는 유사종목의 수량으로 함

□ 거래소 직원의 결제불이행회원의 결제 지원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1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해 거래소 직원을 파견하여 결제업무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직원은 결제지원명령서를 해당 회원에게 제시함
  - 해당 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극한 비밀의 엄수 의무

□ 청산결제 담당자의 자격요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7조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청산결제담당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거래소의 청산결제담당자 등록 취소 또는 교체 요구
  -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등록되었거나, 청산·결제와 관련한 법규 또는 법규에 따른 처분·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
  - 다만, 청산·결제 제도 또는 운영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신규 회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별도로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

□ 결제이행을 위한 유동성공급 제도 보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6 : 2009/4/20 개정, 5/4 시행)

- 신용한도의 설정대상 기관에 “증권금융회사” 추가
  -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외에 증권금융회사와도 신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동성 조달창구를 확대
-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결제회원이 결제계좌로 납부한 대금 또는 증권의 처리절차 명시
  - 유동성을 공급한 후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계좌로 납부한 대금 또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이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하도록 하여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상환절차를 간소화
  - 공급하고자 하는 유동성이 결제계좌로 공급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계좌로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령회원에 대한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방지

□ 결제지연손해금 징수기준 조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11 : 2009/4/20 개정, 5/4 시행)

- 결제지연손해금 손해율을 1만분의4(연 14.6% 수준)에서 1만분의2(연7.3% 수준)으로 인하

\* 결제지연손해금 : 결제지연금액 × 손해율

— 결제지연손해금 손해율의 예외적 조정

- 신용한도로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신용한도 금액에 대한 그 발생 비용의 비율(조정률)이 손해율보다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손해율로 함

— 결제지연손해금 납부 지연시 가산금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지연납부에 따른 부담금 수준을 완화

- “결제지연대금”에 대한 손해율 자체를 납부지연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방식

→ "결제지연손해금"의 일정률(1만분의6, 1만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일수마다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하는 방식

□ 회원청산결제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내역 통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6조의2 2항 : 2009/4/20 개정, 5/4 시행)

- 거래소시스템에서 회원사시스템으로 결제내역 전송방식(인터페이스에 의한 전송) 외에 웹(Web) 기반의 청산결제 정보제공 화면(회원청산결제단말기)으로 회원이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사용액 산출방식 조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5조의3 : 2009/4/20 개정, 5/4 시행)

-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 결제불이행시 결제회원별 분담액중 1만원 미만 금액의 절사 및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미달시 공동기금 사용액 산출방식 조정

□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규정체계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2009/1/14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393조)에서 거래·결제·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모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기존 「선물시장 업무규정」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 동 업무규정에 수탁편을 포함하고, 기존 「수탁계약준칙」은 폐지

□ 기본예탁금제도 전 상품 적용

(선물시장 업무규정 124조, 127조 : 2009/1/14 개정, 4/27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국채, 통화, 일반상품 파생상품시장에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예탁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국채등 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국채상품, 통화상품 및 금선물에 기본예탁금 징수

□ 거래증거금 구분 보관 명확화

(선물시장 업무규정 92조 : 2009/1/14 개정, 2/4 시행)

- 회원으로부터 예치받은 거래증거금은 거래소 재산과 구분 보관

□ 규정체계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09/1/20 개정, 2/4 시행)

- 거래·결제·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모두 정함에 따라, 기존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명칭을 변경
  - 동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수탁편을 포함하여 개정하고, 기존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은 폐지

□ 현금위탁증거금 제도의 전상품 적용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45조, 148조, 부칙 3조 : 2009/1/20 개정, 4/27 시행)

- 금융시장 급변시 단기자금 경색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방지, 증권회사 업무영역 확대에 의한 개인투자자 증가 대비를 위하여 주식상품에 적용되는 현금위탁증거금제도를 전 상품에 적용하되,
- 기존투자자의 자금부담 최소화 및 회원사시스템 변경 소요시간 확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 단계적 적용 대상은 금리·통화·일반상품만 거래하는 계좌(주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계좌 및 신규상품 제외)에 한정
  - 단계적 적용 대상 현금위탁증거금은 선물거래의 신규주문현금위탁증거금액 및 전일기준순위험현금위탁증거금액 산출시의 현금비율로 한정

□ 통화상품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 변경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56조, 58조~59조, 97조, 133조, 150조, 별표14·18 : 2009/1/20 개정, 2/4 시행)

- 환율변동성 증대 및 선물시장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통화상품의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

□ 예탁·결제불이행시 반대거래 호가가격 명확화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52조 : 2009/4/27 시행 : 2009/1/20 개정, 2/4 시행)

- 위탁자의 추가예탁금 미납 또는 결제불이행시 회원이 위탁자의 포지션을 강제반대거래 함에 있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의 호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

□ 미결제약정수량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23조 1항 4호의2, 별표 2 : 2009/3/27 개정, 4/1 시행)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약식제재금을 부과

- 약식제재금의 부과에 불구하고 고의적·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수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정식 제재조치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제출 범위의 구체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10조 : 2009/2/26 개정, 3/9 시행)

- 고객의 추가예탁금 미납 또는 결제불이행시, 회사가 고객의 포지션을 강제 반대매매함에 있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의 호가 제출 범위를 구체화함

□ 국채등 상품도 기본예탁금제도 적용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5조~7조 : 2009/4/24 개정, 4/27 시행)

- 기본예탁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국채등 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국채상품, 통화상품 및 금선물에 기본예탁금을 징수

\* 국채등 상품 : 3, 5, 10년 국채선물, 통안증권선물, 통화선물·옵션, 금선물

□ 채무인수할 거래의 확인 절차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93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청산결제 업무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거래의 성립 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기에 앞서 거래소가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거래를 확인하도록 함

- 착오거래의 정정 등으로 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거래를 확인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2조의2)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28조의2)과의 일치 도모

□ 결제내역의 회원통지 절차 신설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3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확정된 결제내역(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내역)을 거래소과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과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과생상품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회원의 결제 준비 시간 확보를 용이케 하고 관련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과의 일치 도모

□ 차감결제현금 등의 수수방법 개선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4조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를 일반적인 결제절차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납부회원이 거래소에 차감결제현금 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에 거래소가 수령회원에게 지급·인도하는 방식으로 변경

□ 결제지시 절차 명시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5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령회원에 대한 지급·인도를 위해 결제은행 등에 대한 거래소의 결제지시 절차를 규정함
  - 결제지시의 대상은 차감결제현금의 경우 결제은행,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경우 세척이 정하는 자로 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2·6),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의2·6)과의 일치 도모

□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제도 신설

(과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5조 : 2009/12/29 개정, 2010/2/1 시행)

-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가 결제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채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함
  - 차감결제현금에 대한 결제이행 보증함으로써 수령회원의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고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
  - 결제이행채원의 종류 등은 세칙에서 정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4),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의4)과의 일치 도모

□ 차감결제현금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5조의3 : 2009/12/29 개정, 2010/2/1 시행)

-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결제지연 예방 장치를 마련함
  - 다만,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은행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유동성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9),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의9)과의 일치 도모

□ 거래소의 결제위험 파악·관리제도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4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대처를 위해 결제회원은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3),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의3)과의 일치 도모

□ 결제불이행의 정의 명확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7조 2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결제불이행)”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함
  -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6조 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2조 2항)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결제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

#### □ 결제불이행시 거래정지 조치 범위의 명확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7조 1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불이행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 외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결제불이행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정지시 거래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는 거래 등 일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6조 1항 2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3조 1항 2호)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결제불이행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 결제불이행시 지급정지 조치 범위 명확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7조 1항 2호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지급정지 대상에 “거래증거금 그 밖에 당해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을 추가하여 거래소와 거래정지회원 간 채권채무관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 결제불이행시 지급정지 차감결제현금 등의 사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7조 3항~4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정지회원은 장래 수령할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과의 상계를 통해 일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의제
- 지급정지한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지급정지된 금전에 의한 차감결제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결제불이행시 관련 조치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대한 통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7조 5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불이행 관련 조치시 위탁자보호를 위해 해당 결제회원은 조치 내용 및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거래정지회원의 자발적 미결제약정 해소절차의 신설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9조 1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거래정지회원이 자발적으로 미결제약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미결제약정의 정리 :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매수,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
  - 다른 결제회원으로서의 미결제약정의 인계

□ 거래소의 미결제약정 강제해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09조 2항~6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자발적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거래소가 정한 기간 이내에 거래정지회원이 자발적으로 미결제약정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강제적으로 해소하도록 함
  - 거래정지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미결제약정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정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소
  - 거래정지회원의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인 경우에는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정리”하게 하거나 다른 결제회원에게 “인계”시키는 방법으로 해소
- 거래소가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강제적으로 미결제약정을 정리하는 경우 당해 다른 결제회원과 거래정지회원간에 위임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거래정지회원은 위탁자 미결제약정의 해소와 관련한 조치내용 등을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함

□ 10년국채선물,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의 차감결제기초자산 등의 수수절차 개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5조, 28조, 41조 : 2009/12/30 개정, 12/31 시행)

- 10년국채선물,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의 최종결제시 납부회원이 거래소에 차감결제기초자산 및 차감결제대금 등을 거래소에 납부하고 그 이후에 거래소가 수령회원에게 결제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차감결제기초자산 인도 결제지시의 대상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2조의3 : 2009/12/30 개정, 12/31 시행)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105조의2)에서 거래소의 결제지시 절차를 규정하여 세칙에 위임하고 있는 결제지시의 대상을 정함

- 통화선물거래 및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 결제은행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 금선물거래의 경우 : 창고업자

□ 유동성공급을 위한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2조의2 : 2009/12/30 개정, 2010/2/1 시행)

- 결제이행보증을 위해 유동성공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업무규정(105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공동기금, 회원보증금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 유동성공급을 위한 결제이행재원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함

□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2조의4 : 2009/12/30 개정, 2010/2/1 시행)

- 파생상품 업무규정(105조의3)에서 위임에 따라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을 정함
  - 결제지연손해금 = 손해율(1만분의 2) × 결제지연대금(결제시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차감결제현금)
-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기간(3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결제지연손해금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하도록 함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만분의 6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후에 납부하는 경우 : 1만분의 8

- 결제불이행시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 정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12조의6 : 2009/12/30 개정, 12/31 시행)
  - 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을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정리회원)으로 하여금 거래정지회원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정리회원 자신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거래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게 할 수 있음

## 5. 기업공시

- 상장법인 등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0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관련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해당 반기·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커질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
-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조 4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에 적힌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을 발행예정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
    -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감액 정정을 허용

□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공시부담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조 : 2009/7/1 개정·시행)

— 일정 요건을 갖춘 “잘 알려진 기업”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잘 알려진 기업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임

\* 잘 알려진 기업 : 다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

□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의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조의4 : 2009/3/25 개정, 6/26 시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대상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현황 등의 공시제도를 도입

□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 축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호 가목 : 2009/5/13 개정·시행)

—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인관련자의 친족 범위 중 8촌 이내 혈족을 “6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 및 행정 절차 비용을 축소

□ 기업집단 현황 공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11 : 2009/5/13 개정·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회사 및 분기별 공시 원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공시

□ 신주발행 합병 등의 경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구체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9~10조 : 2009/1/28 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 기존 특수 공시 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4조 1항 : 2009/7/6 개정·시행)

-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 중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구체화함
  - 금융위 제재 :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이상 (검찰 고발·통보는 무죄추정 원칙상 제외)
  - 거래소 제재 : 관리종목 지정 이상

□ 청약권유의 제외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1-3조 : 2009/1/28 제정, 2/4 시행)

- 시행령상 위임된 “청약의 권유”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공고”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정함
  - ① 인수인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을 것,
  - ② 증권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③ 청약의 권유 및 청약은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의 대가로 발행한 증권을 받는 주주를 제외

□ 집합투자증권·유동화증권 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7~8조 : 2009/1/28 제정, 2/4 시행)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증권신고서 추가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실적 및 운용성과 산출을 위한 비교지수 등을 기재사항으로,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첨부서류로 추가
  - 유동화증권 :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자산실사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을 추가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13조 : 2009/1/28 제정, 2/4 시행)

- 시행령에서 정한 신고서 정정사유 외에 합리적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
  - 집합투자증권 : 투자위험요소
  -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증권 :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보증 또는 기초자산, 발행증권의 수, 투자위험요소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변경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3조 1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내용 항목을 종전 7개 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단순화
  - 제조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 제조·서비스업, 금융업
-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되던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MD&A)를 사업보고서 본문 기재사항으로 이관

□ 공시서류 제출시 전자제출(DART) 방식을 원칙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6, 4-10조 3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기존 공시서류의 문서제출 원칙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을 원칙으로 변경하고, 문서제출시 제출분량도 8부에서 2부로 간소화
  - 전자문서 제출의 구체적 방법, 전자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전자문서제출요령)사항으로 이관

□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 2호 : 2009/1/28 제정, 2/4 시행)

- 종래 과징금 부과대상인 수시공시사항 중 일부가 주요사항보고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명시
  - 과징금 부과기준은 종전의 수시공시 위반 수준을 유지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3조의2, 52조~60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투자자 보호와 기업 비밀간 균형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 도입한 “상장법인의 공시유보 제도”를 구체화
  - 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신규시설투자 및 단일판매계약의 일정 내용에 대한 공시유보 근거를 마련

- 채권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신설
  - 채권상장법인에 대해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를 부과

□ 수시공시 항목의 개선 및 자율공시의 확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8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수시공시 항목을 자율공시로 이관
- 의무공시 항목 신설
  -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파산신청에 따른 진행 단계별 공시
  - 발행 어음의 위·변조 사고 신고에 대한 공시
  - 일정기준 이상 회사채 원리금 미상환 사실에 대한 공시
- 의무공시 항목 조정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공시
    - \*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공시면제는 기업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
  - 공시의무 기준(비율 및 금액)을 비율 기준으로 일원화
  - 국내법인의 해외 공개매수에 대한 출자 공시
    - \* M&A 비밀정보장을 위해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외국기업 발행주식 등을 공개매수시 타법인 출자 공시의 예외 인정
- 이원화되어 있던 자율공시 조항을 일원화하고 규정내용도 임의규정 형식으로 변경

□ 자율규제 체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4조 2항, 35조의2 등 : 2009/1/28 개정, 2/4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절차 합리화

-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시위반제재금 제도 도입

-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되면서 이를 제재하는 수단의 다양화

□ 자산재평가 관련 사항의 공시규정 도입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 : 2009/4/15 개정, 4/16 시행)

— 동일내용 공시의무 부담 최소화

- 주기적 재평가 수행 및 엄격한 재평가모형 변경 등을 감안하여 “유형 자산 분류별”로 최초 재평가결정만 공시

—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시의무를 한정하여 정보제공 효율성을 제고

- 재평가차액이 자산총액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
-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재평가 감소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시의무 부과

□ 상장법인의 중복 공시제출의무 개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7조 1항 2호~3호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사외이사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 공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동법 165조의17 1항·3항)에 해당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시규정에 열거되어 있던 동일한 공시의무를 삭제

-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위(DART)로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KIND)로 자동전송되어 시장에 공표토록 하여 중복 공시제출의무 경감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불이행·공시번복에 대한 제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29조~30조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외국법인이 공시불이행 또는 공시번복을 하는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 상장외국법인 적용대상 기준환율 등의 구체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7조의3 : 2009/2/3 개정, 2/4 시행)

- 수시공시 발생 금액
  -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
- 수시공시 기준 금액
  - 재무지표 기준별(자기자본·매출액·자산총액 등)로 적용대상 기준환율 등을 구체화
  -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되, 자기 자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증감분이 있는 경우 최근증감분 발생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

□ 자율공시의 확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8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요주주·계열회사 변경, 특허권 취득, 기술제휴

□ 별점 가중·감경 범위 등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 4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가중·감경의 범위를 2점에서 3점으로 확대
- 성실공시법인 별점감경기준을 사유별로 명확화

□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기준 등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의3 : 2009/2/3 개정, 2/4 시행)

- 부과대상

-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성실공시

— 부과금액

- 부과별점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사유별 해당 금액을 곱한 금액

□ 부과별점 수준에 따른 표시 차별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4조 2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상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공표기간을 부과별점 수준에 따라 차별화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번복 및 중요내용 매매 거래 정지 대상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9조, 16조 1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번복대상 축소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제외

- 중요내용 매매 거래 정지 대상

- 부도정보 통보에 의한 거래소의 공시 추가
- 생산활동 중단 매매거래정지폐지

□ 의무교육 이수 면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4조 2항 1호 단서 : 2009/2/3 개정, 2/4 시행)

- 과거 교육경력 소유자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육과정의 이수 면제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의무교육 이수 면제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공시시한을 시간외시장 개시시간에 연동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5조 5호 : 2009/2/3 개정, 2/4 시행)
  - 당일·익일공시의 예외시한을 각각 그 익일 07시 20분에서 시간외 시장 개시시간에 연동시킴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시 가중·감경 근거 명확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3조의3 : 2009/7/2 개정, 7/6 시행)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여부·금액 등 결정시 공시위원회가 사안별 위반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재량 권한 부여
    - 다만, 공시위반제재금의 가중·감경 범위는 벌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공시규정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9조 2항 5호, 42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상장법인 수시공시 유보제도 도입
    - 공시항목 중 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일부내용에 대하여 공시유보 허용
    - 공시유보 신청 전 사전협의 의무화 및 유보조건 해제시 유보항목 즉시 공시
  - 상장법인 수시공시 부도정보 수신
    -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상장법인의 부도정보 수신시 공시
  
- 수시공시 항목의 개선 및 자율공시 확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3호, 45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공시환경 변화로 중요성이 높아진 사항을 의무공시 대상에 추가
    - 어음 위·변조 사고신고 (회사의 부도 회피, 횡령 은폐 목적의 허위신고 방지)

- 부도의 선제적 단계로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은 중요한 투자정보이므로 일정기준 이상 회사채 원리금 미상환(누계)금액
  - 중요한 기술도입 · 이전계약 및 시설외투자 결정
  -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발생 가능한 당해 법인의 신청행위 및 법원의 결정행위 등
- 중복공시 및 중요도가 낮은 공시의무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
-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및 특허권 취득
- 의무공시 항목 조정: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표현 명확화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 효과 달성시 공시의무 면제
  - 다수의 거래 존재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계약기간이 다수의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손실규모는 당해 사업연도로 한정
- 국내 법인의 해외 공개매수시 공시시기 조정
-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외국기업 발행주식 등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해외거래소 등에 공개매수신고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타법인 출자 공시 면제
-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축소
- 시장조치 대상 상장법인만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내부정보관리체계 상시공표 의무화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45조 2항 : 2009/1/28 개정, 9/1 시행)
-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관리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투자참고사항 형태로 상시공표

□ 공시위반 제재금 도입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34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공시의무 위반 유형별로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벌점부과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 가능

□ 자산재평가 관련 사항의 공시규정 도입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 : 2009/4/15 개정, 4/16 시행)

— 동일내용 공시의무 부담 최소화

- 주기적 재평가 수행 및 엄격한 재평가모형 변경 등을 감안하여 “유형 자산 분류별”로 최초 재평가결정만 공시

—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시의무를 한정하여 정보제공 효율성을 제고

- 재평가차액이 자산총액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
-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재평가 감소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시의무 부과

□ 상장법인의 중복 공시제출의무 개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6조 1항 2호~3호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사외이사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 공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동법 165조의17 1항·3항)에 해당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시규정에 열거되어 있던 동일한 공시의무를 삭제

-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위(DART)로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KIND)로 자동전송되어 시장에 공표토록 하여 중복 공시제출의무 경감

□ 수시공시 항목의 합리적 개선 및 자율공시 확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의무공시를 자율공시로 전환

-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신산업 공시수요 반영
  - 바이오산업의 경우 중요한 임상시험 단계별 진행사항
  - 인터넷광고, 게임산업의 경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체계 변경
- 자율공시
  -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결과 확정
  - 공시의무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사항

□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기준 등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7조 1항~2항, 별표1 : 2009/2/3 개정, 2/4 시행)

- 공시규정에서 위임한 공시위반제재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부과방법, 납부기한을 정함
  - 관리종목지정법인 또는 별점 이외에 제재금 추가 납부를 통한 제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추가 부과 대상으로, 별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부과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체부과 대상으로 함
  - 부과방법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통지서“ 통보
  - 납부기한 : 제재금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명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1 : 2009/9/25 개정, 9/28 시행)

- “관리종목지정법인(공시위반 제외)”은 공시위반제재금의 추가부가 대상이 아니라, 공시위원회에 제재금 추가부과 결정시 판단요소로 고려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함

### 공시위반제재금 및 대체부과제

자본시장법의 시행(2009/2/4)으로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장회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거래소가 별점 이외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상습적 위반 등 공시위반 유형별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부과함. 한편, 코스닥시장에는 대체부과제도를 도입하여 별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것이 공시위반행위의 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공시위반제재금 대체부과 요청권 부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서식1 : 2009/9/25 개정, 9/28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법인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시, 원하는 경우에는 별점 대신 제재금을 부과받는 대체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시위반제재금 절차를 개선함
  - “공시위반제재금 대체부과 요청 및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소규모 회사에 대한 주요 경영상황 공시의 완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2호 : 2009/5/20 개정·시행)

- 주요 경영상황 공시사항 중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일 기준 자기자본 10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3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공시하도록 완화함
  -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타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채권발행시 실적공시 확대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8조 1항 : 2009/2/28 개정, 3/9 시행)

- 채권 발행시 사모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채권발행  
주선인의 경우에도 실적공시 의무화

## II. 금융투자업

### 1. 금융투자회사

#### 가. 진입규제

- 예비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삭제  
(금융투자업 규정 2-3조 : 2009/2/4 개정 · 시행)
  - 예비인가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
  
- 합병을 사유로 하는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에 있어 완화된 대주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3 3호 : 2009/9/1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16조 6항 2호)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함
    - 동시행령(16조 6항 2호)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인가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나. 영업 · 상품규제

- 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추가  
(금융투자업 규정 7-8조 3호 : 2009/1/5 개정, 2/4 시행)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이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도 교부·설명하도록 집합투자규약에 추가
  -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외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금융투자업 규정 4-66조 2항 : 2009/1/5 개정, 2/4 시행)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에 보수·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기타 수수료 금액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

□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율 강화 및 행위 제한  
(금융투자업 규정 2-22조, 2-24조, 4-20조 1항 5호 : 2009/1/5 개정, 2/4 시행)

-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지점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파생상품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
  - 금융투자업자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에 “파생상품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을 포함
    - \* 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대상에 “파생상품펀드”거래 권유를 추가

□ 정보교류 차단장치 제도 보완

(금융투자업 규정 4-6조~4-7조 : 2009/7/6 개정·시행)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제외대상과 설치대상으로서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열사간 정보교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규정
  
- 차입공매도 확인내용의 기록·보관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4조의3 1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통보 받은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
  
- 핵심설명서 교부대상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조 3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위험도가 높고 구조가 복잡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DLS) 이외에, 고위험 거래인 신용융자거래시에도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 광고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7조 3항, 2-40조 1항·4항, 2-42조 1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의무표시사항 기재 면제 광고 확대
    - 의무표시사항 기재가 곤란한 광고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대전화 및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시에도 의무표시사항 기재를 면제하고,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의무표시사항 중 중요한 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표시 제도 개선
    - 운용실적 광고시 운용실적 산정 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실적이 좋은 구간만을 선택적으로 광고하는 등 불공정 사례 발생함에 따라,

- 집합투자기구(MMF 제외) 실적광고시 운용실적 산정 기준일을 “투자 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 전 10영업일내의 특정일”로 하고, 반드시 1년 수익률을 표시하도록 함

— 협회 심사 면제 대상 확대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를 협회심사면제 대상에 포함

□ 재산상 이익 제공 전체 한도 기준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5조 4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재산상 이익 전체한도 기준을 “수수료 수익”에서 “영업수익”으로 변경

□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계약규모 보고 근거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5-3조 1항, 6-8조 : 2009/3/17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투자일임업 이외에 투자자문 및 신탁업의 계약규모 보고의무를 부과

□ 파생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조 3항~4항, 별표3 : 2009/5/29 개정, 6/10 시행)

- 파생상품등 거래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이외에도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적정성 원칙 :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자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자자에게 고지할 의무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의 “금융투자회사 면책조항”을 삭제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금융투자회사 면책 조항은 위험고지서의 내용으로 부적합하고 오히려 투자자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요소(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통화위험, 관리위험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 투자광고 정의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조 : 2009/7/24 개정, 8/3 시행)

- 일정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투자광고로 정의
  - 광고매체의 종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매체에 준하여 나열
  -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는 투자광고에서 제외
  - 투자권유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광고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로 한정

□ 특약조건 표기의 적정성 심사 근거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8조 12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일정한 우대조건에 해당시 수익률 등을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 우대조건을 우대 수익률의 표시와 근접하여 표시하고 우대 수익률 글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함

□ 동일 형식의 반복광고 심사 절차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2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동일 형식으로 기초자산, 수익율 등만 변경하여 반복 사용하는 광고는 협회가 기본적 형식을 심사하되, 매 광고시 변경되는 부분은 준법감시인이 심사

□ 광고매체 단순 추가시 협회심사 면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1호 마목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를 내용의 변경없이 다른 광고매체를 이용할 경우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단순 설명자료 등에 대한 협회심사 면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7호~9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설명회 참석자 대상의 상품설명자료, 단순한 상품목록, 금융투자회사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는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상품명칭 변경 시 협회심사 면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1호 바목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 심사될 광고를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상품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심사필 표시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7조 1항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 심사될 광고의 부분변경 광고 및 동일 형식의 반복광고의 경우 협회 심사필을 표시하도록 함

- 투자광고의 크기·색상·배열, 전화번호, 주소, 지점명, 판매회사, 수탁회사, 수익율, 기준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부적합한 설명 및 교육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1조 : 2009/8/28 개정, 9/7 시행)

- 투자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매매거래기법 등의 설명이나 교육행위를 금지함
  -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에 대해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투자기법 등의 교육은 부적합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설명의무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32조, 별표2-1 : 2009/8/28 개정, 9/7 시행)

-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와 관계없이 FX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위험, 투자 구조 및 성격 등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도록 함
  - 자본시장법상 적정성원칙의 구체화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조 3항 : 2009/8/28 개정, 10/5 시행)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 위험도 및 수익구조 등 해당 상품의 핵심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핵심설명서의 교부의무를 신설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광고 심의기준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7조, 별표9 : 2009/8/28 개정, 9/7 시행)
  -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시 위험고지 화면을 5초 이상 정지토록 의무화함
  - 유사통화선물거래의 고유 위험에 대한 사항을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의무기재사항에 추가함
    - 원금초과손실 가능성, 유지증거금 미달시 미결제 약정 처리 방법 및 유사통화선물거래시 위탁수수료 이외 별도의 거래비용 발생 사실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임직원 등에 대한 사전 제공 금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8조 3항 : 2009/9/25 개정, 10/1 시행)
  - 회사는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조사분석결과를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토록 할 수 있으나,
    - 이러한 제3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와 무관한 임직원과 조사분석 대상법인을 제외함
  
- 이해관계 고지대상 법인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29조 2항 : 2009/9/25 개정, 10/1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를 부과함
    - 대상법인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인수의 경우 해당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손익 변동 등
    - 고지 기간 : 모집주선 또는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 경과 전

-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제도 도입에 따른 광고규정 정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 2009/9/25 개정, 10/1 시행)
  - 협회 심사필을 받은 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협회의 광고심의를 면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으로 환매금액 수령시기,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약관 등 중요사항 변경시 고객 통지의무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12조, 19조, 22조, 28조 등 : 2009/2/26 개정, 3/9 시행)
  - 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 결제조건 등의 변경, 약관의 변경 등의 경우에 “영업점과 전자통신매체” 모두에 게시하도록 함
  
- 약관변경 권고 거절시 제정·변경 의사 철회 간주조항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8조 4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의 약관변경 권고를 거절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을 삭제
  
- 계좌설정시 위탁자정보 추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17조 2항 : 2009/3/20 개정, 3/23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확인하는 사항을 반영
    -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 보유 여부, 국내거주 여부 사항 등

- 호가 제출사항 추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정 25조 2항 12호 : 2009/3/20 개정, 3/23 시행)
  - 국내거주 여부 사항 및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의 보유 여부 구분 반영

#### 다. 재무건전성규제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신탁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와 중복되는 공탁의무를 제거하여 신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
    - 종래 신탁업자의 신탁의무 위반으로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도록 의무를 부과
  
- 월별 업무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생략  
(금융투자업 규정 3-66조 1항 1호 : 2009/2/4 개정·시행)
  -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시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요구되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생략을 허용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관련 위임사항 명시  
(금융투자업 규정 6-29조 : 2009/2/4 개정·시행)
  -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와 관련한 수량기준,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등을 정함

##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 파생상품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요건 정비

(금융투자업 규정 5-49조 : 2009/2/4 개정 · 시행)

-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신설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자를 상근임원에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 변경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요건 정비

## 2. 집합투자기구

### 가. 진입규제

###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조의2 : 2009/2/3 개정, 2/4 시행)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 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제한하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완화
  - 집합투자업자는 최소한의 규제만 받으면서 혁신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기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확대됨

###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보유 승인 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9조 2항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요건을 구체화함
  -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 받은 펀드가 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함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조의2 : 2009/12/21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249조의2)에서 특례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 국가, 투자판단과 위험능력을 갖춘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의 헤지펀드 설립 허용
  -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300%, 채무보증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50% 이내로 허용
  - 종래 PEF는 채무보증이 금지되어 있으며, 차입한도도 10%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나. 영업·상품규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기초자산의 개별가격 또는 종합지수로 확대
  - 금 또는 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용어 정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조, 4조, 15조, 18조, 20조, 20조의2, 31조, 88조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펀드”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로 변경

□ 약관 변경시 인터넷홈페이지 등 공시의무 부여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1 15조, 별표2 28조, 별표3 13조, 별표4 16조 등 : 2009/8/28 개정, 9/1 시행)

-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하던 종래의 직접 통지 의무 이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의무를 추가 부여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2 20조 4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거래내용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10거래일 이내로 제한하고 동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하던 조항을 삭제
  - 약관규제법상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에 해당

-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약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6 9조 1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투자매매업자등은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통장 또는 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매도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
  
- 수익증권판매회사의 저축금 이용료 지급의무 부여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11 6조 4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수익증권판매회사가 저축금 이용시 그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개정
  
-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 약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13 5조·17조 : 2009/8/28 개정, 9/1 시행)
  - 종래에는 고객의 대리인 변경 통지 도달 이전에는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를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하였으나, 금융투자회사가 대리인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간주조항 적용을 배제함
  - 주문체결결과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결제대금의 추가납입 등의 통지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기간 및 기타 회사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기간 제한규정을 삭제
    - 이의제기기간 제한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문에 해당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약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4조~5조, 8조~9조 : 2009/8/28 개정, 9/1 시행)

- 위탁증거금 및 유지증거금 징수기준을 명확화
  - 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고지 의무 부여
    -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일중매매거래 관련 위험을 고지하도록 명시
  -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여
- “일정금액 인출식” 저축계약 신설 및 환매수수료 우대사유 추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11 5조 3항 1호 : 2009/9/25 개정, 10/5 시행)
- 거치식 저축의 종류에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의 저축재산을 매일 인출할 수 있는 “일정금액 인출식” 저축계약을 추가함
    - 인출금은 수익금이 발생한 범위 내로 함
    - 일정금액 인출식 저축계약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 증권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면제
- 적립식저축의 저축기간 및 목표식저축의 목표금액 조정 허용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11 5조 3항 : 2009/9/25 개정, 10/5 시행)
- 적립식저축의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 없이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저축기간의 연장 또는 저축금액(저축목표금액)의 감액 또는 증액을 허용함
    - 적립식저축 :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저축기간의 만기 도래와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기간도 일정기간 이상으로 하여 만기개념을 없앴
    - 목표식저축 :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저축목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저축자의 요청에 따른 저축기간·저축금액·저축목표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객 정보확인 절차는 생략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또는 저축금액을 정하는 경우는 저축자의 자율적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약관의 불리한 변경시 고객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표준약관 공통 : 2009/11/4 개정, 11/16 시행)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를 통지하도록 함
  -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고객의 수신가능성 및 편의성 향상
- 이러한 개정 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기재된 표준약관에 반영
  - 매매거래설정약관(15조),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28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13조), 신용거래약관(16조),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14조),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7조) 등

□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글로벌거래 수탁거부 사유로 지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5조 1항 8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회사가 정한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를 통하여 코스피200선물시장의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도록 함
  - 회사는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예탁총액 및 예탁현금, 미결제약정 수준을 감안하여 일별로 글로벌거래참여계좌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해야 함
  -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수탁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항 4호)

□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별첨 2조~6조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글로벌거래 참가신청 방법 명시

- 위탁자가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한국거래소 규정(파생상품 시장업무규정 114조의2 2항)에 따른 “글로벌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고객의 거래편의를 위해 서면 이외에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도 계약체결을 허용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 114조의2 2항)**

- ① 글로벌거래 참여에 관한 사항
- ② 글로벌거래 관련 예탁총액·현금에 대한 인출 제한에 관한 사항
- ③ 글로벌거래의 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글로벌거래 관련 인출제한의 기준 명시

- 정규거래 종료 후 회사가 정한 시간동안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기본 예탁금액과 파생상품계좌에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응증권 등에 대해서는 인출을 제한함
-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전 회사가 정한 시간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거래 주문의 수탁방법

- 고객은 전자통신방법 중 컴퓨터통신(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한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함

— 글로벌거래 참가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동의

- 글로벌거래의 참가고객이 회원공동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글로벌거래의 개장 및 운용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거래소가 제공받음에 있어서 해당 고객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함

— 글로벌거래의 중단사유

- 거래소시스템 또는 회원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음
- 회원의 과도한 호가제출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글로벌거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가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탁한 해당 주문은 체결되지 않음

□ 외국증권예탁증권에 대한 대표주관계약 체결 의무 부과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3조 1항 : 2009/2/28 개정, 3/9 시행)

- 주식 이외에 외국증권예탁증권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시에  
도 대표주관계약 체결의무 부과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운용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2조 5항 3호~4호 : 2009/12/21 개정·시행)

-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PEF의 직접 투자를 허용

- 종래에는 민간투자회사법상 SOC투자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투자만 허용

- 설비투자펀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PEF가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시설 및 설비”를 추가함

- 조세특례제한법(24조~25조의4)의 시설 및 설비

□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4항 : 2009/12/21 개정·시행)

- 보고서 제공은 전자우편 또는 직접교부 중 하나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등은 자본시장법(89조 2항)에서 정하는 수시공시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는 우편발송을 선택할 수 있음

□ 자산운용보고서의 세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3항 : 2009/12/21 개정·시행)

- 자산운용보고서를 전체보고서와 요약보고서로 구분하고, 전체보고서는 1년에 한번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요약보고서로 대체함
  - 전체보고서의 내용 중 수시공시대상이거나 투자자가 반드시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은 삭제
  - 요약보고서 항목은 현행 보고서보다 축소하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개선

## 다. 재무건전성규제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도 개선

(금융투자업 규정 7-15조~7-16조 : 2009/7/6 개정·시행)

-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의 편입한도를 설정
  - 펀드재산의 5% 이내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

(금융투자업 규정 2009/7/6 개정, 10/7 시행)

- 펀드재산의 40% 이상

□ 증권 발행실적보고서의 예외 인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19조 4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집합투자증권은 수시로 판매·환매가 발생하므로 집합투자기구가 사업연도별 순발행실적을 회계기간말부터 1개월 내에 제출토록 함
  - 증권발행인은 원칙적으로 모집·매출을 완료할 때 지체없이 주주 지분변동 등을 보고해야 함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신고의무사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67조의2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현금설정 방식으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변경시 신고의무 근거 추가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및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등의 신고의무를 국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적용

□ 집합투자기구 영업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6호·9호 : 2009/5/20 개정·시행)

- 집합투자기구 영업보고서의 제출주기를 연장
  -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 " 2월 " (자본시장법 적용펀드에만 적용)
-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주기를 연장
  -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 " 2월 " (자본시장법 적용펀드에만 적용)

□ 증권 대차거래 약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5 8조 5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비율을 13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던 조항을 삭제

- 대차 거래시(전문투자자간 거래 제외) 최저 담보비율 100% 조항은 유지

2008년 9월 금융위원회가 증시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함에 따라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도 담보비율을 130%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에 마련함. 그러나 2009년 5월 증시가 안정화되자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해지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주식 대차거래시 130% 이상 담보비율 유지 조항도 폐지함

□ 토지신탁수익의 선지급 한도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5조 6항, 별표15 : 2009/12/14 개정, 2010/1/4 시행)

**토지신탁**

신탁회사가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유효시설(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을 조성한 다음, 처분·임대 등 부동산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을 말함.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차입형과 사업비의 조달(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이 있음

- 토지신탁의 신탁종료 전 지급하는 선지급의 범위가 토지비를 추가한 “신탁수익(신탁이익, 토지비)”으로 확대되는 한편, 신탁수익의 과도한 선지급을 규제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 신탁사업 실적 및 토지신탁 종류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될 수 있도록 재산상 이익 한도 규정에 “선지급 금액 한도 기준”을 마련함
  - 선지급 조건, 선지급 금액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동규정 별표15)하고 해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선지급을 금지
  - 금융투자회사의 일반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용되는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 및 금융투자회사 연간 총 한도의 적용은 배제

## 라. 가격규제 및 기업지배구조 등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 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종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해외진출이 제한되었음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금융지주회사법 2조 1항 8호 라·마, 8조의5, 9조 : 2009/7/31 개정, 10/10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은행 또는 그 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은행법 2조 1항 9호, 15조의3~5, 16조의5 : 2009/6/9 개정, 10/10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권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
  -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보유 승인 요건

(은행법 시행령 10조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요건을 구체화함
  -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 받은 펀드가 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사실이 없어야 함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요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3조의6 4항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갖춰야 할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9조 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지 않을 것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 세금 정산목적 환매·재매입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11 9조 6항 : 2009/9/25 개정, 10/5 시행)

— 세금 정산 목적의 환매·재매입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를 면제함

- 재매입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 기산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기산

□ 외국회사에 대한 국내 PEF 투자 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2조 3항, 295조 4항, 부칙 4조 : 2009/12/21 개정·시행)

-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당해 회사 및 그 종속회사의 재산을 50%이상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PEF의 투자를 허용함
  - 단,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회사 지분으로 변경토록 의무화하고,
  - 2010년 말(201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등의 범위

(금융투자업 규정 7-48조 : 2009/12/21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292조 3항 3호)에서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당해 회사 및 그 종속회사의 재산을 50%이상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PEF의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범위를 정함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수출보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상한 인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 4항 1호·2호 : 2009/12/21 개정 · 시행)

- 펀드 투자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를 인하함
  - 판매수수료 한도 : 연 5% → 연 2%
  - 판매보수 한도 : 연 5% → 연 1%

## 펀드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일회성)”을 말하며,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계속적)을 의미함(자본시장법 76조 4항)

-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율이 체감하는 구조(CDSC, 이연판매보수)인 경우로서 일정 투자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 미만일 때는 판매보수 상한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금융투자업 규정(4-48조)에서는 일정 투자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점부터 연 1%에서 연 1.5%까지 판매보수를 허용

### □ 펀드 판매보수 상한 제한의 예외

(금융투자업 규정 4-48조 : 2009/12/21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77조 4항 2호)에서 펀드 판매보수의 상한을 연 1%로 제한하되, 이연판매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판매보수 상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을 “이연판매보수체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 미만인 경우”로 규정함
  - 해당 펀드는 연 1.5%까지 펀드 판매 보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

## 이연판매보수제(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가입기간에 따라 펀드의 클래스를 여러 개로 구분하여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판매 보수가 낮은 클래스로 옮겨타는 방식으로 “체감식 판매보수”라고도 함. 장기투자자가 훨씬 적은 판매 보수를 물게 되는 구조로 펀드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 집합투자증권의 대고객 통보 내용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1조 : 2009/12/14 개정, 2010/4/1 시행)

- 종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내역 및 평가금액 등에 대한 통보의무만을 부담(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1조)하고 있었으나,
-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펀드규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대고객 통보사항에 “순자산총액, 설정원본 및 적용법률”을 추가함
  - 펀드규모는 집합투자회사가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 및 본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왔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회사의 통지내역에도 추가

### 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SPAC에 대한 집합투자 조항 적용 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4항 14호 : 2009/12/21 개정·시행)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한 일종의 명목회사(paper company)

- SPAC 설립 후 공모자금은 합병 또는 해산시까지 안전하게 예치·신탁되고 경영진이 대상기업 발굴을 개시하며, 일정기간(국내 36개월) 내에 주주가 기업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스폰서 및 투자자가 기업인수 성공 후 합병이익을 향유하는 구조
- 일정 존속기한 내 M&A 실패시에는 투자자금을 반환

- 공모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 집합투자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발행 주권을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로 정의함
  - SPAC의 경우 자금모집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나 공모자금을 다른 기업과의 합병에만 사용하고 합병 후에는 사업 실질을 갖춘 새로운 회사로 전환되므로 자금운용과 이익배분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와 다른 특성을 가짐
  - 미국의 경우 SPAC은 상장회사 제도로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장외시장(OTCBB) 등록기업으로서 발전하였으나, 국내 장외 주식시장(제3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현 단계에서 국내 SPAC은 상장기업이 아닌 장외시장 등록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어려움
- SPAC으로서 집합투자기구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함
  - i) 공모자금의 증권금융 예치·신탁, ii) 해당 예치금액의 인출 및 담보금지, iii) 받기인 1인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업자, iv) SPAC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요건 충족, v) SPAC 투자자 보호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충족 등의 요건
  -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예치·신탁자금반환기준 및 금융투자업자의 출자의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함
- SPA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사 SPAC”의 경우는 집합투자기구로 추정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집합투자 적용 배제 기준

(금융투자업 규정 1-4조의2 : 2009/12/21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 4항 14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집합투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에서 금융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자금의 예치·신탁 및 예외적 인출 요건과 예치기관의 지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청산시 예치·신탁자금의 지급기준

-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전 대상회사의 특정 금지
-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의 규모 및 최저 투자한도
-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 및 예치·신탁자금의 지급기준반환 사유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신탁금액과 예치기관

(금융투자업 규정 1-4조의2 1항~2항 : 2009/12/21 개정·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제외한 주권 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등 지정 예치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 신탁업자(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를 예치기관으로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신탁자금의 예외적 인출 사유

(금융투자업 규정 1-4조의2 3항·5항 2호 : 2009/12/21 개정·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예치·신탁한 자금을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출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함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 정관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해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 금융투자업자의 규모 및 최저 투자한도

(금융투자업 규정 1-4조의2 4항·5항 3호 : 2009/12/21 개정·시행)

- 기업투자회사의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으로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 투자매매업자이어야 함
  - 당해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발행주식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함

□ 정관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해산사유 및 예치·신탁 자금의 지급  
(금융투자업 규정 1-4조의2 5항 : 2009/12/21 개정·시행)

- 정관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해산사유는 90일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3년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되는 경우
-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주주에게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 예치·신탁된 자금등을 배분해야 함

□ SPAC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6조 1항·3항 : 2009/12/24 개정·시행)

- 일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 125조 1항) 중에서 일정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대한 예치·신탁자금의 투자자지급에 관한 사항
  - 발기인 및 주주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 적용배제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 SPAC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6조 6항 : 2009/12/24 개정·시행)

-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증권신고서의 제출시 첨부서류(자본시장법 시행령 125조 2항)와 중복되지 않는 것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전 주권 및 주권관련사채권 등(이하 주식등)의 소유자의 계속보유확약서·보호예수증명서 사본
  - 주식등 소유자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에 관한 약정서 사본

- 주식등 소유자의 예치자금등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사본
  - 손해배상책임 관련 약정서 사본
  -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와 체결한 주권발행대금의 예치·신탁계약서 사본
- 다만, 사업연도 경과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신 “사업연도 경과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시점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SPAC은 설립 이후 최초사업연도 경과 전에 공모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

□ SPAC 합병시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9조 2항 6호 가목 : 2009/12/24 개정·시행)

- 일반 회사 합병시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SPAC 합병시에도 활용하도록 함
- 다만, 첨부서류 중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SPAC의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SPAC 정기보고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3조 1항 : 2009/12/24 개정·시행)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함
- 다만, 기재내용에 “집합투자 적용배제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자자 및 감독당국이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조 29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모집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정의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 4항 14호)상 기업인수목적회사 정의와 개념상 일치

□ SPAC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0조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 관련 제출서류를 명시함
  - 설립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최대주주등의 주식 보호에 수증명서, 주식발행자금 예치·신탁계약서, 공모전주주등의 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약정서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32조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규모, 주식분산, 감사의견, 주식양도제한, 지배구조,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임원의 자격, 정관필수기재사항, 공모전주주등의 의결권행사제한 약정 등을 심사
  - 정관필수기재사항으로 사업목적, 공모자금 예치·신탁·반환에 관한 사항, 재무활동 제한 등을 명시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심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조 2항, 10조의3, 32조의3, 35조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비상장법인과 합병으로 발행된 신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의무화함
  - 비상장법인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
- 합병대상법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최대주주등의 주식 보호예수관련 협약서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대상법인 심사요건
  - 영업활동기간, 경영성과(이익요건), 감사의견, 최대주주 변경제한, 주식양도제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 등을 심사
  - 합병대상법인의 영업·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에 대한 질적 심사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관리종목 지정 사유
  - 임원의 자격, 자금예치·신탁의무 위반, 재무활동제한 위반, 상장예비심사 미청구,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미달 등
- 관리종목 지정해제 사유
  - 관리종목지정사유를 해소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7조, 80조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상장폐지근거를 마련
  - 관리종목지정사유(75조의2)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사업목적위반, 부적격법인과의 합병결의, 의결권행사제한 등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자진상장폐지는 인정하지 않음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95조 1항 11호의2·3항 6호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결의·결정에 대하여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합병공시 시점부터 당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함

- 다만, 신고당시 합병대상법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합병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규정을 배제
-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함
  - 예비심사결과 상장부적격인 법인과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의 취소시까지 매매거래정지를 연장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상장법인과 합병시 관리종목지정사유 적용유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75조 5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 관리종목지정사유 중 “매출액, 주식분포상황, 거래량” 요건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함
  - 매출액·주식분포상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최초 적용
  - 거래량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

□ SPAC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추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7조 8호·9호, 26조 1항 : 2009/12/21 개정·시행)

- SPAC 주권의 신규·신주상장 신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10조의2)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제출서류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 주식발행자금 예치·신탁확인서,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총액 확인서 제출

□ SPAC의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시기 명시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2조 : 2009/12/21 개정·시행)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75조의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의 시기를 지정함

- 사업보고서 제출일 또는 사유발생사실 확인일(또는 사유해소 확인일) 익일에 관리종목지정 또는 지정해제

□ SPAC과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자 범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46조의2 : 2009/12/21 개정 · 시행)

— SPAC의 특별이해관계자와의 합병을 금지함에 따라(상장규정 80조의2), 해당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발기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
- i)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중 SPAC관련 업무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i)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임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ii)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v)SPAC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또는 이들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 당해 SPAC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 겸직 회사

□ 상장예비심사 효력에 대한 포괄적 불인정 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6조의2 : 2009/12/21 개정 · 시행)

— 상장예비심사 결과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SPAC 정관필수 기재사항 마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4조의2, 별지18호의2 : 2009/12/21 개정 · 시행)

— 상장규정(32조의2 8호 바목)에 따라 세칙에 위임하고 있는 기업목적회사(SPAC)의 정관필수 기재사항을 마련함

□ SPAC 합병상장 · 신규상장심사수수료 부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50조, 별표2 : 2009/12/21 개정 · 시행)

- 합병상장수수료는 일반법인 신규상장심사수수료와 동일금액(500만원)을 부과
- 신규상장심사수수료는 일반법인 신규상장심사수수료의 1/2 수준인 250만원을 부과
  - SPAC이 일반법인에 비해 심사범위가 제한적인 점과 SPAC의 진입기준(자기자본 200억원, 자본금 50억원~100억원 예상)에 상응하는 신규상장수수료 수준(180만원~330만원)을 고려한 것임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의무사항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1조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SPAC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장법인과 동일한 공시관리 방법 · 절차 등을 적용하되, 일반상장법인과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특성 등을 반영하여 고유한 공시의무사항을 규정함
  -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임원 선임 · 해임 결의(당일공시) 및 임원의 사임(익일공시) 등 경영진 변동 사실
  -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 · 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예치(신탁) 계약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익일공시)
  -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이사회 결의 관련 공시의무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1조 2항 1호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합병 이사회 결의 공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합병 대상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음을 투자자에게 당일공시하도록 함

-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80%미만
- 관리종목 지정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신설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 관련 공시의무 신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1조 2항 2호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합병 주주총회 결의 공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투자자에게 당일공시하도록 함
  - 합병 후 일정기간 공모전 주주등의 매각제한 사실
  -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
  - 합병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 여부
  - 합병 대상법인이 부적격법인과 합병제한 요건 해당 여부

□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 단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0조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 일반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공시번복 제재를 적용하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원활한 M&A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하여 적용함

**조회공시**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거래소가 확인·요구한 경우 당해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하는 것을 말함. 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에 응답해야 하며, 상장법인이 풍문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M&A는 3월) 이내에 이를 전면취소,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번복”으로 보아 불성실공시로 제재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6조 1항 8의2 : 2009/12/21  
개정·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시규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함
  -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공시규  
정 11조 1항 4호) 또는,
  - 합병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  
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행사 제한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공시규  
정 11조 2항 2호 나~라)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조 28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모집을 통  
해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정의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 4항 14호)상 기업인수목적회사 정의 준용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조의3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규모 :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으로 완화)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 주식의 분산 : 소액주주수 200인 이상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의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 발행주식총액의 5% 이상
  - 질적심사 : 현행 주권의 질적심사 기준을 준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사업목적, 공모자금 예치·신탁·반환에 관한 사항, 재무활동 제한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심사요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9조의4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등(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심사청구를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의 상장요건을 규정
  -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의 규모 :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30 억원 이상일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이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상대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합병시 관리종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질적심사 : 현행 주권의 질적심사 기준을 준용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폐지요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일반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요건을 적용하되, SPAC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은 적용을 배제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신설 상장폐지요건
  - 임원의 자격요건 미달, 자금예치의무 및 재무활동 제한 위반, 합병상장심사 미청구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미해소시
- 상장폐지요건 적용 배제사유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일반우회상장관련 상장폐지규정과 주된영업정지시 상장폐지규정의 적용 배제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 또는 합병시 예비심사청구 제출서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조의3, 19조의4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 또는 합병의 경우 예비심사청구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4조의3 1항, 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동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추가적 제출서류를 정함
- SPAC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장법인의 상장신청 서류에서 일정 서류를 추가 및 배제함
  -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주거래은행 의견서, 벤처기업확인서,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는 제외
  - CB등 채무증권 발행·인수조건확인서류 추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12조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상장신청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함
  - 예치기관등이 발행한 자금예치·신탁확인서, 발기인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총액확인서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 지정·해제기준 및 시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6조 1항 15호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 지정·해제기준 및 요건별 지정·해제시기를 명시함
  - 임원의 자격요건 상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자금 예치의무 위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등 각각의 경우 지정·해제의 시기를 별도로 정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매매거래 정지·재개시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29조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결의·결정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시기를 명시
    - 합병대상법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예치 의무 및 재무활동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관리종목사유 해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자 범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33조 2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상장부적격법인과 합병에 있어 합병제한 특별이해관계법인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발기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임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술한 금융투자업자,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상술한 금융투자업자,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법인)의 대주주,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 금융투자업자,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한 회사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의무사항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9조의2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SPAC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장법인과 동일한 공시관리 방법·절차 등을 적용하되, 일반상장법인과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특성 등을 반영하여 고유한 공시의무사항을 규정함

-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임원 선임·해임 결의(당일공시) 및 임원의 사임(익일공시) 등 경영진 변동 사실
-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예치(신탁) 계약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익일공시)
-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 □ SPAC의 합병 이사회 결의 관련 공시의무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9조의2 2항 1호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합병 이사회 결의 공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합병 대상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음을 투자자에게 당일공시하도록 함

-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80%미만
- 관리종목 지정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신설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SPAC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 관련 공시의무 신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9조의2 2항 2호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합병 주주총회 결의 공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투자자에게 당일공시하도록 함

- 합병 후 일정기간 공모전 주주등의 매각제한 사실
-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

- 합병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 여부
- 합병 대상법인이 부적격법인과의 합병제한 요건 해당 여부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18조 1항 9호 : 2009/12/21 개정·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시규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함
  -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공시규정 9조의2 1항 4호) 또는,
  - 합병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행사 제한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공시규정 9조의2 2항 2호 나~라)

□ SPAC 주관회사의 수수료 수취 방법 제한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3조 2항 : 2009/12/23 개정, 12/24 시행)

- 발기인인 금융투자회사가 SPAC의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관회사의 수수료 중 50% 이상은 SPAC의 합병 성공이후 수취하도록 의무화함
  - 원칙적으로 대표주관계약에서 주관업무 수수료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별도의 규제가 없으나, 수수료 취득만으로 목적으로 하는 SPAC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임

□ SPAC에 대한 주식 주관회사 제한의 예외 인정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6조 1항 : 2009/12/23 개정, 12/24 시행)

-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기업공개 및 장외법인 공모시 주관회사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 SPAC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식 주관회사 제한규정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 발기인 투자매매업자가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지고 SPAC 투자를 주도하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려는 조치의 일환

□ SPAC에 대한 공동주관회사 제한 예외 인정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6조 4항 : 2009/12/23 개정, 12/24 시행)

—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신과 자기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및 장외법인을 공모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 등을 가지지 않은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SPAC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공동업무수행규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함

- SPAC 관련 know-how가 경쟁사로 유출될 우려를 방지하고, 발기인이 책임지고 IPO까지 진행시키는 SPAC의 특성을 고려한 것임

### III. 감독행정

#### 1. 법적규제기관

□ 과징금의 결손처분 및 환급제도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4조의2~434조의4 : 2009/2/3 개정, 2/4 시행)

-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의 과오납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지체 없이 환급금·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

□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 완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조사를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정보교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 위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 2009/5/29 개정, 6/1 시행)

-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융기능제고계획에 관한 이행상황의 점검 및 통보의 접수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51조의2, 64조, 70조 등 : 2009/7/31 개정, 10/10 시행)

-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 주요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출자자 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

□ 경영실태평가 기준 조정

(금융투자업 규정 3-25조 2항, 부칙 : 2009/7/6 개정 · 시행)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평가부문과 영위 영업별로 적용되는 업종별 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
  - 변경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적기시정조치에 활용하는 것은 2009년 10월분(부동산신탁업자는 2010년 4월분) 평가부터 적용

□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 2009/5/20 개정 · 시행)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절차적 · 사실적 사항 등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부적절하므로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담보부사채신탁업자의 등록
    -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 기재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등록업무 수행은 단순절차적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부적절함
  - 「증권의 발행 · 공시규정」의 집행을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공시서류의 기준 및 서식 제정 · 변경에 관한 보고의 수리와 정정 요구

- \* 각종 공시서류 서식의 제정·변경은 실무적 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결이 부적절함

□ 금감원장에 대한 위탁사항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17조 4호 : 2009/5/20 개정·시행)

- 금융위·증권위 소송업무수행 관련 사항을 금감원장에게 위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법정에서 변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

□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신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2009/9/15 개정·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및 정비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7-1)
  -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이사의 임명, 사장의 직무대행 선임, 임원의 겸직허가,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업무보고서 등의 접수, 경영개선계획의 접수 등 21개 사항
- 한국산업은행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7)
  - 지주회사 이사 임명
  - 외화표시 채무 부담에 따른 협의
- 보험감독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7)
  - 임원·사용인 100인 미만 법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등록취소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의 승인(국경간 거래에 한함)
- 회계감독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6)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에 대한 승인

- 증선위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금감원장에게 위탁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13조 4호 : 2009/5/20 개정·시행)
  - 증선위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감원 소속 직원(변호사)을 소송수행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소송수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규정의 개념 명확화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1조의2 : 2009/3/24 개정·시행)
  -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규정”의 개념정의 조항을 신설
    - 규정·지침·기준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
  
- 사전예고기간 단축 허용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2조 1항 : 2009/3/24 개정·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기간(20일) 단축을 허용
    - 규정변경 사전예고 생략 및 기간 단축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
  
-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 연장시 청구인 사전통보절차 보완 등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6조 1항~2항 : 2009/3/24 개정·시행)
  - 회신기한 연장시 연장사유 및 처리 예정기한 등을 회신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전자문서에 의한 회신도 가능하도록 명시

□ 규정명칭 변경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09/1/28 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상 “선물”이 “파생상품”으로 바뀜에 따라 종전의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으로 변경

□ 조사결과의 공표 관련 시행령의 위임 사항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52조 2항 2호·3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 조사결과의 공표시 포함될 사항
  - 위법행위자 소속·인적사항, 위법행위 내용·조치사항,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의 공표시 제외할 사항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 검찰고발·과징금 조치 이외의 사항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

□ 건전성 평가 기준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10조 : 2009/8/4 개정·시행)

- 금융위가 필요시 공사경영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

## 2. 자율규제기관

□ 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

(시장감시위원회 운영규정 3조 : 2009/1/5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상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에 제도개선 사항 반영

- 한국증권업협회, 선물협회가 각각 추천하는 1인 →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2인
-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서 명시

(시장감시위원회 운영규정 4조 2항 : 2009/1/5 개정, 2/4 시행)

- 위원장 유고시 1)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자, 2)금융투자협회 추천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 추천기관별 추천자가 복수(2인)임에 따라 추천기관이 동일한 때에는 1)선임일자, 2)선임일자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행

□ 회원자격의 정의 변경

(회원관리규정 4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금융투자업 진입규제가 금융기관별 인가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거래소 회원의 자격을 변경
  -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유가증권매매업, 위탁매매) 또는 선물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

□ 회원의 종류 다양화

(회원관리규정 3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법상 세분화된 상품별 인가단위인 특정상품에 참가하는 전문회원을 신설
  - 지분증권전문회원, 채무증권전문회원,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등

□ 회원의 재무요건 일부 변경

(회원관리규정 7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회원 가입시 재무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본금” 기준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
  - 종전의 결제회원 재무요건 중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적용

□ 회원의 가입 및 전환의 구분 명확화

(회원관리규정 5조 6항, 16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회원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회원의 업무단위 추가 및 제외에 대하여 처리구분을 명확히 하는 규정 마련
  -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회원이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회원이 증권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원가입”으로,
  -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회원간 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회원간 변경은 “회원전환”으로 함

□ 전문투자자 등록신청시 신분확인서류 확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2조 1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전문투자자 등록신청시에 개인(외국인 포함)의 경우 여권을,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를 신분확인서류로 추가 인정

□ 광고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7조 3항, 2-40조 1항·4항, 2-42조 1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의무표시사항 기재 면제 광고 확대
  - 의무표시사항 기재가 곤란한 광고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대전화 및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시에도 의무표시사항 기재를 면제하고,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의무표시사항 중 중요한 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표시 제도 개선
  - 운용실적 광고시 운용실적 산정 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실적이 좋은 구간만을 선택적으로 광고하는 등 불공정 사례 발생함에 따라,
  - 집합투자기구(MMF 제외) 실적광고시 운용실적 산정 기준일을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 전 10영업일내의 특정일”로 하고, 반드시 1년 수익률을 표시하도록 함
- 협회 심사 면제 대상 확대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를 협회심사면제 대상에 포함

□ 경영금융투자회사 등의 징계내역보고 범위 조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69조 : 2009/3/24 개정·시행)

- 경영금융투자회사 등의 징계내역보고 범위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징계 등 전문인력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 한정
  - \* 경영금융투자회사 등 : 경영금융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편 7장 : 2009/5/29 개정, 6/10 시행)

- 신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래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통합하여 마련
-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을 “신상품”으로 정의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금융투자상품
  - 금융공학 등 신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금융투자상품
  - 기존의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 신상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업무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상품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3인 이내)를 위촉
- 위원회의 심의사항
  - \* 배타적 사용권 부여대상 신상품 여부 및 부여기간
  - \*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관한 이의
  - \*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대한 침해배제
-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8영업일째 되는 날”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 발생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취득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투자광고 정의 명확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조 : 2009/7/24 개정, 8/3 시행)

- 일정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투자광고로 정의
  - 광고매체의 종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매체에 준하여 나열
  -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는 투자광고에서 제외
  - 투자권유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광고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로 한정

□ 약식광고 규제 폐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5조, 2-42조 : 2009/7/24 개정, 8/3 시행)

- 약식광고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이 없어 투자광고로 보기 곤란하므로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약식광고에 대한 규제를 폐지

- 다만, 회사 이미지 광고는 현재와 같이 계속 심사하되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파급효과가 큰 경우만 협회가 심사
  - 그 밖의 회사 이미지 광고는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심사

□ 특약조건 표기의 적정성 심사 근거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8조 12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일정한 우대조건에 해당시 수익률 등을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 우대조건을 우대 수익률의 표시와 근접하여 표시하고 우대 수익률 글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함

□ 동일 형식의 반복광고 심사 절차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2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동일 형식으로 기초자산, 수익율 등만 변경하여 반복 사용하는 광고는 협회가 기본적 형식을 심사하되, 매 광고시 변경되는 부분은 준법감시인이 심사

□ 광고매체 단순 추가시 협회심사 면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1호 마목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를 내용의 변경없이 다른 광고매체를 이용할 경우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단순 설명자료 등에 대한 협회심사 면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7호~9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설명회 참석자 대상의 상품설명자료, 단순한 상품목록, 금융투자회사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는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상품명칭 변경 시 협회심사 면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2조 1항 1호 바목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 심사필 광고를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상품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심사필 표시 개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47조 1항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 심사필 광고의 부분변경 광고 및 동일 형식의 반복광고의 경우 협회심사필을 표시하도록 함
    - 투자광고의 크기·색상·배열, 전화번호, 주소, 지점명, 판매회사, 수탁회사, 수익율, 기준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애널리스트의 24시간 매매거래 제한의 예외 허용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31조 3항 : 2009/9/25 개정, 10/1 시행)
  -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미미한 경우에는 애널리스트의 24시간 매매제한 및 7일 동일방향 매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고유계정에 적용되는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사항을 애널리스트의 자기계산 매매에 대해서도 적용함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시 제출 서류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9조 1항 : 2009/9/25 개정, 10/1 시행)

- 투자권유대행인의 협회 등록 제출서류 중에서 신원증명서를 삭제함

□ 100억 이상 펀드에 대한 별도의 비교·공시조항 마련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83조 : 2009/10/27 개정)

- 펀드에 대한 비교·공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인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함

**종류형집합투자기구(Class Fund)**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해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뜻하며(자본시장법 231조), 통상 멀티클래스펀드(Multiple - Class Fund)라고 함

-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표되는 운용실적비교공시부터 적용함
- 운용실적 비교·공시의 공시주기는 1개월임

□ 순위표시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변경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85조 : 2009/10/27 개정)

-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펀드의 운용실적에 대한 비교·공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순위표시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선정 기준 중 운용경과기준 및 운용규모기준을 통일시킴
  -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규모기준)이고 운용경과일수가 1년 이상(운용경과기준)이면 순위표시 대상으로 함
- 그 밖에 순위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요건을 추가함
  -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가 10개 이상일 것, 과거와 동일한 유형을 유지하고 있을 것, 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국내투자형이고 추가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표되는 운용실적비교공시부터 적용

**모자형 집합투자기구(Master-Feeder Fund)**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 동일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지는 다수의 펀드(자펀드)의 자산을 하나의 펀드(모펀드)에 모아서 통합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펀드구조라 할 수 있음.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주체가 동일해야 하며,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증권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자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 순위표시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등급표시를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4-86조 : 2009/10/27 개정)

- 종래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대한 표시방식(AAA~BB)이 신용평가사의 등급표시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펀드수익률에 관한 순위만 표시하고 등급 표시는 삭제함

-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표되는 운용실적비교공시부터 적용

□ 약관변경 권고 거절시 제정·변경 의사 철회 간주조항 삭제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8조 4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의 약관변경 권고를 거절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을 삭제

□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사유의 합리적 조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15조 : 2009/3/24 개정, 4/6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의 정합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해, 제재사유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본시장법령 등으로 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법령위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제재사유를 삭제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정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3조 : 2009/7/10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52조의2)상 파생상품펀드 관련 근거조문의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정의를 개정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취소 후 재접수 허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별표 6 : 2009/7/10 개정·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인력 수급 및 응시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자격시험의 원서 접수기간내에서는 접수 취소를 한 후에도 재접수 허용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협회 등록 유예기간 확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4조 : 2009/8/28 개정·시행)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교육대상이 아닌 자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협회 등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교육대상이 아닌 자 : 펀드판매 예비인가신청 준비회사의 임·직원 및 일반인
    - 비 교육대상의 경우 시험합격 후 2년 이내에 협회등록시에만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등록기한내 미 등록시 자격요건이 소멸됨
  
- 투자권유자문인력제도 개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3조 1호, 1-4조 1호~4호, 3-1조 1호, 부칙 3조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Investment Advisor)**

일반적으로 “투자상담사”라 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종래에 8개로 세분화되어 분류되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경영사, 전업사의 영업현실을 고려하여 펀드, 증권, 파생상품의 3종류로 단순화하여 분류함
  -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재분류함

- 종래의 투자자문상담사는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에 포괄하고, 전문투자자상담사는 투자상담사(증권, 파생)에 포괄하여 운영하도록 함

기 준	개 정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투자상담사(펀드 or 증권 or 파생)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상담사(증권 or 파생)

— CMA 투자권유자격 단일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2009/12/1 개정·시행)

- 종래에는 CMA 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의 자격을 별도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권투자상담사”로 통합함

— 시험의 종류를 펀드, 증권, 파생상품의 3종류로 단순화하여 시행함

- 증권펀드·파생상품펀드·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펀드투자상담사시험”으로 통합하고,
-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대한 시험은 유지

— 경과조치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보유자는 통합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더라도 증권펀드 취급을 허용하되, 통합자격 보유를 위한 전환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 펀드투자상담사시험 사전판매교육의 폐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4조 1호, 5-2조 3항, 부칙 3조 5항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종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던 의무 사전교육은 폐지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등록교육으로 전환함

□ 투자운용인력제도 개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3조 3호, 1-4조 5호, 3-1조 4호, 부칙 9조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종래에 4개로 세분화되었던 투자운용인력을 “투자자산운용사(펀드 매니저)”로 명칭을 통합함
  - 명칭을 일원화 하되, 투자운용을 하는 대상 자산(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에 따라 등록요건을 달리함

기 존	개 정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 투자 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시험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으로 통합함
  - 일임투자자산과 집합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자산운용사)간에 업종 전환시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의 부분 응시를 통해 통합자격을 부여함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투자운용사의 자격요건(시험, 경력, 교육)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제도 개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3조 2호, 1-4조 4호, 1-5조 3항, 5-1조 2항, 5-2조 5항, 5-5조 1항 2호, 부칙 8조 2항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Certified Investment Advisors Manager)

“투자상담관리인력”이라 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 — 투자상담관리사에 대한 별도의 시험 폐지

- 별도의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증권)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전부 취득하도록 하고,
- 다른 보수교육주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상담관리사 등록자에 대해서는 등록교육 및 연 1회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함

####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에 대한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선정하여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 — 경과규정

- 동 규정의 시행 당시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자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간주하고, 투자상담관리인력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면제함
- 다만, 시행 1년 이내(2011/2/4)에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금융투자분석사제도 개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3조 4호, 1-4조 6호, 3-1조 5호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금융투자분석사(Certified Research Analyst)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라고 함

- 자격시험을 유지하되, 금융투자분석사의 준법의식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요건을 확대함
  - 종래에는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만을 금융투자분석사의 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합격자,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보조업무 종사자,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자,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분석교육과정 수료자”로 확대함

□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제도 개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15조 1항, 2-16조, 부칙 13조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금융투자회사 인력이 아닌 펀드관계사 인력이므로 금융투자회사 전문 인력에서 제외함

기 존	개 정
집합투자재산계산사	펀드사무관리인력
집합투자기구평가사	펀드평가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자산평가분석사	채권평가인력

□ 재무위험관리사제도 개편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4-1조 1항~2항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재무위험관리사에 대한 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어렵고 관련 전문 인력이 시장에 충분치 않아 업무영위를 위한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자율자격시험으로 전환함

□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3-11조, 부칙 12조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의 자격시험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 시험합격 또는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험의 재응시를 강제화

□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의 등록제도 도입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1-4조 2호 다, 5-5조 1항 1호, 부칙 5조: 2009/12/1 개정 · 시행)

—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 없이 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의 자체로 이루어지는 등록 교육을 통해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 협회의 통지기간 명시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3조 4항 : 2009/4/24 개정 · 시행)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종결사실에 대한 통보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

- 분쟁조정 절차상 협회는 당사자의 자진취하 등의 사유 발생시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종결처리하고 그 결과 및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자료 제출 및 보완기간 명시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2조 1항 : 2009/4/24 개정 · 시행)

—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사실조사를 위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그 자료의 제출 및 보완 기간을 명시함

-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기간 : 14일 이내
- 당초 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 : 7일 이내
-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연장 가능

□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설치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8조의2 1항 : 2009/3/24 개정·시행)

-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자율규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8조의2~3 : 2009/3/24 개정·시행)

-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협회 정회원의 대표이사, 학계·연구기관의 외부전문가 등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율규제 관련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

□ 신상품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5조 2항 : 2009/5/29 개정, 6/10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신상품 보호(2편 7장)”를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으로 추가

□ 회원과 거래소간 별도의 시스템 연결 기준 제정 근거 마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104조의2 1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회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 연결방법 등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연결기준 제정·변경시 거래소의 회원 통지 의무
  - 회원의 기준 준수 의무 명시

□ 회원시스템과 코스닥시스템간 연결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 근거 신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52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회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코스닥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코스닥시스템과 회원시스템의 연결방법 등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의 제정·개정시 거래소의 통보 의무 부과
  - 회원의 기준 준수 의무 명시

□ 회원과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간 연결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 제정 근거 마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60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회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방법 등을 거래소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연결기준 제정·변경시 거래소의 회원 통지 의무
  - 회원의 기준 준수 의무 명시

## IV. 상장법인

### 1. 기업경영감시

-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5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대상 주식의 범위를 축소 조정
    -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함
  
-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기준시점 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7 1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결합채무제표 작성 의무 등의 폐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조의2 3호, 1조의3, 2조 : 2009/2/3 개정 · 시행)
  - 결합채무제표의 작성 의무 및 결합채무제표 작성 회사의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를 폐지
    -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조의2 4항 : 2009/2/3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
  - 감사에 대한 규제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조 3항~5항 : 2009/2/3 개정, 2010/1/1 시행)

- 감사인이 제한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이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 (13조 : 2009/2/3 개정 · 시행)

- 종래 규정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하여 단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상법 542조의3 : 2009/1/30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하고, 당해 회사 외의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부여 가능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범위에서 당해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당해 회사 외의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가능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법 542조의4 : 2009/1/30 개정, 2/4 시행)

- 일정한 지분을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상법 542조의6 : 2009/1/30 개정, 2/4 시행)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을 위한 소수주주의 지분율을 3%에서 1.5%로 낮추고,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상법 542조의7 : 2009/1/30 개정, 2/4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3%에서 1%로 완화하는 한편,
-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상법 542조의8 : 2009/1/30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

□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상법 542조의10~11 : 2009/1/30 개정, 2/4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상법 542조의12 : 2009/1/30 개정, 2/4 시행)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선임방식은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위원 선·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상법 시행령 10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상법 시행령 11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다른 상장회사에 대한 행사요건의 1/2로 완화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 회사

(상법 시행령 12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규정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등

(상법 시행령 13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사외이사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 등
-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범위

(상법 시행령 1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와 주요주주 등의 거래가 금지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규정
  -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등

□ 상근감사 설치 범위 (상법 시행령 15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 상장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감사위원회 설치범위 (상법 시행령 16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감사 등 선·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상법 시행령 1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2. 지원·관리제도

□ 상장법인 등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0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관련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해당 반기·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커질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

□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2~165조의18 : 2009/2/3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2009/2/4)되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 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상법 542조의9, 624조의2 : 2009/1/30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함
  - 다만,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거래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정형화된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용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

(상법 시행령 8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법」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규정함에 따라,
  - 해당 증권시장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13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특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특정

(상법 시행령 9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 외에도 해당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등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여대상 및 부여한도 등을 규정

□ 자기주식 처분기간 조정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9조 1항 : 2009/7/6 개정·시행)

- 자기주식 처분기간 조정
  - 자사주 처분기간을 “이사회 결의일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3월 이내”로 변경

## V. 기업지배구조와 구조조정

### 1. 일반기업

-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 구체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4조 6호 : 2009/7/6 개정·시행)
  -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제한되는 평가제한 감사인에 합병당시 계약을 맺고 있는 감사인 이외에 평가대상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감사인을 포함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서류 기재사항 간소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3-15조 2항 3호·3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M&A 진행과정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 기재사항이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간소화
    - 종래 피권유자의 성명,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모두 기재토록 하였으나, 피권유자의 범위만 특정하도록 간소화
    - 발행인 이외의 자 및 주총 목적사항에 반대하는 자가 권유하는 경우 목적사항이 무엇인지만 기재
  - M&A 공격자와 방어자간의 형평을 감안, 공격자가 파악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인사 사항의 기재를 면제
  
- 기업합병시 외부평가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5 1항, 176조의6 2항~3항 : 2009/12/21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의무를 부여함

- 기업합병시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
-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분할되는 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외부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함
  - 종래에는 분할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일 경우에만 외부평가를 받도록 함
- 기업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업 양수도시에도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를 제한함
  -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금지

## 2. 금융기관

### □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

(금융지주회사법 8조의2 3항 : 2009/7/31 개정, 10/10 시행)

-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연기금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출 것
  - 해당 공적 연기금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을 것

###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

(금융지주회사법 8조의2, 8조의4 : 2009/7/31 개정, 10/10 시행)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확대
  -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 → " 9%

-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 등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20조, 25조, 31조, 33조 : 2009/7/31 개정, 12/1 시행)

- 보험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
-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

(금융지주회사법 22조 : 2009/7/31 개정, 12/1 시행)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간 기존에 형성한 법률관계에 대한 출자규제 등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장 2년간 연장 가능
  - 금융·비금융 사이의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금융지주회사법 34조~35조, 36조 3항, 37조 : 2009/7/31 개정, 12/1 시행)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회사와의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등 거래를 제한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임점검사(on-site examination)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비은행지주회사 등이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들과 거래함에 있어 무상양도 등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규제

□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

(금융지주회사법 39조 : 2009/7/31 개정, 2010/2/1 시행)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이나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
  -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등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관여의 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3조의3 2항, 8조 1항, 9조 1항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사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법 2조 1항 10호 나목, 8조의4~5)
  -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당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로서 규제를 받음

### 비금융주력자란?

금산분리의 원칙에 있어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함.

구체적으로 i)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인 경우 해당 동일인, ii) 동일인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 동일인, iii) i) 또는 ii)의 요건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100분의 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iv) i) 또는 ii) 또는 iii)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무한책임사원이거나 100분의 1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의미함 (금융지주회사법 2조 1항 8호, 은행법 2조 1항 9호)

—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관여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주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임원 등을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 은행지주회사와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경영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 기금등의 비금융주력자 규제 배제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7조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은 기금등이 내부에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법 8조의2 3항 2호)

- 이해상충 방지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기금등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등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됨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금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을 구체화함
  -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

(은행법 16조의2 등 : 2009/6/9 개정, 10/10 시행)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에서 9%로 조정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의무를 부과

□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

(은행법 48조의2, 65조의3, 66조 등 : 2009/6/9 개정, 10/10 시행)

- 금융감독당국 등은 은행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
- 대주주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의 위법행위 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에 대한 경영관여 요건

(은행법 시행령 1조의6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사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법 2조 1항 10호, 15조의2~3)
  -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당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대주주로서 규제를 받음
-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의 요건을 구체화함
  - 주주로서 은행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를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 은행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은행장 등 경영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기금등의 비금융주력자 규제 배제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요건

(은행법 시행령 11조의3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법은 기금등이 내부에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법 16조의2 3항 3호)
  - 이해상충 방지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금등에 대해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을 구체화함
  -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비금융주력자의 경영관여에 해당되는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선임이사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11조의8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를 “1명 이상”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경영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 시행령(3조의3 2항 1호)에서는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 경영관여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로서 규제를 받게 됨(법 2조 1항 10호 나목, 8조의4~5)

## VI. 기타

### □ 양벌규정 개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8조 단서 : 2009/2/3 개정, 2/4 시행)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의2 1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비상장법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법령명 변경 (상법 시행령 2009/2/3 개정, 2/4 시행)

-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상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규정

(상법 시행령 5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주주제안 거부사유 이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

□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시 회사의 조치

(상법 시행령 3조의2 : 2009/11/23 개정, 2010/5/29 시행)

-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기간을 정하고,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전자주주명부 이용시 회사의 조치의무

(상법 시행령 4조의2 : 2009/11/23 개정, 2010/5/29 시행)

-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주주나 채권자가 이를 열람 또는 복사할 때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상법 396조 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봄
  -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가 공개되어 스팸메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상법 368조의4)**

종래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 스스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투표만이 가능했으나(상법 368조 3항, 368조의3), 2009년 5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주는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전자서명 등 본인인증제도를 통해 전자투표방식으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상법 시행령 5조의2 : 2009/11/23 개정, 2010/5/29 시행)

-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
  -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해당 주식에 대하여 당해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
-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의 개표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 : 2009/3/25 개정 · 시행)

- 사전적 총량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
  - 종래에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지 못하였음

□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 삭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2항~4항, 17조의2~9 등 : 2009/5/13 개정 · 시행)

-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공동감면신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 1항 1호 · 3호 가목 단서 : 2009/5/13 개정 · 시행)

-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분할 · 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공동감면신청을 허용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1조, 4조, 부칙 2조 : 2009/4/1 제정, 6/1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 공사의 최초 자본금은 분할 당시 공사가 승계하는 자본금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
  - 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온전히 승계·발전시켜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임을 명확히 함

□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공사의 조직·지배구조  
(한국정책금융공사법 9조, 13조, 15조, 부칙 1조·3조 : 2009/4/1 제정, 6/1 시행)

-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업무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공사는 설립 초기 한국산업은행에 자산·업무의 관리를 위탁하되,
  - 위탁기관의 적정성 및 공사의 조속한 독립경영체제 전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완전히 민영화되기 이전에 동 위탁계약을 종료토록 함
- 위탁 기간 중에는 사장 및 감사 각 1명과 소수의 직원만을 두어 조직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함

□ 공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법 21조~24조 : 2009/4/1 제정, 6/1 시행)

- 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시장친화적인 지원을 도모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의 대출, 채무의 보증 등
- 공사의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

- 정책금융채권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 이내

#### □ 임원의 해임사유

(한국정책금융공사법 36조 : 2009/4/1 제정, 6/1 시행)

- 임원의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를 해임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해임사유를 명확히 규정
  - 동 법, 동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 부동산투자회사 등 명칭 사용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

(부동산투자회사법 54조 : 2009/4/1 개정 ·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종래의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

#### □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강화

(부동산투자회사법 53조 : 2009/4/1 개정 · 시행)

- 영업주(법인·개인)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
  - 기존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였음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공모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주주의 범위 확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12조의2 : 2009/4/30 개정·시행)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인수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외에 이와 공공적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만 해당)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금운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의 단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17조 2항 : 2009/4/30 개정·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을 “매수일 전일”에서 주식매수청구의 원인이 되는 결의가 있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변경

- 종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54일이 경과한 매수일 전일이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이 됨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주식가격의 급변동시 매수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외로 구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6조 1항 : 2009/4/30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집합투자업과 유사하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3년으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규정

- 국외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를 도모

□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3조의2 : 2009/5/27 개정, 6/1 시행)

—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

-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한국은행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자금지원의 요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3조의6 : 2009/5/27 개정, 6/1 시행)

—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의 중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안정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

- 금융안정기금은 신청기관의 재무상태, 지배주주의 유무, 과거 실물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금융기능제고계획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3조의7 : 2009/5/27 개정, 6/1 시행)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건전성과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

- 금융기능제고계획에 기업구조조정 방안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

□ 자금의 차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8 : 2009/5/29 개정, 6/1 시행)

- 정책금융공사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조건과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금융안정기금의 건전성을 제고

□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9~21 : 2009/5/29 개정, 6/1 시행)

- 금융안정기금의 주요 재원 조성 수단인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채권의 발행 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
  - 발행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채권의 발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방법과 시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의22 : 2009/5/29 개정, 6/1 시행)

- 매 분기 말일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잔액 등 금융기능제고계획상 국민경제기여 방안의 이행 지표 등을 적은 서류를 매 분기 경과 후 1월 이내에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제출
  -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한국산업은행을 국책은행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정비

(한국산업은행법 1조, 2조, 4조 : 2009/5/21 개정, 6/1 시행)

- 국책은행으로서 설립목적이 중요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영화 추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던 한국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
  - 한국산업은행에도 원칙적으로 은행법을 적용

□ 업무범위 확대 (한국산업은행법 18조 : 2009/5/21 개정, 6/1 시행)

- 종래 한국산업은행의 취급 업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민영화에 대비하고 민간산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법에 따른 일반은행의 업무범위에 준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을 영위

□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한국산업은행법 18조의2 : 2009/5/21 개정, 6/1 시행)

- 한국산업은행의 기존 대외채무 중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며, 신규 대외채무에 대하여도 민영화 완료 전에는 일정한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추진
  -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의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 (한국산업은행법 5장의2 : 2009/5/21 개정, 6/1 시행)

- 한국산업은행의 기업분할로 설립될 산은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손자회사 및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를 인정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39조 : 2009/5/29 개정, 6/1 시행)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세부인가 기준 중 “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
  -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세부인가기준은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41조 : 2009/5/29 개정, 6/1 시행)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두는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자기자본의 산정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2조 : 2009/5/29 개정, 6/1 시행)

- 신용공여한도의 적용시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은 분할후 5년간 분할에 따라 감소된 자기자본도 가산하여 산정
  - 한국산업은행을 회사분할하게 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11조 : 2009/5/29제정, 6/1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을 공사의 취급업무로 규정
  -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정책금융채권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12조~24조 : 2009/5/29제정, 6/1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 발행의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함
  -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부칙 2조 : 2009/5/29제정, 6/1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의 관리를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는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보유규제 완화  
(은행법 16조의2 3항 : 2009/6/9 개정, 10/10 시행)
  -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완화
    -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의 예금자 및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 완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5조 2항 : 2009/7/6 개정·시행)
  -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그 당사회사에 대하여서만 그 조치기간 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단, 1년간 예탁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 방식에 의한 가격산정 인정(경영권인수 등을 위하여 가격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려)

- 총 6장 36개 조문 및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2009/8/4 개정·시행)
  - 총 6장으로 구성
    - 총칙, 건전경영지도, 외환건전성 감독, 금지업무의 영위, 신용위험관리, 기타

- 동 규정은 기존 산업은행 감독기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신설법인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됨

□ 경영지도비율 기준 마련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3조 : 2009/8/4 개정 · 시행)

- 공사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은 70% 이상 유지하도록 함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4조 : 2009/8/4 개정 · 시행)

-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 공사는 5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마련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4조, 6조 : 2009/8/4 개정 · 시행)

- 자산건전성의 5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공사가 적립·유지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함
  -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이상
  -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3.5이상
  -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 건전성 평가 기준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10조 : 2009/8/4 개정 · 시행)

- 금융위가 필요시 공사경영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

□ 외환건전성 감독 기준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17조, 22조 2항 : 2009/8/4 개정·시행)

- 유동성 위험관리를 위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을 85% 이상 유지하도록 함
  - 공사가 1년 동안 3회 이상 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 I. 법령 등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시 예비인가제도 적용

(16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비인가제도를 적용하되, 변경인가 시에도 최초인가와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
  - 금융투자업자가 인력, 물적 설비 등 변경인가요건을 사전에 모두 갖추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변경인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

###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 축소

(8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 제한
  - 집합투자업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여 의결권 공시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폐지 (10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신탁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와 중복되는 공탁의무를 제거하여 신탁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
  - 종래 신탁업자의 신탁의무 위반으로 수익자에게 생기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공탁하도록 의무를 부과

### □ 상장법인 등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

(160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관련 사항 등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해당 반기·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에 따라 커질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

□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

(165조의2~165조의18 : 2009/2/3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2009/2/4)되는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중 재무특례 사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으로 이관

□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

(165조의5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대상 주식의 범위를 축소 조정
  - 반대주주가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공시 이후 취득한 주식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금융위원회의 주식매수가격 조정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 보완

(17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공개매수자 및 대량취득·처분자 본인도 공개매수,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대상으로 규정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 확대

(23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기초자산의 개별가격 또는 종합지수로 확대
  - 금 또는 원자재 등 상품의 가격에 연동하는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249조의2 : 2009/2/3 개정, 2/4 시행)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용주체를 집합투자업자로 제한하고, 대상 투자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로 제한하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완화
  - 집합투자업자는 최소한의 규제만 받으면서 혁신적인 투자전략 및 투자기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는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기회가 확대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완화

(27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외국기업”을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 처분 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종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해외진출이 제한되었음

□ 과징금의 결손처분 및 환급제도 도입

(434조의2~434조의4 : 2009/2/3 개정, 2/4 시행)

-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채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의 과오납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지체 없이 환급금·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

□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 완화

(43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조사를 위하여 국제증권감독기구의 다자간 협정에 가입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 정보교환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양벌규정 개선 (448조 단서 : 2009/2/3 개정, 2/4 시행)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영업주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

□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9조 5항 4호, 28조의2, 46조의2, 47조 3항, 50조 1항 단서, 51조 1항, 122조 1항, 166조의2 : 2009/2/3 개정, 2/4 시행)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

-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1인 이상의 파생상품업무 책임자(상근임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 부담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
-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 추가
  -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정
  -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동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기준

(130조 4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괄신고서에 적힌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을 발행예정금액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
  - 신고인의 증권발행 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감액 정정을 허용

□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기준시점 조정

(176조의7 1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시점을 대폭 앞당김으로써 단기차익을 노려 주식매수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매도 규제 근거 명시 (208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매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공매도 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일반투자자의 범위 조정

(10조 3항 : 2009/7/1 개정 · 시행)

-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문투자자로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분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금 운용법인, 공제사업 경영법인, 해외상장 국내법인 등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개선

(50조~51조 : 2009/7/1 개정 · 시행)

-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한해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하고,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의 정보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공시부담 완화 (121조 : 2009/7/1 개정·시행)

- 일정 요건을 갖춘 “잘 알려진 기업”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잘 알려진 기업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임
    - \* 잘 알려진 기업 : 다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

□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154조 3항~4항, 155조 : 2009/7/1 개정·시행)

- 신규 보고의 경우에는 경영참여 목적을 불문하고 보고기한을 5일 이내로 함
  - 사후에 보유목적 변경을 통한 경영권 위협에 대처하게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주식 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연장
  -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고 공공성이 높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시부담을 경감

□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 단축 (201조 1항 : 2009/7/1 개정·시행)

-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그 정보의 주지기간을 공개 이후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
  - 정보전달매체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있어서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

□ SPAC에 대한 집합투자 조항 적용 배제

(6조 4항 14호 : 2009/12/21 개정·시행)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기업인수·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설립한 일종의 명목회사(paper company)

- SPAC 설립 후 공모자금은 합병 또는 해산시까지 안전하게 예치·신탁되고 경영진이 대상기업 발굴을 개시하며, 일정기간(국내 36개월) 내에 주주가 기업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스폰서 및 투자자가 기업인수 성공 후 합병이익을 향유하는 구조
- 일정 존속기한 내 M&A 실패시에는 투자자금을 반환

- 공모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 집합투자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발행 주권을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로 정의함
  - SPAC의 경우 자금모집에 있어서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나 공모자금을 다른 기업과의 합병에만 사용하고 합병 후에는 사업 실질을 갖춘 새로운 회사로 전환되므로 자금운용과 이익배분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와 다른 특성을 가짐
  - 미국의 경우 SPAC은 상장회사 제도로써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장외시장(OTCBB) 등록기업으로서 발전하였으나, 국내 장외 주식시장(제3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현 단계에서 국내 SPAC은 상장기업이 아닌 장외시장 등록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어려움
- SPAC으로서 집합투자기구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함

- i) 공모자금의 증권금융 예치·신탁, ii) 해당 예치금액의 인출 및 담보 금지, iii) 발기인 1인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업자, iv) SPAC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요건 충족, v) SPAC 투자자 보호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충족 등의 요건
-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예치·신탁자금반환기준 및 금융투자업자의 출자의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함

— SPA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사 SPAC”의 경우는 집합투자기구로 추정함

□ 외국회사에 대한 국내 PEF 투자 제한 완화

(292조 3항, 295조 4항, 부칙 4조 : 2009/12/21 개정·시행)

-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당해 회사 및 그 종속회사의 재산을 50%이상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PEF의 투자를 허용함
  - 단, 투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회사 지분을 국내 투자대상회사 지분으로 변경토록 의무화하고,
  - 2010년 말(2010/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운용규제 완화

(292조 5항 3호~4호 : 2009/12/21 개정·시행)

-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PEF의 직접 투자를 허용
  - 종래에는 민간투자회사법상 SOC투자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투자만 허용
- 설비투자펀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PEF가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으로 “시설 및 설비”를 추가함
  - 조세특례제한법(24조~25조의4)의 시설 및 설비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도입

(271조의2 : 2009/12/21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249조의2)에서 특례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 국가, 투자판단과 위험능력을 갖춘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적격투자자의 헤지펀드 설립 허용
  - 집합투자기구재산의 50%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300%, 채무보증한도는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50% 이내로 허용
  - 종래 PEF는 채무보증이 금지되어 있으며, 차입한도도 10%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 기업합병시 외부평가 의무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

(176조의5 1항, 176조의6 2항~3항 : 2009/12/21 개정·시행)

-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시에도 시가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평가의무를 부여함
  - 기업합병시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
-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분할되는 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 외부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함
  - 종래에는 분할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일 경우에만 외부평가를 받도록 함
- 기업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업 양수도시에도 특수관계인의 외부평가를 제한함
  -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금지

□ 연계 불공정거래 대상 증권 범위 확대

(207조 3호 마목 : 2009/12/21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는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된 지분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법 176조 4항 3호, 동법 시행령 207조 3호),
- “상장된 지분증권과 연계된 증권”의 유형에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을 추가함
  - 지분증권의 한 유형인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에서 상장신주권증권 외의 지분증권의 시세조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

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지분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출자지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법 4조 4항)

□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 도입 근거를 마련

(77조 1항 5호, 2항 4호 : 2009/12/21 개정·시행)

- 투자자가 펀드환매를 하지 않고서도 판매회사를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금전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나,
  - 투자자가 투자매매업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신청한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도록 함
- 판매회사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판매보수의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상품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상한 인하

(77조 4항 1호·2호 : 2009/12/21 개정·시행)

— 펀드 투자자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의 한도를 인하함

• 판매수수료 한도 : 연 5% → 연 2%

• 판매보수 한도 : 연 5% → 연 1%

**펀드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일회성)”을 말하며,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계속적)을 의미함(자본시장법 76조 4항)

—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판매보수율이 체감하는 구조(CDSC, 이연판매보수)인 경우로서 일정 투자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 미만일 때는 판매보수 상한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금융투자업 규정(4-48조)에서는 일정 투자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점부터 연 1%에서 연 1.5%까지 판매보수를 허용

□ 펀드 기준가격 정정공시의 차등화 및 범위 조정

(262조 1항 : 2009/12/21 개정·시행)

— 지나치게 잦은 정정공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정공시해야 하는 펀드 기준가격의 오차범위를 0.1%로 정형화 되어 있던 것을 펀드유형에 따라 0.05% ~ 0.3%로 차등화함

□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개선 (92조 4항 : 2009/12/21 개정·시행)

- 보고서 제공은 전자우편 또는 직접교부 중 하나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등은 자본시장법(89조 2항)에서 정하는 수시공시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는 우편발송을 선택할 수 있음

□ 자산운용보고서의 세분화 (92조 3항 : 2009/12/21 개정 · 시행)

- 자산운용보고서를 전체보고서와 요약보고서로 구분하고, 전체보고서는 1년에 한번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요약보고서로 대체함
  - 전체보고서의 내용 중 수시공시대상이거나 투자자가 반드시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은 삭제
  - 요약보고서 항목은 현행 보고서보다 축소하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개선

###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등의 폐지

(1조의2 3호, 1조의3, 2조 : 2009/2/3 개정 · 시행)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의무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 회사의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를 폐지
  -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

(2조의2 1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비상장법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4조의2 4항 : 2009/2/3 개정 · 시행)

- 주권상장법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
  - 감사에 대한 규제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

(6조 3항~5항 : 2009/2/3 개정, 2010/1/1 시행)

- 감사인이 제한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이나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 (13조 : 2009/2/3 개정 · 시행)

- 종래 규정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하여 단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4. 상법

□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542조의3 : 2009/1/30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하고, 당해 회사 외의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도 부여 가능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범위에서 당해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피용자 및 당해 회사 외의 관계회사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가능

□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542조의4 : 2009/1/30 개정, 2/4 시행)

- 일정한 지분을 이하의 소수주주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542조의6 : 2009/1/30 개정, 2/4 시행)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감사인선임청구권을 위한 소수주주의 지분을 3%에서 1.5%로 낮추고,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542조의7 : 2009/1/30 개정, 2/4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3%에서 1%로 완화하는 한편,
-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542조의8 : 2009/1/30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

□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542조의9, 624조의2 : 2009/1/30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에 처함
  - 다만, 일정한 규모 이하의 거래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정형화된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허용

□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및 감사위원회

(542조의10~11 : 2009/1/30 개정, 2/4 시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명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542조의12 : 2009/1/30 개정, 2/4 시행)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권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선임방식은 일괄선출방식으로 통일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위원 선·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 5. 상법 시행령

□ 법령명 변경 (2009/2/3 개정, 2/4 시행)

-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상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 주주제안의 거부사유 규정 (5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주주제안 거부사유 이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

□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규정

(8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법」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로 규정함에 따라,
  - 해당 증권시장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조 13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특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특정 (9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의 경우 해당 상장회사 외에도 해당 상장회사가 총출자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등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여대상 및 부여한도 등을 규정

□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10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11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다른 상장회사에 대한 행사요건의 1/2로 완화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 회사

(12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집중투표 청구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상장회사의 기준을 규정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 등

(13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사외이사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 등
-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범위

(1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장회사와 주요주주 등의 거래가 금지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규정
  -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을 배서하는 거래 등

□ 상근감사 설치 범위 (15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 상장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감사위원회 설치범위 (16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기준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감사 등 선·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1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시 회사의 조치

(3조의2 : 2009/11/23 개정, 2010/5/29 시행)

-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 공고기간을 정하고, 이용자가 공고한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전자주주명부 이용시 회사의 조치의무

(4조의2 : 2009/11/23 개정, 2010/5/29 시행)

-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주주나 채권자가 이를 열람 또는 복사할 때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상법 396조 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봄
-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가 공개되어 스팸메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 도입(상법 368조의4)

종래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 스스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위임투표만이 가능했으나(상법 368조 3항, 368조의3), 2009년 5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주는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전자서명 등 본인인증제도를 통해 전자투표방식으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5조의2 : 2009/11/23 개정, 2010/5/29 시행)

- 주주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도록 함
  -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해당 주식에 대하여 당해 의결권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
- 회사 또는 전자투표관리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의 개표시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10조 : 2009/3/25 개정 · 시행)

- 사전적 총량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
  - 종래에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원칙적으로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지 못하였음
  
-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의 도입 (11조의4 : 2009/3/25 개정, 6/26 시행)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대상회사에 대한 주식소유현황 등의 공시제도를 도입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 범위 축소  
(3조 1호 가목 : 2009/5/13 개정 · 시행)
  -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동일인관련자의 친족 범위 중 8촌 이내 혈족을 “6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 및 행정 절차 비용을 축소
  
-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규정 삭제  
(17조 2항~4항, 17조의2~9 등 : 2009/5/13 개정 · 시행)
  -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 기업집단 현황 공시 (17조의11 : 2009/5/13 개정 · 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회사 및 분기별 공시 원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명, 사업내용, 재무현황,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임원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현황을 공시

□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공동감면신청

(35조 1항 1호·3호 가목 단서 : 2009/5/13 개정·시행)

-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영업양도 등의 당사회사인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공동감면신청을 허용

##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및 자본금

(1조, 4조, 부칙 2조 : 2009/4/1 제정, 6/1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 공사의 최초 자본금은 분할 당시 공사가 승계하는 자본금으로 하고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
  - 공사가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을 온전히 승계·발전시켜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임을 명확히 함

□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공사의 조직·지배구조

(9조, 13조, 15조, 부칙 1조·3조 : 2009/4/1 제정, 6/1 시행)

-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업무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공사는 설립 초기 한국산업은행에 자산·업무의 관리를 위탁하되,
  - 위탁기관의 적정성 및 공사의 조속한 독립경영체제 전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완전히 민영화되기 이전에 동 위탁계약을 종료토록 함
- 위탁 기간 중에는 사장 및 감사 각 1명과 소수의 직원만을 두어 조직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함

□ 공사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1조~24조 : 2009/4/1 제정, 6/1 시행)

- 공사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시장친화적인 지원을 도모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의 대출, 채무의 보증 등
- 공사의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을 허용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함
  - 정책금융채권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 이내

□ 임원의 해임사유 (36조 : 2009/4/1 제정, 6/1 시행)

- 임원의 경영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를 해임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해임사유를 명확히 규정
  - 동 법, 동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경영성과가 현저하게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 9.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 등 명칭 사용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  
(54조 : 2009/4/1 개정 ·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종래의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

□ 양벌규정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의 강화

(53조 : 2009/4/1 개정 · 시행)

— 영업주(법인·개인)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

- 기존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였음

## 1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공모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주주의 범위 확대  
(12조의2 : 2009/4/30 개정 · 시행)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인수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외에 이와 공공적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만 해당)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식 공모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함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금운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의 단축

(17조 2항 : 2009/4/30 개정 ·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을 “매수일 전일”에서 주식매수청구의 원인이 되는 결의가 있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변경
  - 종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최소 54일이 경과한 매수일 전일이 주식매수가격 산정시점이 됨으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주식가격의 급변동시 매수가격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외로 구분

(26조 1항 : 2009/4/30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집합투자업과 유사하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3년으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처분 제한기간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규정
  - 국외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를 도모

##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23조의2 : 2009/5/27 개정, 6/1 시행)

-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
  -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한국은행 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

□ 자금지원의 요건 (23조의6 : 2009/5/27 개정, 6/1 시행)

-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의 중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자본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안정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
  - 금융안정기금은 신청기관의 재무상태, 지배주주의 유무, 과거 실물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 금융기능제고계획 (23조의7 : 2009/5/27 개정, 6/1 시행)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건전성과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기능제고계획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
  - 금융기능제고계획에 기업구조조정 방안 및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화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

##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금의 차입 (5조의8 : 2009/5/29 개정, 6/1 시행)

- 정책금융공사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조건과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금융안정기금의 건전성을 제고

-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5조의9~21 : 2009/5/29 개정, 6/1 시행)
  - 금융안정기금의 주요 재원 조성 수단인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채권의 발행 방법,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
    - 발행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채권의 발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의 통보방법과 시기 (5조의22 : 2009/5/29 개정, 6/1 시행)
  - 매 분기 말일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잔액 등 금융기능제고계획상 국민경제기여 방안의 이행 지표 등을 적은 서류를 매 분기 경과 후 1월 이내에 한국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 제출
    -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권한 위탁 (6조의2 : 2009/5/29 개정, 6/1 시행)
  -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융기능제고계획에 관한 이행상황의 점검 및 통보의 접수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13. 한국산업은행법

- 한국산업은행을 국책은행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정비 (1조, 2조, 4조 : 2009/5/21 개정, 6/1 시행)
  - 국책은행으로서 설립목적이 중요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민영화 추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던 한국산업은행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민영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
    - 한국산업은행에도 원칙적으로 은행법을 적용

- 업무범위 확대 (18조 : 2009/5/21 개정, 6/1 시행)
  - 종래 한국산업은행의 취급 업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민영화에 대비하고 민간산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의 마련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
    - 은행법에 따른 일반은행의 업무범위에 준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등을 영위
  
-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18조의2 : 2009/5/21 개정, 6/1 시행)
  - 한국산업은행의 기존 대외채무 중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채무는 정부가 지급보증하며, 신규 대외채무에 대하여도 민영화 완료 전에는 일정한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추진
    -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외자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의 설립 및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조치 (5장의2 : 2009/5/21 개정, 6/1 시행)
  - 한국산업은행의 기업분할로 설립될 산은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손자회사 및 신용공여한도에 관한 특례를 인정

## 14.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39조 : 2009/5/29 개정, 6/1 시행)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세부인가 기준 중 “대주주 관련 사항”을 제외한 기준을 적용

-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세부인가기준은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41조 : 2009/5/29 개정, 6/1 시행)

-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두는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자기자본의 산정에 관한 특례 (부칙 2조 : 2009/5/29 개정, 6/1 시행)

- 신용공여한도의 적용시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은 분할후 5년간 분할에 따라 감소된 자기자본도 가산하여 산정
  - 한국산업은행을 회사분할하게 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15.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11조 : 2009/5/29제정, 6/1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금융시장 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긴급한 금융지원 등을 공사의 취급업무로 규정
  -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정책금융채권 (12조~24조 : 2009/5/29제정, 6/1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정책금융채권 발행의 방법, 시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함
  -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 관리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부칙 2조 : 2009/5/29제정, 6/1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산·업무의 관리를 한국산업은행에 위탁하는 계약에서 “위탁업무의 범위, 회계,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16. 금융지주회사법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2조 1항 8호 라·마, 8조의5, 9조 : 2009/7/31 개정, 10/10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외은행 또는 그 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

(8조의2 3항 : 2009/7/31 개정, 10/10 시행)

-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공적연기금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출 것
  - 해당 공적 연기금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을 것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

(8조의2, 8조의4 : 2009/7/31 개정, 10/10 시행)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확대
  -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 → " 9%
-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 등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20조, 25조, 31조, 33조 : 2009/7/31 개정, 12/1 시행)

- 보험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
-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

(22조 : 2009/7/31 개정, 12/1 시행)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해 계열사 간 기존에 형성한 법률관계에 대한 출자규제 등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장 2년간 연장 가능
  - 금융·비금융 사이의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는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

(34조~35조, 36조 3항, 37조 : 2009/7/31 개정, 12/1 시행)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회사와의 신용공여,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등 거래를 제한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등에 대하여 임점검사(on-site examination)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비은행지주회사 등이 대주주 또는 다른 자회사들과 거래함에 있어 무상양도 등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규제

□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 허용범위 확대

(39조 : : 2009/7/31 개정, 2010/2/1 시행)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이나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
-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

-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등

□ 은행지주회사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

(51조의2, 64조, 70조 등 : : 2009/7/31 개정, 10/10 시행)

-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 주요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출자자 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

## 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경영관여의 요건

(3조의3 2항, 8조 1항, 9조 1항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사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법 2조 1항 10호 나목, 8조의4~5)
  -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당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로서 규제를 받음

### 비금융주력자란?

금산분리의 원칙에 있어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함.

구체적으로 i)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인 경우 해당 동일인, ii) 동일인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 동일인, iii) i) 또는 ii)의 요건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100분의 9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회사, iv) i) 또는 ii) 또는 iii)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무한책임사원이거나 100분의 1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의미함 (금융지주회사법 2조 1항 8호, 은행법 2조 1항 9호)

-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관여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주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임원 등을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 은행지주회사와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경영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 기금등의 비금융주력자 규제 배제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요건

(7조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기금등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등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됨

- 금융지주회사법은 기금등이 내부에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법 8조의2 3항 2호)

- 이해상충 방지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금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을 구체화함
  -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보유 승인 요건

(9조 2항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요건을 구체화함
  -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 받은 펀드가 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18. 은행법

□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보유규제 완화

(16조의2 3항 : 2009/6/9 개정, 10/10 시행)

-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완화

-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의 예금자 및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2조 1항 9호, 15조의3~5, 16조의5 : 2009/6/9 개정, 10/10 시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권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
  -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
  -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 금융위원회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관계에 있을 것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

(16조의2 등 : 2009/6/9 개정, 10/10 시행)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에서 9%로 조정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의무를 부과

□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

(48조의2, 65조의3, 66조 등 : 2009/6/9 개정, 10/10 시행)

- 금융감독당국 등은 은행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
- 대주주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의 위법행위 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

## 19. 은행법 시행령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에 대한 경영관여 요건

(1조의6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사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법 2조 1항 10호, 15조의2~3)
  -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당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대주주로서 규제를 받음
-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의 요건을 구체화함
  - 주주로서 은행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를 초과하여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 은행과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관한 은행장 등 경영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기금등의 비금융주력자 규제 배제를 위한 이해상충 방지요건

(11조의3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법은 기금등이 내부에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법 16조의2 3항 3호)

- 이해상충 방지 등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금등에 대해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을 구체화함
  -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기준을 마련할 것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보유 승인 요건

(10조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할 수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요건을 구체화함
  -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 받은 펀드가 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LP)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일반투자자의 범위 조정

(안 10조 3항 : 2009/3/31 입법예고)

- 투자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공제사업법인 등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문투자자로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투자자로 분류

- 기금, 지방자치단체, 공제사업 법인,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소유 법인 등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개선

(안 50조~51조 : 2009/3/31 입법예고)

-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한해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하고,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의 정보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공시부담 경감

(안 121조 : 2009/3/31 입법예고)

- 일정 요건을 갖춘 “잘 알려진 기업”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매출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잘 알려진 기업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임
    - \* 잘 알려진 기업 : 다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

□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안 154조 3항~4항, 155조 : 2009/3/31 입법예고)

- 경영참여 목적을 불문하고 신규 보고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5일 이내로 일원화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보유상황에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로 보고기한을 연장

- 대량보유보고 공시의 신속성을 높이고, 경영참여 가능성이 적고 공공성이 높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시부담은 경감

□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 단축

(안 201조 1항 : 2009/3/31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그 정보의 주지기간을 공개 이후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
  - 미공개 중요정보의 주지기간을 단축하여 정보 이용에 있어서 내부자와 외부 투자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

## 21. 상법 회사편 개정안

### 신주인수선택권

신주인수선택권은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정하고 적대적 인수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대적 인수자를 배제한 채 잔여주주만이 대상회사의 보통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1980년에 미국 변호사인 Martin Lipton에 의해 처음 고안되어 1985년 델라웨어주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포이즌필(Poison Pill, 독약증권)과 유사한 제도임. 일본은 이와 비슷한 것으로 신주예약권제도를 신회사법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신주인수선택권의 무상 부여

(안 432조의2 1항~2항 : 2009/12/1 입법예고)

- 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에 의해 주주에게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으로 일정한 기간(행사기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는 무상으로 하여야 함

□ 정관에 의한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

(안 432조의2 1항·3항 : 2009/12/1 입법예고)

-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는 정관으로 일정한 사항을 정해야 함
  -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한도

□ 이사회에 의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방법

(안 432조의3 1항~2항 : 2009/12/1 입법예고)

- 이사회는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함
  -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뜻,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이를 산정하는 방법,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을 정함
  -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내용을 달리 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도 미리 정해야 함
- 이사회 결의의 공고
  - 회사는 신주인수권 부여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 후 지체 없이 결의 내용을 공고해야 함

□ 주주간 차별적 취급의 허용

(안 432조의2 4항, 432조의3 1항 5호, 432조 의4 1항 5호 : 2009/12/1  
입법예고)

- 회사는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전통적인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음을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 이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 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음

□ 주주의 신주인수선택권 행사

(안 432조의3 4항, 432조의6 : 2009/12/1 입법예고)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의 개시일은 이사회 결의의 공고일로부터 2주 후가 되도록 정하여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자는 그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됨
- 회사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신주인수선택권 행사가액

(안 330조, 432조의2 5항~6항 : 2009/12/1 입법예고)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배정가액과 마찬가지로 그 부여일 또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또는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이 가능함

□ 회사에 의한 신주인수선택권의 상환

(안 432조의4 : 2009/12/1 입법예고)

-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유상으로 상환할 수 있음
  - 이사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함
-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러한 뜻을 정하고 이사회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하는 뜻 및 상환의 사유
  - 상환할 신주인수선택권의 범위
  - 상환의 효력발생일
  - 상환의 대가로 교부할 신주 또는 금전 기타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 상환에 관하여 주주의 일부를 다른 주주와 달리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주주의 범위
- 회사가 상환하는 신주인수선택권은 상환의 효력발생일에 그 효력을 상실
- 회사는 자기주식에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수 없음

□ 신주인수선택권의 분리양도금지

(안 432조의5 1항~2항 : 2009/12/1 입법예고)

-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된 후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봄

□ 신주인수선택권의 무상소각 (안 432조의5 3항 : 2009/12/1 입법예고)

-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주주를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회사에 의한 신주인수선택권 상환과 달리 소각은 모든 주주가 보유하는 신주인수선택권에 대하여 하여야 함

#### □ 신주인수선택권의 등기

(안 317조 2항 3호의5, 432조의7 : 2009/12/1 입법예고)

-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부여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주인수선택권을 등기해야 함
  -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정보를 주주,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시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를 의무화함
- 등기해야 할 사항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등

#### □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의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안 432조의8~9 : 2009/12/1 입법예고)

- 주주는 일정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부여·행사 제한·상환 또는 동 선택권에 따른 신주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회사의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제한 또는 상환으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적 허용 및 액면미달금액의 계상

(안 330조, 432조의 5항~6항, 455조 : 2009/12/1 입법예고)

- 회사가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상환할 경우 그 행사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식 액면미달발행의 예외적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해야 함(상법 330조, 417조)

또한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상각(償却)을 완료한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도 주식을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165조의8)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액면미달 또는 무상으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액면미달의 총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음
  - 그 계상금액은 신주 발행 후 3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함

## 22. 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단기금융시장(short-term money market)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지칭함. 콜,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CD(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RP(환매조건부채권, Repurchase Agreement)시장 등이 포함되며, 신용도가 우수한 상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시장이나 그만큼 신용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이 있음

- 콜시장 : 금융기관 상호간에 일시적인 자금과부족 조절을 위하여 초단기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대여하는 시장. 우리나라는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콜시장 참가자의 범위가 광범위함
-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유통어음
- CD(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 일반은행의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기예금 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
- RP(환매조건부채권, Repurchase Agreement)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금전대차거래

□ 단기사채의 의의 (안 2조 1항~2항 : 2009/10/13 입법예고)

— 단기사채란?

- 자본시장법(4조 3항)에 따른 채무증권의 하나인 사채권(社債權)으로서 최소금액 및 만기한도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함

— 단기사채의 등록요건

- 최소금액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만기한도 :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 전액 일시납입·일시상환 :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
- 주식관련권리 부여 및 담보설정 금지 :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주식관련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를 설정하지 아니할 것

**상법상 사채(社債)와의 차이점**

- 최소발행단위의 고액화를 통한 소액투자자의 보호 : 사채는 최저발행 금액을 1만원으로 하고 있으나(상법 472조), 단기사채는 최소발행단위를 1억원으로 하여 소액투자자의 투자를 제한함
- 기업어음 수준으로 권리의무관계를 단순화 : 사채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나 단기사채는 주식관련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를 허용하지 않으며, 상법상 사채와는 달리 분할 납입 및 분할 상환이 불가능함

—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 등도 단기사채와 함께 “단기사채등”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단기사채의 요건을 갖춰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른 사채
- 자본시장법(4조 3항)의 특수채증권
- 지방공기업법(68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사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적용범위 (안 3조 : 2009/10/13 입법예고)

- 단기사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상법」을 적용하며,
- 단기사채를 제외한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을 적용함

단기사채의 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과 업무의 범위

(안 4조, 5조 3항~4항, 6조~7조 : 2009/10/13 입법예고)

- 단기사채등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발행인)는 예탁결제원에 관리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해야 함
- 참가기관은 권리자의 단기사채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관리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별로 참가기관관리계좌부를 작성해야 함

- 권리자가 되고자 하는 참가기관은 예탁결제원에 등록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계좌부를 작성해야 함
- 예탁결제원은 원활한 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함
  - 등록업무규정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함

### 권리자

단기사채등의 채권자, 질권자 등과 같이 단기사채등을 소유하거나 이에 대하여 각종 권리를 가지는 자를 뜻함(동법 2조 3항)

### 참가기관

동법에 의해 예탁결제원에 관리계좌 또는 등록계좌를 개설하고 권리자의 단기사채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이 있으며, 현행 예탁제도에서 고객분 예탁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모두 참가기관으로 참가가 가능함(동법 2조 4항)

### 등록계좌

단기사채등을 보유하거나 이에 대한 질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계좌를 말함. 참가기관을 제외한 투자자 등의 소유분을 등록한 권리자계좌가 이에 해당하며, 참가기관이 관리함. 참가기관도 자기소유분을 등록하여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참가기관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동법 5조~6조)

### 관리계좌

단기사채등의 발행내역 및 등록금액을 관리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로서, 발행인관리계좌와 참가기관관리계좌가 있음

## □ 단기사채의 전자등록 (안 3조, 14조 : 2009/10/13 입법예고)

-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은 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등 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내역을 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만 등록해야 함

—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실물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을 금지함

□ 단기사채 발행 및 발행내역의 공개

(안 8조, 33조 : 2009/10/13 입법예고)

— 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등록

- 발행인은 예탁결제원에 관리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단기사채등에 대한 인수가액이 납입되면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지해야 함
- 예탁결제원은 이를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하고 관련 참가기관에 통지하면, 참가기관은 그 통지내용에 따라 권리자계좌부에 등록함

**단기사채의 등록기관 일원화와 발행내역의 공개**

실물증권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CP)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발행과 관련된 등록 및 신고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정보관리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한국은행 등에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시성이 떨어져 이용에 제한이 있음. 반면 단기사채는 전자등록에 의한 완전 무권화(無券化) 방식으로 발행되어 등록기관을 예탁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단기사채의 종류, 종목 및 발행조건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단기사채의 발행을 위한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함

— 예탁결제원은 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함

□ 단기사채의 등록의 효력 (안 9조~13조 : 2009/10/13 입법예고)

— 단기사채의 등록의 법적효력은 등록계좌를 기준으로 인정하며, 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해당 단기사채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함

— 권리의 이전 및 담보설정의 효력발생요건

- 단기사채에 관한 권리의 이전 및 질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계좌부에 등록을 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함

— 신탁의 대항요건

- 단기사채등을 신탁할 경우 해당 단기사채 등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등록에 의한 선의취득 (안 13조 5항 : 2009/10/13 입법예고)

- 등록계좌부를 선의로 중대한 과실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함

□ 단기사채등에 관한 권리행사 및 권리내역의 열람

(안 15조, 18조 : 2009/10/13 입법예고)

- 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행사의 뜻과 내용”을 명시하여 예탁결제원에 신청해야 함

- 다만, 참가기관이 아닌 권리자는 해당 권리가 등록된 참가기관을 거쳐서 신청해야 함

-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권리자와 발행인이 자신의 권리내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열람, 출력, 복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안 16조 : 2009/10/13 입법예고)

- 권리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참가기관에 대해 단기사채등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채권자증명서”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음

- 채권자증명서 발행을 위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함

- 권리자가 발행된 채권자증명서를 발행인등에게 제출하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초과등록 된 단기사채등에 대한 등록말소의무 및 오기록에 대한 원리금 배상의무 (안 19조 : 2009/10/13 입법예고)

- 예탁결제원과 참가기관은 각각의 권리자계좌부 및 참가기관계좌부 등을 비교하여 등록된 단기사채등의 금액의 종목별 총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계좌부와 참가기관관리계좌부에 각각 등록된 단기사채등의 총액의 합이 발행인관리계좌부의 등록된 단기사채등의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참가기관은 권리자계좌부에 등록된 단기사채등의 금액이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해당 참가기관의 참가기관관리계좌부에 기록된 단기사채등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금액확인 후 등록된 단기사채등의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을 말소해야 하며, 구체적인 말소방법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함
- 말소되지 않은 초과분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해당 참가기관 및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을 대신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함
  - 원리금을 지급한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초과분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등록정보의 보완

(안 21조~23조, 26조, 35조 1항 : 2009/10/13 입법예고)

-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정보를 입력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훼손하는 등 등록정보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
  - 보안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
-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은 등록정보를 보존해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함
- 예탁결제원과 참가기관 및 그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예탁결제원의 참가기관에 대한 감독

(안 24조~25조 : 2009/10/13 입법예고)

—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에 대해 등록업무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참가기관의 통지의무

- 참가기관은 단기사채등이 초과등록 된 사실이나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통지해야 함
-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함

— 예탁결제원은 참가기관의 파산,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기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안 27조~29조 : 2009/10/13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는 예탁결제원 및 참가기관의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대표이사에 의한 단기사채등의 발행 허용

(안 30조 1항~2항 : 2009/10/13 입법예고)

— 상법상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지만(상법 469조), 단기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는 미상환된 단기사채의 발행한도 잔액을 기준으로 함

□ 단기사채등의 모집에 관한 특례

(안 30조 3항 : 2009/10/13 입법예고)

- 상법상 사채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에 모집한 사채의 총액납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사채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상법 470조 1항, 471조),
- 단기사채등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단기사채등 발행시 사채원부 작성의무 면제

(안 31조 : 2009/10/13 입법예고)

- 단기간에 수시로 발행 및 상환이 반복되는 단기사채의 특성상 단기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않도록 함
  - 상법상 사채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사채의 납입금액과 발행년월일 등을 기재하여 사채원부를 작성해야 함(상법 488조)

□ 단기사채등에 대해 상법상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안 32조 : 2009/10/13 입법예고)

- 사채권자의 집회 소집이나 인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만기가 짧은 단기사채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채권자집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상법상 사채권자의 집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상법상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집하고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해 결의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시행일 (안 부칙 : 2009/10/13 입법예고)

- 전산시스템의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계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기로 함

## II. 금융위원회 규정

### 1. 금융투자업 규정

#### □ 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추가

(7-8조 3호 : 2009/1/5 개정, 2/4 시행)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이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도 교부·설명하도록 집합투자규약에 추가

-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제외

####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4-66조 2항 : 2009/1/5 개정, 2/4 시행)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에 보수·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기타 수수료 금액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

#### □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율 강화 및 행위 제한

(2-22조, 2-24조, 4-20조 1항 5호 : 2009/1/5 개정, 2/4 시행)

-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지점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파생상품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에 관한 내용을 추가

- 금융투자업자 지점별 파생상품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에 “파생상품펀드 및 파생결합증권”을 포함

\* 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권유금지(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대상에 “파생상품펀드”거래 권유를 추가

- 예비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삭제  
(2-3조 : 2009/2/4 개정 · 시행)
  - 예비인가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
  
- 월별 업무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생략  
(3-66조 1항 1호 : 2009/2/4 개정 · 시행)
  -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시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요구되는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생략을 허용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관련 위임사항 명시  
(6-29조 : 2009/2/4 개정 · 시행)
  -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와 관련한 수량기준,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 등을 정함
  
- 상품 ETF 등에 관한 위임사항 반영 (7-26조 : 2009/2/4 개정 · 시행)
  - 지수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범위를 외국의 거래소, 거래소 상장규정에서 인정하는 시장으로 정하고,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요건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출, 매일 공표 등”으로 정함
  
- 파생상품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요건 정비  
(5-49조 : 2009/2/4 개정 · 시행)
  -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신설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자를 상근임원에서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 변경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 요건 정비
  
- 경영실태평가 기준 조정 (3-25조 2항, 부칙 : 2009/7/6 개정 · 시행)
  - 모든 금융투자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평가부문과 영위 영업별로 적용되는 업종별 평가부문으로 구분하여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
    - 변경된 경영실태평가결과를 적기시정조치에 활용하는 것은 2009년 10월분(부동산신탁업자는 2010년 4월분) 평가부터 적용
  
- 정보교류 차단장치 제도 보완 (4-6조~4-7조 : 2009/7/6 개정 · 시행)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제외대상과 설치대상으로서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열사간 정보교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요건을 규정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한도 보고제도 도입
 

(5-49조 1항~2항 : 2009/7/6 개정 · 시행)

  -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를 내부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한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토록 함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도 개선
 

(7-15조~7-16조 : 2009/7/6 개정 · 시행)

  -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의 편입한도를 설정
    - 펀드재산의 5% 이내
  -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설정 (2009/7/6 개정, 10/7 시행)
    - 펀드재산의 40% 이상

□ 합병을 사유로 하는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에 있어 완화된 대주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별표3 3호 : 2009/9/1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16조 6항 2호)에서 금융위원회에 대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는 세부 규정을 마련함
  - 동시행령(16조 6항 2호)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 인가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집합투자 적용 배제 기준

(1-4조의2 : 2009/12/21 개정·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 4항 14호)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집합투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동 법령에서 금융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자금의 예치·신탁 및 예외적 인출 요건과 예치기관의 지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청산시 예치·신탁자금의 지급기준
  -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전 대상회사의 특정 금지
  -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의 규모 및 최저 투자한도
  - 정관에 따른 해산사유 및 예치·신탁자금의 지급기준반환 사유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신탁금액과 예치기관

(1-4조의2 1항~2항 : 2009/12/21 개정·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제외한 주권 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등 지정 예치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 신탁업자(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를 예치기관으로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신탁자금의 예외적 인출 사유

(1-4조의2 3항·5항 2호 : 2009/12/21 개정·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예치·신탁한 자금을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출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함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 정관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해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 금융투자업자의 규모 및 최저 투자한도

(1-4조의2 4항·5항 3호 : 2009/12/21 개정·시행)

- 기업투자회사의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으로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 투자매매업자이어야 함
  - 당해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발행주식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하도록 함

□ 정관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해산사유 및 예치·신탁 자금의 지급

(1-4조의2 5항 : 2009/12/21 개정·시행)

- 정관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해산사유는 90일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3년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되는 경우
-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주주에게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제외한 주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 예치·신탁된 자금등을 배분해야 함

□ 펀드 판매보수 상한 제한의 예외 (4-48조 : 2009/12/21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77조 4항 2호)에서 펀드 판매보수의 상한을 연 1%로 제한하되, 이연판매보수체계를 적용하는 경우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판매보수 상한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기준을 “이연판매보수체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투자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 미만인 경우”로 규정함
- 해당 펀드는 연 1.5%까지 펀드 판매 보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

**이연판매보수제(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가입기간에 따라 펀드의 클래스를 여러 개로 구분하여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판매 보수가 낮은 클래스로 옮겨타는 방식으로 “체감식 판매보수”라고도 함. 장기투자자가 훨씬 적은 판매 보수를 물게 되는 구조로 펀드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등의 범위

(7-48조 : 2009/12/21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292조 3항 3호)에서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당해 회사 및 그 종속회사의 재산을 50%이상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 국내 PEF의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범위를 정함

-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수출보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 신주발행 합병 등의 경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구체화

(2-9~10조 : 2009/1/28 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 기존 특수공시 사항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

### □ 유상증자시 발행가격 산정방법 변경

(5-18조 1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할인율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기준가격 산정 절차 폐지

\* 발행가 : 기준가격(이론권리락주가)에서 할인율로 할인하여 결정

### □ 제3자 배정 증자시 기준주가 산정방법 변경

(5-18조 1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제3자 배정시 최근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던 기준주가를 “청약일전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변경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9조 1항, 5-18조 1항, 2-4조 1항 : 2009/7/6 개정 · 시행)

- 자기주식 처분기간 조정
  - 자사주 처분기간을 “이사회 결의일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서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3월 이내”로 변경
- 일반공모 및 3자배정 증자 기준주가 산정방법 정비
  - 발행가액 산정방식의 통일성,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자배정의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일반공모증자와 동일하게 규정
- 잘 알려진 기업(WKSI)의 요건 중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제재 수준을 구체화함
  - 금융위 제재 :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권고 이상 (검찰 고발·통보는 무죄추정 원칙상 제외)
  - 거래소 제재 : 관리종목 지정 이상

□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사유 구체화

(5-14조 6호 : 2009/7/6 개정 · 시행)

- 합병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제한되는 평가제한 감사인에 합병당시 계약을 맺고 있는 감사인 이외에 평가대상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감사인을 포함

□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분석업무 정지조치 완화

(2-5조 2항 : 2009/7/6 개정 · 시행)

-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은 그 당사회사에 대하여서만 그 조치기간 중에 증권분석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
  - 단, 1년간 예탁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 방식에 의한 가격산정 인정(경영권인수 등을 위하여 가격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려)

□ 일반사채의 해외 발행시 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2-2조 1항 4호 : 2009/1/28 제정, 2/4 시행)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 발행시 1년 내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 일반투자자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 외국기업의 국제공시기준(IDS) 선택 허용

(2-11조 1항 4호 : 2009/1/28 제정, 2/4 시행)

- 외국기업의 국내 공모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시기준(IDS)의 사용을 인정하여 외국기업의 부담을 경감

□ 일괄신고서 추가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간소화

(2-4조 2항~3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금융기관이 빈번하게 채권을 발행하는 현실을 감안, 추가서류 제출시에는 대표이사 등의 서명 의무 면제
- 이사회가 구체적 범위를 정해 대표이사에게 발행 세부내역을 위임한 경우 기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의 재사용을 허용

□ 청약권유의 제외기준 (1-3조 : 2009/1/28 제정, 2/4 시행)

- 시행령상 위임된 “청약의 권유”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공고”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정함
  - ① 인수인의 명칭이 표시되지 않을 것,
  - ②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 ③ 청약의 권유 및 청약은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 비상장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 청약의 권유 대상자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합병 등의 대가로 발행한 증권을 받는 주주를 제외

□ 집합투자증권·유동화증권 신고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7~8조 : 2009/1/28 제정, 2/4 시행)

—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증권신고서 추가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운용실적 및 운용성과 산출을 위한 비교지수 등을 기재사항으로,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첨부서류로 추가
- 유동화증권 :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자산실사에 관한 사항, 자산유동화계획 참여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을 추가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사유

(2-13조 : 2009/1/28 제정, 2/4 시행)

— 시행령에서 정한 신고서 정정사유 외에 합리적 투자판단이나 해당 증권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

- 집합투자증권 : 투자위험요소
-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증권 :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담보·보증 또는 기초자산, 발행증권의 수, 투자위험요소

□ 증권 발행실적보고서의 예외 인정

(2-19조 4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집합투자증권은 수시로 판매·환매가 발생하므로 집합투자기구가 사업연도별 순발행실적을 회계기간말부터 1개월 내에 제출토록 함

- 증권발행인은 원칙적으로 모집·매출을 완료할 때 지체없이 주주 지분변동 등을 보고해야 함

- 공개매수의 면제사항 (3-1조 13호 : 2009/1/28 제정, 2/4 시행)
  - “공개매수 사무취급자가 공개매수 개시 이전 대차하여 매도한 주식의 상환을 위한 장내매수”를 공개매수 면제사항에 추가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참고서류 기재사항 간소화
 

(3-15조 2항 3호·3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M&A 진행과정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 기재사항이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간소화
    - 종래 피권유자의 성명,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모두 기재토록 하였으나, 피권유자의 범위만 특정하도록 간소화
    - 발행인 이외의 자 및 주총 목적사항에 반대하는 자가 권유하는 경우 목적사항이 무엇인지만 기재
  - M&A 공격자와 방어자간의 형평을 감안, 공격자가 파악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주주현황, 경영현황, 조직·인사 사항의 기재를 면제
  
-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변경 (4-3조 1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기업들이 다양한 업종을 영위함에 따라 사업내용 항목을 종전 7개 업종에서 2개 업종으로 단순화
    - 제조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 제조·서비스업, 금융업
  -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되던 이사의 경영진단의견서(MD&A)를 사업보고서 본문 기재사항으로 이관
  
- 공시서류 제출시 전자제출(DART) 방식을 원칙화
 

(4-6, 4-10조 3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기존 공시서류의 문서제출 원칙에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을 원칙으로 변경하고, 문서제출시 제출분량도 8부에서 2부로 간소화

- 전자문서 제출의 구체적 방법, 전자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전자문서제출요령)사항으로 이관

□ 주채무계열의 재무개선 목적 주식처분시 해당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의무 면제 (3-1조 14호 : 2009/9/16 개정·시행)

**주채무계열**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 은행업 감독규정에 의해 전년도말 은행권과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며,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채무도 회수해야 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143조)은 주식의 장외매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공개매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융위의 공개매수 예외사유를 추가적으로 마련함
  - 원칙적으로 장외에서 10명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매수자는 금융위 신고와 일간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매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133조 3항, 동법 시행령 140조 2항)
- 주채무계열이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당해 주채무계열 및 공동보유자가 보유한 주식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함
  - 주채무계열이 내놓은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매수자는 금융위의 신고 및 공고 등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 SPAC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2-6조 1항·3항 : 2009/12/24 개정·시행)

- 일반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 125조 1항) 중에서 일정 사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함
  -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대한 예치·신탁자금의 투자자지급에 관한 사항
  - 발기인 및 주주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 적용배제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 SPAC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2-6조 6항 : 2009/12/24 개정·시행)

- 상장예비심사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증권신고서의 제출시 첨부서류(자본시장법 시행령 125조 2항)와 중복되지 않는 것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전 주권 및 주권관련사채권 등(이하 주식등)의 소유자의 계속보유확약서·보호예수증명서 사본
  - 주식등 소유자의 의결권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제한에 관한 약정서 사본
  - 주식등 소유자의 예치자금등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 사본
  - 손해배상책임 관련 약정서 사본
  -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와 체결한 주권발행대금의 예치·신탁계약서 사본
- 다만, 사업연도 경과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대신 “사업연도 경과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시점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SPAC은 설립 이후 최초사업연도 경과 전에 공모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

□ SPAC 합병시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2-9조 2항 6호 가목 : 2009/12/24 개정·시행)

- 일반 회사 합병시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SPAC 합병시에도 활용하도록 함

- 다만, 첨부서류 중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SPAC의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SPAC 정기보고서 (4-3조 1항 : 2009/12/24 개정 · 시행)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준용하도록 함
  - 다만, 기재내용에 “집합투자 적용배제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자자 및 감독당국이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3.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비금융주력자의 경영관여에 해당되는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선임 이사수 (11조의8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를 “1명 이상”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경영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
  - 시행령(3조의3 2항 1호)에서는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 경영관여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로서 규제를 받게 됨(법 2조 1항 10호 나목, 8조의4~5)

□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요건 (13조의6 4항 : 2009/10/9 개정, 10/10 시행)

-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 보유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산운용 능력·경험 및 사회적 신용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9조 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 최근 3년간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지 않을 것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 4.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 □ 금융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별표 : 2009/5/20 개정·시행)

-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절차적·사실적 사항 등은 위원회의결사항으로 부적절하므로 금융위원장에게 위임
  - 담보부사채신탁업자의 등록
    -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 기재 누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등록업무 수행은 단순절차적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부적절함
  - 「증권의 발행·공시규정」의 집행을 위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공시서류의 기준 및 서식 제정·변경에 관한 보고의 수리와 정정 요구
    - \* 각종 공시서류 서식의 제정·변경은 실무적 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결이 부적절함

### □ 금감원장에 대한 위탁사항 (17조 4호 : 2009/5/20 개정·시행)

- 금융위·증권위 소송업무수행 관련 사항을 금감원장에게 위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법정에서 변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

-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을 신설 (2009/9/15 개정 · 시행)
  - 한국정책금융공사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및 정비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7-1)
    -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이사의 임명, 사장의 직무대행 선임, 임원의 겸직허가,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업무보고서 등의 접수, 경영 개선계획의 접수 등 21개 사항
  - 한국산업은행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7)
    - 지주회사 이사 임명
    - 외화표시 채무 부담에 따른 협의
  - 보험감독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7)
    - 임원·사용인 100인 미만 법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업무정지·등록취소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의 승인(국경간 거래에 한함)
  - 회계감독 관련 위원장 위임사항 추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6)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에 대한 승인

## 5.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 증선위 소송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금감원장에게 위탁  
(13조 4호 : 2009/5/20 개정 · 시행)
  - 증선위 소송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감원 소속 직원(변호사)을 소송수행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소송수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6. 금융위원회 규정 제·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 □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규정의 개념 명확화

(1조의2 : 2009/3/24 개정 · 시행)

#### — 사전예고 대상이 되는 “규정”의 개념정의 조항을 신설

- 규정·지침·기준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금융관련 법령에서 금융위에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

### □ 사전예고기간 단축 허용 (2조 1항 : 2009/3/24 개정 · 시행)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예고기간(20일) 단축을 허용

- 규정변경 사전예고 생략 및 기간 단축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의무를 부과

## 7.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규칙

### □ 비조치의견서 회신기한 연장시 청구인 사전통보절차 보완 등

(6조 1항~2항 : 2009/3/24 개정 · 시행)

#### — 회신기한 연장시 연장사유 및 처리 예정기한 등을 회신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

#### — 전자문서에 의한 회신도 가능하도록 명시

## 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 규정명칭 변경 (2009/1/28 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상 “선물”이 “파생상품”으로 바뀜에 따라 종전의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으로 변경

### □ 조사결과의 공표 관련 시행령의 위임 사항 규정

(52조 2항 2호·3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등 조사결과의 공표시 포함될 사항
  - 위법행위자 소속·인적사항, 위법행위 내용·조치사항, 조사실적 등 통계자료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의 공표시 제외할 사항
  -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등”, 검찰고발·과징금 조치 이외의 사항 (수사기관통보, 경고, 주의 등 경미한 조치)

### □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 명시

(54조 1항 : 2009/1/28 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201조 3항)에 따라 미공개정보이용이 금지되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으로 “대량취득·처분의 최소비율요건을 10% 또는 최대주주가 되거나 벗어나는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함

### □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별표 2호 : 2009/1/28 제정, 2/4 시행)

- 종래 과징금 부과대상인 수시공시사항 중 일부가 주요사항보고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명시
  - 과징금 부과기준은 종전의 수시공시 위반 수준을 유지

## 9.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 총 6장 36개 조문 및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 (2009/8/4 개정·시행)
  - 총 6장으로 구성
    - 총칙, 건전경영지도, 외환건전성 감독, 금지업무의 영위, 신용위험관리, 기타
  - 동 규정은 기존 산업은행 감독기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신설법인인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됨
  
- 경영지도비율 기준 마련 (3조 : 2009/8/4 개정·시행)
  - 공사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원화유동성비율은 70% 이상 유지하도록 함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4조 : 2009/8/4 개정·시행)
  -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 공사는 5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함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마련 (4조, 6조 : 2009/8/4 개정·시행)
  - 자산건전성의 5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공사가 적립·유지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마련함
    -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이상
    -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3.5이상
    -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이상
    -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 건전성 평가 기준 (10조 : 2009/8/4 개정 · 시행)

- 금융위가 필요시 공사경영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

□ 외환건전성 감독 기준 (17조, 22조 2항 : 2009/8/4 개정 · 시행)

- 유동성 위험관리를 위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의 비율을 85% 이상 유지하도록 함
  - 공사가 1년 동안 3회 이상 비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

### Ⅲ. 한국거래소 규정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 공매도규제 관련 제도개선

(17조 3항~4항, 18조 2항, 44조의2~3 : 2009/1/28 개정, 2/4 시행)

- 모든 차입공매도에 대해 결제가능여부 확인의무를 부과
  - 확인면제 제도는 폐지
- 시장안정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차입공매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차입공매도 제한 대상종목은 차입공매도 집중종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으로 함
- 외국주식예탁증권과 원주와의 차익거래와 ETF LP 및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를 가격제한(up-tick rule) 예외사유로 추가
-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추어 주식관련사채권 등으로 공매도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호가 및 가격제한 등은 주식 공매도규제 방법을 준용

##### □ 용어정비 등

(2조, 20조의2, 55조, 71조의2 : 2009/1/28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상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종전 거래법의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 용어를 업무규정으로 수용
-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기능별로 구분된 영업인가단위를 반영하여 LP 및 채권딜러 자격요건을 정비
  - 주식 LP : 주식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
  - ETF LP :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지정참가회사

- ELW LP :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3배 이상일 것
  - 국채딜러 : 국채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 받은 자
  - 소매딜러 : 채무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허가 받은 자
- 외국주식예탁증권(KDR)이 LP 대상증권임을 명시

□ 청산업무의 세부내용 구체화

(72조, 72조의2, 74조, 75조의6 : 2009/1/28 개정, 2/4 시행)

- 매매거래 확인 절차 신설
  - 거래소는 매매거래 성립 후 회원채무를 인수하기에 앞서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
- 차감대상 명확화
  - 종래에는 “매매거래 종류별”, “증권별”로 차감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간 대금은 임의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실무에 부합되도록 서로 다른 매매거래 종류간, 증권의 종목간은 물론 양 시장의 대금간에도 필수적으로 차감하도록 함
- 결제지시의 내용 구체화
  - 결제지시의 개념을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대해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 인도 및 대금 지급의 지시”로 정의
  - 결제지시의 내용을 “어느 시점에”, “어느 회원에게”, “얼마만큼의 증권인도·대금지급”을 지시하는 것으로 구체화
- 예탁결제원의 회원결제진행상황의 거래소 통지
  - 세척이 정하는 시간(결제시한전 30분부터)부터 결제종결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통지
-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근거마련
  -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주·융자를 받아 행한 각 결제회원의 매매거래(유통매매거래)는 해당 회원의 청산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소가 직접 증권금융과 청산결제

□ 결제원활화 및 결제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75조의2~3, 75조의6~9, 76조, 76조의2, 96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방법 개선 및 결제지시의 간주제도 도입

-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 외에 종목별 결제방식도 도입하고, 다수종목·다수회원에 대해 그 때마다 지시함에 따른 결제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가능상태인 때에 결제지시한 것으로 간주
  - \* 결제시한 전에 모든 증권·대금이 납부 완료된 경우 : 결제시한(16시)에 증권 및 대금의 동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
  - \* 대금(거래소의 유동성공급 포함)이 납부 완료된 경우 : 납부 완료된 때(결제시한 전 완료시 결제시한)에 증권납부의무를 완료한 회원에게 대금지급의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간주
  - \* 결제계좌에 납부된 종목의 경우 : 세척에서 정함
- 예탁결제원은 결제지시가 있거나 간주된 때에는 즉시 계좌대체를 하여야 함

— 미납 대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결제이행보증)

(75조의4 : 2009/1/28 개정, 5/4 시행)

- 거래소는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미납한 대금에 대해 결제시한 기준으로 지체없이 결제이행채원으로 유동성을 공급
- 다만, 당일결제거래인 일반채권 대금은 결제시한준수가 곤란하므로 제외

— 대금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신설

(75조의9 : 2009/1/28 개정, 5/4 시행)

-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 미납한 결제회원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결제지연손해금 납부의무를 부과(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

— 청산결제담당자 및 청산결제책임자 제도 신설

- 회원은 회원을 대리하여 결제내역의 확인,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 등 청산·결제업무를 행하는 담당자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청산결제업무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결제계좌의 개념 정의 및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법적 관계 정립

- 증권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
- 대금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
- 회원이 예탁결제원계좌를 통한 증권·대금 수수는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한 것과 동일한 효력(대리 효과)이 있는 것으로 하여 거래소는 본인, 예탁결제원은 대리인임을 명확히 함

— 대금결제계좌의 개설절차 및 결제은행 요건

- 예탁결제원이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고, 은행업 영위 금융기관 중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

— 결제대용증

- 거래소는 미납된 증권에 갈음하여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회원으로부터 수령에 대한 동의를 얻어 그 사실을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면,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한 회원은 결제한 것으로 간주

— 결제불이행 조치 제도 개선

- 결제불이행의 개념 정의 및 결제불이행 경우의 구체적 열거
- 결제불이행조치에 거래소의 채무인수 정지 추가
- 지급정지한 현금 및 증권(처분한 현금을 포함)과 결제불이행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과 상계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가 지급정지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조치를 받은 회원의 원활한 결제의 지원을 위해 소속직원 파견 가능
- 결제불이행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의 해지 신청 허용

— 증권결제의 특례

-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대물 결제허용 근거 마련

— 회원과 고객간 차감 근거 마련 및 회원·고객간 결제시한의 회원 자율화

□ 차입공매도 주문 확인내용 및 확인절차 명확화

(17조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회원은 차입공매도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보관
  - 종래 결제이행확약서제도는 차입공매도 확인방법에서 삭제

□ 차입공매도 미실행확약서(long sell confirmation)제도 도입

(17조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계좌에서 차입공매도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 조치를 한 경우는 확인의무 이행으로 간주

□ 공매도규정 준수여부 확인체계 구축

(18조의2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결제일에 결제부족이 발생한 위탁자에 대해 공매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
  - \* 결제부족 : 증권보유잔고(수탁·보관은행 잔고 + 차입 수량)가 당일 결제수량(매도수량) 보다 적은 경우
- 신탁업자(보관기관)는 회원이 결제부족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등(전자우편, 전자통신방법 포함)으로 결제부족사유, 결제부족수량 등을 회원에 통보

□ 공매도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 강화

(17조 4항, 18조의2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공매도규정 위반자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0일간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회원이 차입계약 성립사실을 사전 확인하도록 의무화

- 최근 6개월 동안 공매도규정 위반 일수가 2일 이상이거나 공매도규정 위반금액이 10억원(1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차입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의 예외

(44조의3 : 2009/3/4 개정, 3/16 시행)

- 수익증권의 조성호가에 대해 공매도호가 가격제한의 예외로 인정

□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제한 제도 개선

(20조의2 3항 : 2009/4/15 개정, 4/2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 급감 및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제한 적용시기를 정비
  - 유동성공급자(LP)의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3배(영업용순자본비율 300%) 미만이 될 경우 이미 체결한 유동성공급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을 허용

□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금액기준에서 비율기준으로 변경

(20조의4 1항 2호 : 2009/7/16 개정, 7/17 시행)

- 호가스프레드범위를 국내기초자산 추적시 2%, 해외기초자산 추적시 3% 이내에서 신고한 비율로 규정

□ ETF의 괴리율기준에 의한 상장폐지 기준 개선

(20조의4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괴리율 기준(3%) 위반시 상장폐지요건과 유동성공급회원 교체요건에 동시 적용되는 이중규제를 해소
  - 상장규정상 괴리율기준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을 업무규정상 유동성공급회원의 괴리율 준수 의무로 단일화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괴리율 기준 미충족시 상장폐지

- 국내자산 추적 ETF의 경우 괴리율 기준을 3%로, 해외자산추적 ETF의 경우 괴리율 기준을 6%로 적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용어 정비

(2조, 4조, 15조, 18조, 20조, 20조의2, 31조, 88조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펀드”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로 변경

□ 고가우선주의 매수호가에 의한 기세 불인정

(2조 9항 : 2009/12/29 개정, 2010/1/18 시행)

- 보통주와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TF LP에 대한 유동성공급 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

(20조의7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유동성공급 평가(동규정 20조의6)결과에 따라 당해 LP의 ETF 거래 수수료 범위 내에서 거래소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함

□ 소매채권시장의 시장조성 대상종목수 확대

(71조의4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투자수요가 큰 일부 채권의 경우에는 조성호가 제출대상 종목수를 종래 1종목에서 2종목 이상으로 확대함
  - 투자수요가 큰 일부 채권의 종류는 세칙으로 정함

□ 소매채권시장 시장조성자 명칭 변경

(71조의2, 71조의4, 71조의6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종래 “소매전문딜러, 소매딜러, 소매전문딜러지정위원회”를, “소매채권전문딜러, 소매채권딜러, 소매채권전문딜러지정위원회”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함

□ 회원과 거래소간 별도의 시스템 연결 기준 제정 근거 마련

(104조의2 1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회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래소시스템과 회원시스템간 연결방법 등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연결기준 제정·변경시 거래소의 회원 통지 의무
  - 회원의 기준 준수 의무 명시

##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관련

(99조의12~13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증권금융이 결제불이행(결제를 이행할 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차감에서 제외하고 거래소가 유통매매거래를 한 결제회원과 직접 청산결제
  - 유통매매거래의 범위에는 대여 받은 자금 또는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매거래도 포함
- 거래소가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를 증권금융과 행하더라도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신청 및 공동기금 적립은 결제회원이 행함
  - 증권금융과 결제회원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 증권금융이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공동기금 사용방법을 정함

□ 유통매매거래의 결제내역 통지

(99조의14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유통매매거래를 한 회원은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에 거래소에 통지

- 착오매매정정 등으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의 다음날까지 통지

□ 차감대상 및 차감방법 구체화 (100조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 산출시 차감대상

- 보통거래(T+2)간 차감 : 주식·수익증권·신주인수권증권(증서)·ETF·ELW
- 당일결제거래(T+0)간 차감 : 일반채권
- 익일결제거래(T+1)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T+0)간 차감 : 국채 Repo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해당 거래를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결제불이행처리를 위해 거래소가 타 회원에게 위탁하여 거래한 주식에 대해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조기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결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제내역 및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100조의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회원(증권금융 포함)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

-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종목별 수량 및 대금 등

— 통지시기

- 회원 : 결제내역 확정시(매매당일) 지체없이 통지하고, 착오매매정정 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정내역을 포함한 결제내역 확정시 지체없이 통지
- 예탁결제원 : 차감확정 대상(보통거래간 차감, 당일결제거래간 차감 등)에 따라 달리 함

□ 결제계좌 개설 은행의 재무요건

(101조의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결제회원의 결제 가능여부 통지

(101조의3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결제회원에 대해 다음 사항 통지 요구 가능
-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증권의 현황 및 사유
  -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가능여부,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금 유동성공급 제외대상 및 유동성공급시 사용되는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101조의4~5 : 2009/2/20 개정, 5/4 시행)

- 일반채권의 대금결제는 유동성공급 제외
-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 결제적립금, Credit Line, 공동기금, 회원보증금,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 결제이행재원의 사용 순서
-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 대금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산출 방법 등

(101조의10 : 2009/2/20 개정, 5/4 시행)

- 당일결제거래간 차감(Repo 제외)에는 유동성 공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제지연손해금도 징수하지 않음
- 결제지연손해금= 납부되지 아니한 대금 × 손해율
  - 손해율

구 분	손해율
결제일부터 기산 3일(납부일, 매매일기준)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4/1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매매일기준)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6/1만
납부기간의 마지막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매매일기준) 후에 납부하는 경우	8/1만

□ 예탁결제원의 회원결제진행상황 통지시간

(101조의6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예탁결제원은 “결제시한 전 30분(15시30분)부터 결제 종결시까지”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회원결제진행상황을 통지

□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의 수령회원계좌로의 결제지시

(101조의7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시한 후 대금 및 종목의 증권을 완납한 경우(완납종목)
  - 증권인도 가능한도 이내에서 증권의 종목별 수령 가능
- 16시 30분 이후 대금 및 종목의 증권을 완납한 경우
  - 결제교착시 결제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결제 가능하며, 선결제시에도 증권인도 가능한도 이내에서 수령 가능
- 완납종목 또는 미완납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종목의 인도우선 순위

-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할 수량이 많은 종목
-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할 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결제할 종목의 평가액이 큰 종목
- 평가액이 동일한 때에는 납부완료시간이 빠른 종목

□ 결제대용증 인도에 대한 회원의 수령동의 방법

(101조의8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거래소는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회원과 종목 및 수량에 대해 합의함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별 종목의 수령수량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회원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수량을 배정
- 결제대용증이 결제회원에게 교부된 때 거래소가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수령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전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증 발행신청회원의 결제대용금을 확인 가능
- 예탁결제원이 결제대용증으로 증권이 납부에 갈음한 결제회원으로부터 해당 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
-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금으로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을 직접 매수 가능
  - 해당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대용증 발행대상 증권이 납부시한 까지 미납된 경우 등

□ 증권결제의 특례 (101조의9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착오매매 등으로 결제할 수량이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원종목에 갈음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은 수령할 회원이 선정 가능
  - 단, 선정한 종목으로 결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수령할 회원과 협의하여 선정

— 같음할 현금의 금액 및 선정된 종목의 수량

- 같음할 현금의 금액 : ①과 ②중 큰 금액
  - ① : 원종목의 매매일의 증가×미결제수량×120%
  - ② : 현금지급일의 원종목의 증가(당일 증가 확정전 인도시 직전 매매일의 증가)×미결제수량
- 선정된 종목의 수량은 같음할 현금의 금액을 선정된 종목의 인도일의 증가(당일 증가 확정전 인도시 직전매매일의 증가)로 나눈 수량
- 미결제회원과 수령할 회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현금 또는 유사종목의 수량으로 함

□ 거래소 직원의 결제불이행회원의 결제 지원

(101조의11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해 거래소 직원을 파견하여 결제업무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직원은 결제지원명령서를 해당 회원에게 제시
- 해당 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극한 비밀 엄수 의무

□ 청산결제 담당자의 자격요건

(101조의1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청산결제담당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거래소의 청산결제담당자 등록취소 또는 교체 요구
-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등록되었거나, 청산·결제와 관련한 법규 또는 법규에 따른 처분·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

- 다만, 청산·결제 제도 또는 운영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신규 회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별도로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

□ 차입공매도 확인내용의 기록·보관 방법

(24조의3 1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통보 받은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

□ 공매도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전 확인수단 구체화

(24조의3 2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공매도규정 위반자의 차입공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계약서 또는 대차중개기관의 대차거래확인서를 징구

□ 회원의 결제부족 위탁자 확인사항 기록·유지 기간

(24조의4 1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결제부족 위탁자에 대해 확인한 내용과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

□ 신탁업자등의 결제부족정보 통보 기한·방법

(24조의4 2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신탁업자등은 결제일 12시까지 결제부족 현황을 별지 서식으로 회원에게 통보

□ 공매도규정 위반자 통보기준 명확화

(24조의4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공매도 위반자 통보기준 중 최근 6개월의 기간 산정은 “거래소가 확인한 날”을 기산일로 함

□ 장개시전 소매채권의 차입공매도 호가입력 제한

(14조 1항 4호 : 2009/3/4 개정, 3/16 시행)

- 장개시전(08:00~09:00)에 접수된 차입공매도 호가가 직전가격의 변동으로 장개시(09:00)이후 거부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매채권시장의 장개시전 차입공매도 호가입력을 제한

□ 호가입력 관련 제도 개선 (12조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호가입력내용의 체계적 정비

	변경 내용
호가유형 구분 체계화	- 시장(정규 및 시간외) 구분 -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유형(종가, 단일가, 대량매매 등) 구분 - 순수 호가유형(5종류)으로 호가 종류 단순화
시장관리기능	- 차익거래(4종류→6종류), 주식집단매매거래(2종류→3종류) 세분화 - 자기주식취득·처분의 경우 매매방법에 따른 구분 추가 - 미수동결계좌 구분 신설

- 상대매매(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호가입력항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쟁매매와 구분하여 명시
  - 협상번호, 협상자명 등 고유 입력항목 명시
-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 변경시 회원의 거래소 통보 의무 신설 및 그 밖에 호가입력에 관한 세부사항을 거래소가 회원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투자자분류 제도 개선 (104조 1항 6호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투자자 속성과 무관한 외국인투자자분류코드(9000)는 폐지
  -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속성(은행, 보험, 개인 등)에 따라 구분코드 입력·관리
- 정부(7000)와 기타법인(7100)을 별도 코드로 구분 관리

□ 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장참가자 편의제고

(13조 1항~2항, 34조 3항 3호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 결정 후 상·하한가를 벗어난 호가에 대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취소할 필요가 없도록 거래소시스템이 일괄 취소 처리
- 호가폭주 등으로 채무증권의 호가접수중단이 된 경우에는 증권 등과 달리 기 접수된 호가에 대해서 가격이 합치되면 매매가 체결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의 가격이 최저호가가격단위(5원)로 결정된 경우는 시가 결정시 접수된 호가에 대해 동시호가 배분방식을 적용

□ 매매체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4조 1항, 17조, 56조 2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상한가(하한가)인 매수(매도)의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장종료 단일가시 우선순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상한가 또는 하한가 입력을 제한
-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및 최우선지정가의 호가정정시 정정 전·후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가정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각기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을 제한
-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시 호가접수시간이 10분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다음 매매체결시점까지 호가접수시간 연장

□ 기타 전산시스템 변경 사항의 반영

(14조 1항, 11조 1항, 52조 7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호가 1회당 입력수량 1억주 한도 폐지
- 시간외 상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을 매매거래시간에 맞추어 변경
  - 15:00~18:00 → 15:10~18:00
- K-BloX 시스템 자체 장애시에는 시간외대량매매는 체결시키지 않음

□ 국채금융 Repo 신고매매의 매수호가를 비지정매수호가로 간주

(76조 3항 : 2009/4/27 개정, 5/4 시행)

- 동규정 69조에 따른 채권대체가 가능하도록 국채금융 Repo 신고매매의 매수호가를 비지정매수호가로 간주
  - 채권대체 : Repo 거래의 담보로 매매된 채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Repo매도자가 Repo매수자에게 대체를 신청함

□ 국채금융 Repo 신고매매 거래기간 확대

(76조 7항 : 2009/4/27 개정, 6/22 시행)

- 정부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국채금융 Repo의 신고매매 거래기간을 360일 이내로 확대

□ 국채거래와 Repo거래의 분리 결제

(100조 1항, 100조의2 3항 : 2009/7/2 개정, 7/6 시행)

- 익일결제의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국채거래)와 당일결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epo거래)를 분리하여 결제
  - 국채거래 : T+1일 결제
  - Repo거래 : T+0일 결제
  - 차감·확정된 국채거래의 결제내역은 매매거래일에 통지

- 국채거래의 결제준비시간이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국채거래 결제의 원활화 도모

□ Repo거래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적용 제외

(101조의4, 101조의10 1항 : 2009/7/2 개정, 7/6 시행)

- Repo거래는 결제준비시간이 40분에 불과하고 결제금액이 적어 수령회원에 대한 결제와 관련한 유동성리스크가 크지 않으므로,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신주인수권증서(권)의 매매수량단위 변경

(33조 1항 : 2009/8/3 개정, 8/10 시행)

- 신주인수권증서(권)의 매매수량단위를 10증서(권)에서 1증서(권)로 하향 조정

□ 착오매매 정정신청 시간 확대 등

(45조 3항 : 2009/8/3 개정, 10/19 시행)

- 착오매매 정정신청 시한을 착오발생 다음 매매일의 15시까지로 확대하고, 정정 신청시 사유서 등의 제출의무 폐지

□ 권리락 기준가 조정 시 발행가격 명확화

(별표2 2. 주3 : 2009/8/3 개정, 8/10 시행)

- 상장법인이 발행가를 공시한 경우는 그 가격으로, 발행가액 산식을 공시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그 산식에 따라 발행가를 적용
- 상장법인이 발행가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공시한 기준주가, 할인율 등의 가산산정방법을 준용하여 정해진 발행가액 산식에 따라 거래소가 발행가를 산정

-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1+무상비율+유상비율×할인율)
- 거래소의 발행가액 산정시 이용되는 기준주가의 산출 기준일이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 이후인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의 경우는 주주확정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출

□ 분할 후 재상장 시의 순자산분할비율 산정기준 등 개선

(별표1 2.나.(1)(가) : 2009/8/3 개정, 8/10 시행)

- 순자산가액 산출 방식 및 재상장과 변경상장시 동일한 대차대조표의 적용을 명확화
  - 순자산가액은 별표1 중 같은 호 가목(3)의 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고,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이용되는 대차대조표는 상장 전·후에 관계없이 재상장종목과 변경상장종목에 동일하게 적용
- 분할 후 재상장(변경상장)시의 평가가격은 분할종료보고서상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산출하여 적용
  - 다만, 상장신청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상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이 분할종료보고서상의 순자산가액과 다르다고 확인되는 경우 순자산 분할비율을 달리 산출 가능

□ 매수 기세 불인정 종목 기준 명시

(6조의3 : 2009/12/1 개정, 2010/1/18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조 9항)에서 보통주와의 가격 괴리가 큰 우선주는 제출된 매수호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 보통주와 가격 괴리가 “당일 기준가 기준으로 우선주 종가가 보통주 종가를 10배 초과하는 경우”에 매수의 기세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해당 우선주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ETF LP 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간 등

(31조의11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조의7)에서 ETF LP에 대한 유동성공급 지원금 지급 근거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함
- 지원금 산정기준 및 지급기간
  - 당해 LP로부터 징수한 수수료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비율 만큼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
  - 지급은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
- 거래수수료 수준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지원금 지급 비율 변경을 허용함
  - 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대량매매 수량요건 기준 명확화

(52조 2항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대량매매 수량요건 기준을 “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로 명확하게 규정함

□ 소매채권시장의 시장조성 대상종목수 확대

(99조의3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소매채권시장의 투자수요가 큰 일부 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조성호가 제출대상 종목수가 2종목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업무규정 71조의4),
  - 투자수요가 큰 일부 채권의 종류를 "금융채와 회사채"로 명확히 함

□ 소매채권시장의 딜러 평가방법 개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4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금융채 및 회사채의 시장조성 대상종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조성호가 제출실적 및 거래실적 평가시 금융채 및 회사채의 평가배점을 확대함

- 조성호가 제출실적 평가시 가점대상을 특수채 및 회사채에서 금융채 및 회사채로 변경
  - 거래실적 평가시 금융채 및 회사채에 가점을 부여
- 거래실적 평가기준이 되는 평균 매매거래실적 산출시 상위 2개사 및 하위 1개사의 매매거래실적을 제외함
- 다른 딜러들에 비해 매매거래실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딜러가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

□ 소매채권시장 시장조성자 명칭 변경

(99조의3, 99조의5, 99조의8~10 : 2009/12/1 개정, 2010/1/4 시행)

- 종래 “소매전문딜러, 소매딜러, 소매전문딜러지정위원회”를, “소매채권전문딜러, 소매채권딜러, 소매채권전문딜러지정위원회” 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변경에 따른 것임

###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증권의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

(2조 1항, 2조 16항, 3조 3항 등 : 2009/1/28 개정, 2/4 시행)

- 유가증권의 명칭을 증권으로 변경하고, 전통적 유가증권 개념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6가지 증권으로 분류
-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투자계약증권
-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에 맞추어 종전 채권으로 분류하던 일부 수익증권(MBS등) 및 추가연계증권(ELS)을 각각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

□ 상장대상 증권범위 포괄화

(2조 1항, 25조 1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상장대상 유가증권을 열거하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권 출현 및 상장에 대비

□ 전문투자자 개념 도입 (2조 27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산정시 제외되는 개념인 기관투자자 개념을 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 개념으로 전환

□ 파생결합증권 발행인 요건 변경

(41조의2 1항 1호, 43조 1호 등 : 2009/1/28 개정, 2/4 시행)

- 금융기능별 규제체제를 반영하여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대상 투자 매매업자에게 발행인 자격 허용
  -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상장요건 중 발행인 자격요건으로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상장폐지시는 200% 미만)은 유지

□ 외국채권 상장요건 정비

(44조 1항 2호 다목 : 2009/1/28 개정, 2/4 시행)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 제도 폐지로 인한 기업정보 부족현상 방지를 위해 신규상장요건 중 “등록법인 요건”을 “공모실적 요건”으로 대체

□ 해산사유 등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근거 마련

(75조 1항 14호 : 2009/1/28 개정, 2/4 시행)

- 해산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관리 및 투자자 보호

□ 발행인의 유동성공급자(LP) 의무화 및 제3자 LP의 예외적 허용

(41조의2 1항 6호 : 2009/4/15 개정, 4/20 시행)

-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은 원칙적으로 발행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되, 제3자 유동성공급자(LP)의 파산시에도 원활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 LP를 허용

□ 국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심사요건 개선

(42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적하는 지수범위 확대
  -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신설
- 자산구성요건 개선
  -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자산구성 내역 신설
  -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 납입자산내역을 달리 구성하거나 금전납부의 방법으로 설정·추가설정 또는 설립·신주발행을 허용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심사요건

(42조의2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심사요건을 신설
  - 외국거래소에 이미 상장되어 있을 것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을 것
  - 상장요건 중 자본금, 발행주식수, 유동성공급계약 등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요건 및 기타 지수범위, 자산구성요건, 자산운용방법, 지수사용계약 체결 등의 요건은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상장요건 중 상장을 위한 최소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 등은 국내 유통물량을 기준으로 적용
  - 판매회사의 명의로 예탁원이 작성하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는 주식(또는 수익증권)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상장예정 주식총수(또는 수익증권총좌수)가 10만주 이상일 것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개선

(87조의2 1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자산으로 변경이 곤란하여 현금설정 방식으로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세척이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하락한 이후 1개월 이내 거래상대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 괴리율 기준(3%) 위반시 상장폐지요건과 유동성공급회원 교체요건에 동시 적용되는 이중규제를 해소
  - 괴리율기준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을 유동성공급회원의 괴리율 준수의 무로 대체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괴리율기준 미충족시만 상장폐지하도록 단일화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 기준 신설

(87조의2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을 위한 최소 자본금(신탁원본) 및 발행주식수(발행좌수) 등의 기준은 국내에 예탁된 주식의 증가 및 수량을 기준으로 함
  - 주식시가총액(또는 수익증권 시가총액)이 50억원 미만이 된 날 또는 상장예정 주식총수(또는 상장예정 수익증권총좌수)가 5만주 미만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 본국 법령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 기타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요건 등은 국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신규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추적방법의 적격성 심사 근거 신설 및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

(25조의2, 42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 신규상장 신청 전 거래소와 사전 협의의무를 부과
- 거래소의 자산운용방법 등의 적격성 심사 및 상장거부권 신설
  - 추적 가격 또는 지수의 정확성, 자산운용방법 등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 거부
-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경우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현금설정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공시 강화
  - 장외파생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유지 요건 반영

□ 상장폐지와 관련한 예고근거 추가

(91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세척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변경상장신청

(49조, 51조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 또는 환매로 인한 상장수량 변경의 경우 변경상장신청서 및 신청기간 등 근거 신설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신고의무사항

(67조의2 2항 : 2009/7/16 개정, 7/17 시행)

- 현금설정 방식으로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자산구성내역 및 설정·환매에 필요한 자산구성내역 등의 신고의무를 국내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적용

□ 유동성공급회원 평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제재조치 신설

(42조의2 1항 2호 나목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집합투자업자가 상장한 종목의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최근 평가에서 일부가 최저등급을 받은 경우는 3개월간, 모두가 최저등급을 받은 경우는 6개월간 신규상장을 제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정비

(25조의2, 42조의2, 49조, 67조의2, 87조의2, 91조의2, 99조, 102조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정의 신설
- 투자회사 주권 또는 수익증권 조항에 부속되어 규정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관련 항목을 별도의 조문으로 정리
-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허용에 따른 관련 규정 특례조항 추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2조 29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모집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정의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 4항 14호)상 기업인수목적회사 정의와 개념상 일치

□ SPAC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10조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 관련 제출서류를 명시함
  - 설립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 감사보고서, 최대주주등의 주식 보호예수증명서, 주식발행자금 예치·신탁계약서, 공모전주주등의 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약정서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32조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규모, 주식분산, 감사의견, 주식양도제한, 지배구조,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임원의 자격, 정관필수 기재사항, 공모전주주등의 의결권행사제한 약정 등을 심사
  - 정관필수 기재사항으로 사업목적, 공모자금 예치·신탁·반환에 관한 사항, 재무활동 제한 등을 명시

□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심사

(9조 2항, 10조의3, 32조의3, 35조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비상장법인과 합병으로 발행된 신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의무화함
  - 비상장법인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
- 합병대상법인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최대주주등의 주식 보호예수관련 협약서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대상법인 심사요건
  - 영업활동기간, 경영성과(이익요건), 감사의견, 최대주주 변경제한, 주식양도제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 등을 심사

- 합병대상법인의 영업·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에 대한 질적 심사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

(75조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관리종목 지정 사유

- 임원의 자격, 자금예치·신탁의무 위반, 재무활동제한 위반, 상장예비심사 미청구,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미달 등

— 관리종목 지정해제 사유

- 관리종목지정사유를 해소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77조, 80조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상장폐지근거를 마련

- 관리종목지정사유(75조의2)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사업목적위반, 부적격법인과의 합병결의, 의결권행사제한 등의 약정을 위반한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자진상장폐지는 인정하지 않음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95조 1항 11호의2·3항 6호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결의·결정에 대하여 공시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합병공시 시점부터 당해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함

- 다만, 신고당시 합병대상법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합병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 규정을 배제

— 합병대상법인에 대한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매매거래를 재개하도록 함

- 예비심사결과 상장부적격인 법인과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의 취소시까지 매매거래정지를 연장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비상장법인과 합병시 관리종목지정사유 적용유예  
(75조 5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 관리종목지정사유 중 “매출액, 주식분포상황, 거래량” 요건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함

- 매출액·주식분포상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최초 적용
- 거래량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

####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전문투자자의 범위 구체화 (2조의2 : 2009/2/3 개정, 2/4 시행)

-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범위를 종전 기관투자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 거래소가 전문투자자의 성격 및 주식소유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추가연계증권의 상장신청서류 및 신고사항 등 신설

(13조의3, 35조의5 : 2009/2/3 개정, 2/4 시행)

- 종전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던 추가연계증권의 상장 및 관리 등을 위해 상장신청서류 및 신고사항 등과 관련한 규정 신설

□ 집합투자기구의 상장신청 및 신고사항 등 정비

(10조, 14조, 35조 등 : 2009/2/3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법 체제에 맞추어 투자회사 및 수익증권 등의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신고사항 등을 정비하고, 각종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 유가증권신고서 → 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 투자설명서, 영업보고서 → 업무보고서, 지정판매회사 → 지정참가회사 등
  
- 유동성공급계약요건 강화 (24조의3 : 2009/4/16 개정, 4/20 시행)
  - 유동성공급계약서에 LP 보유 ELW의 질권설정을 의무화
  - ELW LP의 자격 박탈시 발행인에게 유동성공급 의무를 부여
  - LP가 분기별 종합평가에서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1개월간 해당 발행사의 신규 유동성공급 계약을 제한
  - 제3자 LP의 경우 질권설정을 담보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 질권설정계약서, 질권이 설정된 ELW 잔고증명서, 유동성공급회원의 본점이 승인한 질권설정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ELW 발행인·LP의 재무상황 공시 강화  
(35조의2 1항 11호 : 2009/4/16 개정, 4/20 시행)
  - ELW 발행인 및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매월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발행인의 신고사항을 추가
    - ELW 발행인의 신고의무에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추가함에 따른 별지 (영업용순자본비율 보고서) 신설
  
-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정비  
(5조의2 : 2009/4/16 개정, 4/20 시행)
  - ELW 발행인의 재무상황을 매월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월별 업무 보고서를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하는 서류에서 제외

□ 장외파생상품 편입시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기준 신설 (24조의4, 48조의3, 49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적격 요건은 투자적격등급(BBB)이상으로 원리금지급 능력이 우수하고 투자위험 발생이 낮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정

- 국내신용평가사인 경우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중의 한 곳의 평가가 “A” 일 것
- 외국신용평가사인 경우 S&P나 Fitch의 평가가 “A”이거나 Moody’s의 평가가 “A2”에 해당할 것
- 기타 신용평가사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으로서 상기 등급기준에 상당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장폐지 및 상장폐지 예고시 동세칙 제24조의4에 따른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집합투자업자 및 유동성공급회원의 신고의무 강화

(36조의2 : 2009/7/16 개정, 7/17 시행)

—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 추가

- 유동성공급회원의 시스템 장애 발생 또는 해소시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를 초과한 종목 교체시
- 추적가격 또는 지수 산출의 일시적 중단 또는 이용 불가시

— 외국ETF 관리에 필요한 관리서류 제출 및 신고사항을 국내ETF에 준용하여 적용

□ SPAC 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추가

(7조 8호·9호, 26조 1항 : 2009/12/21 개정·시행)

— SPAC 주권의 신규·신주상장 신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10조의2)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제출서류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 주식발행자금 예치·신탁확인서,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총액 확인서 제출

□ SPAC의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시기 명시

(42조 : 2009/12/21 개정·시행)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75조의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관리종목지정 및 지정해제의 시기를 지정함
  - 사업보고서 제출일 또는 사유발생사실 확인일(또는 사유해소 확인일) 익일에 관리종목지정 또는 지정해제

□ SPAC과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자 범위

(46조의2 : 2009/12/21 개정·시행)

- SPAC의 특별이해관계자와의 합병을 금지함에 따라(상장규정 80조의2), 해당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발기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
  - i)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중 SPAC관련 업무종사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i)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임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ii)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iv)SPAC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또는 이들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 당해 SPAC 및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 겸직 회사

□ 상장예비심사 효력에 대한 포괄적 불인정 근거 마련

(6조의2 : 2009/12/21 개정·시행)

- 상장예비심사 결과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SPAC 정관필수 기재사항 마련

(24조의2, 별지18호의2 : 2009/12/21 개정 · 시행)

- 상장규정(32조의2 8호 바목)에 따라 세칙에 위임하고 있는 기업목적회사(SPAC)의 정관필수 기재사항을 마련함

□ SPAC 합병상장 · 신규상장심사수수료 부과

(50조, 별표2 : 2009/12/21 개정 · 시행)

- 합병상장수수료는 일반법인 신규상장심사수수료와 동일금액(500만원)을 부과
- 신규상장심사수수료는 일반법인 신규상장심사수수료의 1/2 수준인 250만원을 부과
  - SPAC이 일반법인에 비해 심사범위가 제한적인 점과 SPAC의 진입기준(자기자본 200억원, 자본금 50억원~100억원 예상)에 상응하는 신규상장수수료 수준(180만원~330만원)을 고려한 것임

## 5.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43조의2, 52조~60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투자자 보호와 기업 비밀간 균형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 도입한 “상장법인의 공시유보 제도”를 구체화
  - 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신규시설투자 및 단일판매계약의 일정 내용에 대한 공시유보 근거를 마련
- 채권상장법인의 수시공시 신설
  - 채권상장법인에 대해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를 부과

□ 수시공시 항목의 개선 및 자율공시의 확대

(7조 1항, 28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수시공시 항목을 자율공시로 이관
- 의무공시 항목 신설
  -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파산신청에 따른 진행 단계별 공시
  - 발행 어음의 위·변조 사고 신고에 대한 공시
  - 일정기준 이상 회사채 원리금 미상환 사실에 대한 공시
- 의무공시 항목 조정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공시
    - \*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공시면제는 기업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에만 적용
  - 공시의무 기준(비율 및 금액)을 비율 기준으로 일원화
  - 국내법인의 해외 공개매수에 대한 출자 공시
    - \* M&A 비밀정보장을 위해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외국기업 발행주식 등을 공개매수시 타법인 출자 공시의 예외 인정
- 이원화되어 있던 자율공시 조항을 일원화하고 규정내용도 임의규정 형식으로 변경

□ 자율규제 체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4조 2항, 35조의2 등 : 2009/1/28 개정, 2/4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절차 합리화
  -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시위반제재금 제도 도입
  -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되면서 이를 제재하는 수단의 다양화

□ 자산재평가 관련 사항의 공시규정 도입

(7조 1항 2호 : 2009/4/15 개정, 4/16 시행)

- 동일내용 공시의무 부담 최소화
  - 주기적 재평가 수행 및 엄격한 재평가모형 변경 등을 감안하여 “유형 자산 분류별”로 최초 재평가결정만 공시
-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시의무를 한정하여 정보제공 효율성을 제고
  - 재평가차액이 자산총액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
  -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재평가 감소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시의무 부과

□ 주식배당 예고기한 신설

(7조 1항 2호 마목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예정내용을 “사업연도말 10 일전까지” 투자자에게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
  - 투자정보의 중요성 및 시장조치 측면에서 일정 시점까지 투자자에 대한 주식배당 예고사항의 공표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함

□ 상장법인의 중복 공시제출의무 개선

(7조 1항 2호~3호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사외이사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 공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동법 165조의17 1항·3항)에 해당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시규정에 열거되어 있던 동일한 공시의무를 삭제
  -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위(DART)로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KIND)로 자동전송되어 시장에 공표토록 하여 중복 공시제출의무 경감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불이행·공시번복에 대한 제재

(29조~30조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외국법인이 공시불이행 또는 공시번복을 하는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 현금배당시 시가배당률 산식 위임근거

(7조 1항 2호 마목 : 2009/7/1 개정, 7/6 시행)

-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도록 명확화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의무사항

(11조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SPAC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장법인과 동일한 공시관리 방법·절차 등을 적용하되, 일반상장법인과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특성 등을 반영하여 고유한 공시의무사항을 규정함
  -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 임원 선임·해임 결의(당일공시) 및 임원의 사임(익일공시) 등 경영진 변동 사실
  -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예치(신탁) 계약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익일공시)
  -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이사회 결의 관련 공시의무 신설

(11조 2항 1호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합병 이사회 결의 공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합병 대상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음을 투자자에게 당일공시하도록 함

-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80%미만
- 관리종목 지정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신설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 관련 공시의무 신설

(11조 2항 2호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합병 주주총회 결의 공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투자자에게 당일공시하도록 함
  - 합병 후 일정기간 공모전 주주등의 매각제한 사실
  -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
  - 합병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 여부
  - 합병 대상법인이 부적격법인과 합병제한 요건 해당 여부

□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 단축

(30조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 일반 상장법인의 조회공시 공시번복 제재를 적용하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원활한 M&A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하여 적용함

**조회공시**

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거래소가 확인·요구한 경우 당해 상장법인이 직접 공시하는 것을 말함. 상장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에 응답해야 하며, 상장법인이 풍문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후 1월(M&A는 3월) 이내에 이를 전면취소,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번복”으로 보아 불성실공시로 제재함

##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전문투자자의 정의 구체화 (2조 2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법인세법 시행령(17조의2 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일부를 선별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 상장외국법인 적용대상 기준환율 등의 구체화  
(7조의3 : 2009/2/3 개정, 2/4 시행)
  - 수시공시 발생 금액
    -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
  - 수시공시 기준 금액
    - 재무지표 기준별(자기자본·매출액·자산총액 등)로 적용대상 기준환율 등을 구체화
    -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되, 자기 자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증감분이 있는 경우 최근증감분 발생기준일 현재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
  
- 자율공시의 확대 (8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주요주주·계열회사 변경, 특허권 취득, 기술제휴
  
- 벌점 가중·감경 범위 등 (13조 4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가중·감경의 범위를 2점에서 3점으로 확대
  - 성실공시법인 벌점감경기준을 사유별로 명확화
  
-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기준 등 (13조의3 : 2009/2/3 개정, 2/4 시행)

— 부과대상

-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성실공시

— 부과금액

- 부과별점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사유별 해당 금액을 곱한 금액

□ 부과별점 수준에 따른 표시 차별화

(14조 2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단말기 등의 시세표상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공표기간을 부과별점 수준에 따라 차별화

□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번복 및 중요내용 매매 거래 정지 대상 (9조, 16조 1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번복대상 축소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제외

— 중요내용 매매 거래 정지 대상

- 부도정보 통보에 의한 거래소의 공시 추가
- 생산활동 중단 매매거래정지폐지

□ 의무교육 이수 면제 (24조 2항 1호 단서 : 2009/2/3 개정, 2/4 시행)

- 과거 교육경력 소유자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공시책임자·담당자 교육과정의 이수 면제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의무교육 이수 면제

□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공시시한을 시간외시장 개시시간에 연동

(25조 5호 : 2009/2/3 개정, 2/4 시행)

- 당일·익일공시의 예외시한을 각각 그 익일 07시 20분에서 시간외 시장 개시시간에 연동시킴

□ 현금배당 신고의 기준이 되는 시가배당률

(4조의2 : 2009/7/2 개정, 7/6 시행)

- 현금배당 신고의 기준이 되는 시가배당률 산식 신설
  - 시가배당률 :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시 가중·감경 근거 명확화

(13조의3 : 2009/7/2 개정, 7/6 시행)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여부·금액 등 결정시 공시위원회가 사안별 위반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재량 권한 부여
  - 다만, 공시위반제재금의 가중·감경 범위는 벌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주식배당 예고기한 계산방법 구체화

(25조 2호 : 2009/7/2 개정, 7/6 시행)

-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의 기간계산은 매매일이 아닌 역(calendar)에 의하여 계산함을 명확화

□ 국고채전문딜러의 양방향조성호가 체결 후 호가실적 인정시간 축소

(79조 3항 : 2009/10/23 개정, 11/2 시행)

###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등에 관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국고채 유통시장에서 호가제시 등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일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채딜러를 말함. 국고채 발행시장에서는 우선적인 입찰참여권, 비경쟁입찰참여자의 입찰대행 그리고 국채인수 및 유통금융지원 등 혜택을 부여받으며, 국고채 전문유통시장에서는 국채지표종목 장내거래의무, 해당 딜러 총국고채거래량의 50%를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의무, PD와 PPD의 총국고채거래량의 5% 거래의무 등의 시장조성의무를 수행함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양방향의 조성호가를 한 전문딜러는 당해 양방의 조성호가 중 어느 일방의 물량이 전량 매매체결 된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다시 호가를 하도록 함
  - 종래에 “6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호가실적 인정시간을 축소함

###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16조 1항 8의2 : 2009/12/21 개정 ·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시규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함
  -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공시규정 11조 1항 4호) 또는,
  - 합병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행사 제한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공시규정 11조 2항 2호 나~라)

## 7.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 공매도 제한

(9조의2 1항~4항, 9조의3 1항~2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내용으로 규제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공매도로 보지 않는 매도 및 차입공매도 제출시 회원과 위탁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업무규정에서 재차 확인함
- 차입공매도 제출 제한 허용
  - 예측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및 시장조치간 절차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제한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하지 못하지만,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 예외를 확대
  - ELW LP, ETF LP 및 선물시장 시장조성자가 유동성공급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와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과 주식선물·옵션(원주)간 차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을 하지 않음

□ 청산업무의 세부내용 구체화

(28조, 28조의2, 29조~31조, 31조의2·5·6 : 2009/1/28 개정, 2/4 시행)

- 매매거래 확인 절차 신설
  - 거래소는 거래시간 종료 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기에 앞서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를 확인
-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의 내용”을 명확히 함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간 대금의 임의적 차감을 양 시장의 대금 간 필수적 차감으로 변경
-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회원 및 예탁결제원 통지
  -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증권·결제대금의 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 및 예탁결제원에 통지
-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및 대금의 수수방법 개선
  -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대로 결제시한(16시)까지 증권 및 대금을 납부하고, 거래소는 결제시한후 결제회원에게 지급
- 예탁결제원의 회원결제진행상황의 거래소 통지 신설

- 통지내용 : 회원별·종목별 납부·미납수량, 대금의 납부·미납금액, 수령회원에 대한 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지급금액, 증권 및 대금의 납부·인도 및 지급시간 등
- 통지방법 :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통지
- 통지시간 : 세칙이 정하는 시간(결제시한 전 30분)부터 결제종결시까지

— 결제지시의 내용 구체화

- 결제지시의 개념을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대해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 인도 및 대금 지급의 지시”로 정의하고, 결제지시는 결제시한 이후에 하도록 함
- 결제지시의 내용을 “어느 시점에”, “어느 회원에게”, “얼마만큼의 증권인도·대금지급”으로 구체화

—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근거마련

- 증권금융으로부터 대주·유자를 받아 행한 각 결제회원의 매매거래(유통매매거래)는 해당 회원의 청산결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소가 직접 증권금융과 청산결제 하도록 함

□ 결제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31조의3·4·6·9, 32조의3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방법 개선 및 결제지시의 간주제도 도입

- 현행 증권·대금 동시결제방식 외에 종목별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다수종목·다수회원에 대해 그 때마다 지시함에 따른 결제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가능상태인 때에 결제지시한 것으로 간주
- 예탁결제원은 결제지시가 있거나 간주된 때에는 즉시 계좌대체

— 미납 대금에 대한 유동성 공급(결제이행보증) 신설

- 거래소는 회원이 결제시한까지 미납한 대금에 대해 결제시한기준으로 지체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되, 증권의 경우는 배제
- 유동성을 공급받은 회원이 공급분을 상환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거래소계좌로 상환하고, 거래소는 상환사실을 즉시 예탁결제원에 통지
- 예탁결제원은 상환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해당 회원에게 결제 가능

- 대금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신설
  - 지연된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손해금으로 함
- 청산결제담당자 및 청산결제책임자 제도 신설
  - 회원에게 결제내역의 확인,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 등 청산·결제업무를 행하는 담당자 1인 이상(담당자 및 임·직원 청산결제업무를 총괄할 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거래소에 등록

□ 결제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31조의2·7, 32조, 32조의2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계좌의 개념 정의
  - 증권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증권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
  - 대금결제계좌 : 확정된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한국은행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
- 거래소와 예탁결제원간 법적 관계 명확화
  - 회원이 예탁결제원계좌를 통한 증권·대금 수수는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한 것과 동일한 효력(대리 효과)이 있는 것으로 하여 거래소는 본인, 예탁결제원은 대리인임을 명확히 함
- 대금결제계좌의 개설절차 및 결제은행 요건
  - 예탁결제원이 대금결제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고, 일정한 재무요건(세척에서 자기자본비율 8%이상으로 정할 예정) 충족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결제대용증
  - 거래소는 미납된 증권에 갈음하여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회원으로부터 수령에 대한 동의를 얻고, 결제대용증은 거래소를 대신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
  - 회원의 예탁결제원계좌를 통한 결제대용증 수수는 직접 거래소를 통한 수수와 동일한 효력(대리효과)이 있음

— 결제불이행 조치 제도 개선

- 결제불이행의 개념 정의 및 결제불이행 사례의 구체적 열거
- 결제불이행 조치에 거래소의 채무인수 정지 추가
- 지급정지한 현금 및 증권(처분한 현금을 포함)과 결제불이행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과 상계근거 마련
- 거래소의 지급정지한 증권의 매도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증권의 매수 허용
- 결제불이행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의 해지 신청 근거 및 당해 회원의 원활한 결제지원을 위해 거래소 소속직원 파견 근거 마련

□ 증권결제특례 신설 (31조의8 : 2009/1/28 개정, 2/4 시행)

- 소형주 및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의 대량착오매매등으로 결제물량이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등 결제대용증으로 결제에 갈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대물 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회원과 고객간 차감 및 회원·고객간 결제시한의 회원 자율화

(45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회원과 위탁자가 같은 날에 동일한 증권의 종목을 수수하거나 대금을 수수할 경우에는 각각 종목 간, 대금 간에 차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객과 위탁자간 결제시한을 결제일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자율화

□ 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및 거래소의 결제위험 파악·관리

(31조의3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가 곤란한 회원은 결제가능여부를 거래소에 통지

— 거래소는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위험을 파악·관리

□ 차입공매도 확인시 내용 및 절차 명확화

(9조의2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문서 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

- 다만, 예탁(보관)기관의 확인서는 활용 빈도가 낮고, 결제이행확약서는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이 곤란하므로 폐지

□ 차입공매도 미실행확약 제도(long sell confirmation) 도입

(9조의2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실행 확약을 받은 투자자에 대해 전산적으로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매도 명시 및 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공매도 규정 준수 확인체계의 구축

(9조의4 1항~2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결제부족을 직접 확인한 위탁자와 신탁업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위탁자에 대해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

— 거래소는 해당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

- 거래소는 관련 회원에게 통보하고 해당 회원은 그 사실을 다른 회원에게 통보

□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9조의2 4항, 9조의4 3항 : 2009/3/4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1개월간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시에 차입증빙 자료를 확인
  - 최근 6개월간 공매도 위반 횟수가 2일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거래대금이 1일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현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제도(사이드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13조 1항 : 2009/7/1 개정, 7/6 시행)

- 비정상적인 선물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이드카의 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가격의 변동에 선물거래 대상지수의 변동을 추가하여 사이드카를 발동함

기 준	개 정
선물가격이 $\pm 6\%$ 변동하여 1분간 지속	선물가격 $\pm 6\%$ & 선물거래 대상지수 $\pm 3\%$ 변동하여 1분간 지속

□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시장 개설

(4조 1항~2항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시장을 개설하고 매매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까지로 하여 정규시장으로 한정함
  - 제도의 시행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안)(2009/9/29 입법예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신주인수권증권**

일정기간(행사기간)내에 당해회사에 대하여 신주 발행을 청구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증권으로, 보통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함. 사채와 해당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으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분리형 사채의 발행에 있어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해야 함(상법 516조의5)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사채 발행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행사기간 내에 일정 수의 발행회사 주식을 일정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할 것을 사채발행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채권을 신주인수권부사채(BW)라고 하며, 워런트채라고도 함. 사채액면이 주식으로 전환돼 사채가 소멸되는 전환사채(CB)와는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시점에 신주대금납입을 통해 신주가 발행, 교환된 이후에도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차이가 있음

**신주인수권증서(Warrant)**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주주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신주인수권)를 증서로 나타내어 주주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가 가능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 대한 호가의 가격제한폭 미적용

(14조 1항~2항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의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하여 호가의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음

-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펀드의 경우는 호가가격을 상·하한가 15% 이내로 제한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 정지

(25조 2항 : 2009/10/21 개정)

- 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정지시 해당 주권을 기초 주권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큰 우선주에 대한 호가의 기세 불인정

(2조 16항 : 2009/12/29 개정, 2010/1/18 시행)

-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초과하는 우선주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 없는 것으로 의제함

□ 회원시스템과 코스닥시스템간 연결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 근거 신설 (52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회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코스닥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코스닥시스템과 회원시스템의 연결방법 등을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의 제정·개정시 거래소의 통보의무 부과
  - 회원의 기준 준수 의무 명시

## 8.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실질심사대상 종목의 대용증권 지정 배제

(44조 6호 : 2009/1/16 개정, 2/4 시행)

- 실질심사대상 종목은 상장폐지 우려에 따른 담보가치의 하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심사 기간 동안은 대상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대응증권 지정에서 배제

□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 관련

(35조의2~3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증권금융이 결제불이행(결제를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한 경우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차감에서 제외하고 거래소가 유통매매거래를 한 결제회원과 직접 청산결제함
  - 유통매매거래의 범위에는 대여 받은 자금 또는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매거래도 포함
- 거래소가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청산결제를 증권금융과 행하더라도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신청 및 공동기금 적립은 결제회원이 행함
  - 증권금융과 결제회원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
- 증권금융이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기금 사용방법
  - 결제회원별 사용금액은 각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 중에서 유통매매거래로 적립된 변동적립금(유통변동적립금)을 안분비율 방식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 유통변동적립금을 안분비율 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이 결제불이행금액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결제회원별로 현재 각 결제회원의 증권시장 변동적립금에서 해당 결제회원의 유통변동적립금을 뺀 금액을 안분비율 방식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각 회원의 사용금액으로 함

□ 유통매매거래의 결제내역 통지

(35조의4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유통매매거래를 한 회원은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에 거래소에 통지해야 함

-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종목명, 매수수량 및 용자금액 등의 유통매매 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착오매매정정 등으로 유통매매거래 결제내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된 결제내역을 매매거래일의 다음날까지 통지

□ 차감방법 구체화 및 보완 (36조 : 2009/2/20 개정, 3/23 시행)

- 대금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간의 차감을 의무화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해당 거래를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결제불이행처리를 위해 거래소가 타 회원에게 위탁하여 거래한 주식에 대해 차감대상에서 제외하여 조기 인도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결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결제내역 및 결제내역의 통지시기

(36조의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회원(증권금융 포함)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
  -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종목별 수량 및 대금 등
- 통지시기
  - 회원 : 결제내역 확정시(매매당일) 지체없이 통지하고, 착오매매정정 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정정내역을 포함한 결제내역 확정시 지체없이 통지
  - 예탁결제원 : 매매거래일의 다음날 매매거래가 종료된 때 지체없이 통지

□ 결제계좌 개설 은행의 재무요건

(36조의4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시중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 8%이상

□ 결제회원의 결제 가능여부 통지

(36조의5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결제회원에 대해 다음 사항 통지 요구 가능
  -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대금·증권의 현황 및 사유
  -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가능여부,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금 유동성공급시 사용되는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36조의6·11 : 2009/2/20 개정, 5/4 시행)

-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 결제적립금, Credit Line, 공동기금, 회원보증금,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 결제이행재원의 사용 순서
  - 거래소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결제적립금 또는 Credit Line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며,
  -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제이행재원 사용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

□ 대금결제지연손해금 산출 방법 등

(36조의11 : 2009/2/20 개정, 5/4 시행)

- 산출방법 : 결제지연금액 × 손해율
  - 손해율

구 분	손해율
결제일부터 기산 3일(납부일, 매매일 기준)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4/1만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6/1만
납부기간의 마지막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매매일 기준) 후에 납부하는 경우	8/1만

□ 예탁결제원의 회원결제진행상황 통지시간

(36조의7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시한 전 30분(15시30분)부터 결제 종결시까지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통지

□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이 수령회원계좌로의 결제지시

(36조의8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시한 후 대금 및 종목의 증권을 완납한 경우(완납종목)
  - 증권인도 가능한도 이내에서 증권의 종목별 수령 가능
- 16시 30분 이후 대금 및 종목의 증권을 완납한 경우
  - 결제교착시 결제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선결제 가능하며, 선결제시에도 증권인도 가능한도 이내에서 수령 가능
- 완납종목 또는 미완납종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종목의 인도우선 순위
  -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할 수량이 많은 종목
  - 증권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할 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결제할 종목의 평가액이 큰 종목
  - 평가액이 동일한 때에는 납부완료시간이 빠른 종목

□ 결제대용증 인도에 대한 회원의 수령동의 방법

(36조의9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거래소는 결제대용증을 수령할 회원과 종목 및 수량에 대해 합의함
  -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별 종목의 수령수량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회원을 지정하여 종목별로 수량을 배정
- 결제대용증이 결제회원에게 교부된 때 거래소가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인도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의 수령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전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증 발행신청회원의 결제대용금을 확인 가능

- 예탁결제원이 결제대용증으로 증권의 납부에 갈음한 결제회원으로 부터 해당 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거래소에 통지
-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결제대용금으로 결제대용증 발행대상증권을 직접 매수 가능
  - 해당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대용증 발행대상 증권이 납부시한 까지 미납된 경우 등

□ 증권결제의 특례 (36조의10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착오매매 등으로 결제할 수량이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원종목에 갈음하여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으로 결제할 경우, 현금 또는 유사한 종목은 수령할 회원이 선정 가능
  - 단, 선정한 종목으로 결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소가 수령할 회원과 협의하여 선정
- 갈음할 현금의 금액 및 선정된 종목의 수량
  - 갈음할 현금의 금액 : ①과 ②중 큰 금액
    - ① : 원종목의 매매일의 증가×미결제수량×120%
    - ② : 현금지급일의 원종목의 증가(당일 증가 확정전 인도시 직전 매매일의 증가)×미결제수량
  - 선정된 종목의 수량은 갈음할 현금의 금액을 선정된 종목의 인도일의 증가(당일 증가 확정전 인도시 직전매매일의 증가)로 나눈 수량
  - 미결제회원과 수령할 회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현금 또는 유사종목의 수량으로 함

□ 거래소 직원의 결제불이행회원의 결제 지원

(36조의12 : 2009/2/20 개정, 3/23 시행)

- 결제불이행회원에 대해 거래소 직원을 파견하여 결제업무를 지원할 경우, 해당 직원은 결제지원명령서를 해당 회원에게 제시함

- 해당 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득한 비밀의 엄수 의무

□ 청산결제 담당자의 자격요건 (37조 : 2009/2/20 개정, 3/23 시행)

- 청산결제담당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가 실시하는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거래소의 청산결제담당자 등록 취소 또는 교체 요구
  -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등록되었거나, 청산·결제와 관련한 법규 또는 법규에 따른 처분·조치를 위반하였거나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래소는 정기적으로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
  - 다만, 청산·결제 제도 또는 운영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신규 회원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별도로 청산·결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

□ 차입공매도 통보 방법의 기록·유지

(8조의5 1항 : 2009/3/12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차입공매도 관련 사항의 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등을 통보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

□ 공매도규정 위반자의 차입공매도 확인방법

(8조의5 2항 : 2009/3/12 개정, 3/16 시행)

- 회원은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계약서 또는 대차거래확인서를 제출받아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9조의5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회원은 결제부족 위탁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3년 이상 보관
- 회원은 신탁기관 등으로부터 업무서식에 따라 결제부족 위탁자 현황을 결제일 12시까지 통보받음
- 공매도 위반자 통보기준 중 최근 6개월의 기간 산정은 “거래소가 확인한 날”을 기산일로 함

□ 호가 입력내용 변경 및 신설

(7조 1항~2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순수한 의미의 호가입력만 허용함에 따라 관련 구분값을 변경
  - 지정가, 시장가 등 순수한 호가유형 5개
- 대량매매와 일반매매를 구분하여 별도로 구분값을 입력
  - 일반호가 : 정규시장, 시간외종가, 시간외단일가
  - 대량호가 : 정규시장, 시간외시장
- 자기주식매매의 경우 매매목적과 매매방법으로 자사주 취득·처분을 구분
  - 자사주 매매목적 : 스타트업 목적, 자사주신탁, 자사주일반
  - 자사주 매매방법(가격제한등 관련) : 정부등, 한은등, 기타
-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입력 신규 도입
  -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 차익거래
  - ELW·ETF·선물옵션 LP헤지거래

□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 변경시 통보 의무 및 호가입력사항 준수 의무

(7조 5항~6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회원은 지점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동내역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통보하고, 거래소가 회원에게 별도로 호가입력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 “상장주식수 5% 초과”의 계산방법 변경  
(8조 3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상장주식수 5% 계산시 매매수량단위 미만 주식이 발생하면 이를 매매수량단위로 절상시켜 이를 초과한 수량의 입력을 불허
  
- 상한가 매수 및 하한가 매도 조건부지정가호가 입력 불가  
(8조 6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상한가 매수 및 하한가 매도의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종가결정시점에 순서가 열위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력 금지
  
-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의 대량매매 매매거래시간과 호가접수시간 일치  
(6조 1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호가접수의 시작시간이 매매거래시간과 일치하도록 호가접수의 시작시간을 “장종료후부터”에서 “15시 10분부터”로 변경
  
- 의무스프레드비율을 초과한 LP 호가의 예외적 허용  
(12조의6 3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스프레드비율을 감안한 가격이 Tick size보다 작은 경우 1 Tick의 가격을 가감한 가격으로 LP호가 제출 허용
    - 매도호가는 최우선매수호가 + 1 Tick의 가격, 매수호가는 최우선매도호가 - 1 Tick의 가격으로 제출 가능
  
- 호가의 정정 개념 명확화 (13조 3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지정가호가와 지정가호가의 성격을 보유한 최유리지정가호가·최우선지정가호가 3개(지정가·최유리·최우선)의 호가간에 호가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격 변경을 수반하도록 함

- 가격변경 없이 조건(IOC, FOK) 부여만으로는 정정 불가
- 동일 종류 호가간(시장가호가 제외) 정정시도 가격 변경 수반

□ 동시호가 적용 Case 추가 및 명확화

(19조 3항~4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산출시 그 가격이 5원으로 결정되는 경우 5원으로 제출한 호가(9시 이전에 제출한 호가)는 동시호가로 적용하여 배분에 참여
- 시가 또는 장중 단일가매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가격 형성이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참여한 호가는 동시호가임을 명시

□ 기세결정에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개선

(21조 : 2009/3/19 개정, 3/23 시행)

- 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에 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당일 중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모든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 불가능
  - 다만, 시가가 형성되지 않아 연장된 상태에서 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어 당일 중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세결정에 참여 가능

□ 랜덤엔드(Random-end) 발동예외

(22조 1항, 25조의2 2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랜덤엔드는 시가 등 가격 결정시 가장 높거나 낮은 예상체결가격이 잠정적인 시가 등 보다 5%(시간외단일가시 3%)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 발동하지만,
  - 시가(종가) 결정시 잠정적인 시가(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직전가격) 기준으로 1% 내로 변동되어 결정되는 경우이거나,

- 시간외 단일가매매시에 잠정적인 단위매매체결시점에서의 가격이 직전가격의 1% 내로 변동되어 결정되는 경우에는 발동하지 않음

□ 대량매매 관련 시스템 장애시 처리방법 일원화 등

(22조의2 3항~4항 : 2009/3/19 개정, 3/23 시행)

- K-BloX와의 접속장애 발생시 회원 또는 거래소가 협상내용을 호가하는 방식에서 회원이 호가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 K-BloX 장애로 협상내용을 코스닥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량거래를 체결시키지 않음

□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 불성립 사유 확대

(26조 : 2009/3/19 개정, 3/23 시행)

-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않음

□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의 산출 (37조의2 : 2009/3/19 개정, 3/23 시행)

- 목표가주문 등에 준거가격이 되므로 보다 정확한 가격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을 호가가격단위에서 1원 단위로 변경 산출

□ 관리종목에 대하여 30분 단위의 주기적 단일가매매 실시

(28조 1항~2항 : 2009/3/30 개정, 4/6 시행)

- 관리종목의 매매체결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함
- 장중에는 장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체결시점)마다 체결
  - 시가 및 종가를 포함하여 총 13회 체결
  - 다만, 시장임시정지 등의 사유로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에 체결

- 다만, 종목별 거래정지 사유로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단위체결시점까지의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단위체결시점까지 호가를 접수하여 체결

□ 정규시장 중의 단일가매매 이외의 매매거래

(28조 3항 : 2009/3/30 개정, 4/6 시행)

- 장중대량매매,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등의 경우는 종래와 동일하게 매매거래 가능

□ 관리종목 랜덤엔드 적용시 참여호가 범위

(28조 4항 : 2009/3/30 개정, 4/6 시행)

- 시가 및 종가 결정시 랜덤엔드를 적용함에 있어 참여호가의 범위는 일반종목과 동일
  - 5분 이내에서 거래소가 임의로 정하는 시점까지 제출된 호가

□ 관리종목의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28조 4항 : 2009/3/30 개정, 4/6 시행)

- 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 불가능

□ 관리종목에 입력 가능한 호가 (8조 : 2009/3/30 개정, 4/6 시행)

- 지정가호가와 시장가호가만 제출이 허용되고,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는 제출 불가능
  - 다만, 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라도 조건(IOC, FOK)이 부여된 경우에는 제출 불가능

□ 관리종목 지정시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미개설

(26조 : 2009/3/30 개정, 4/6 시행)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음
  - 다만, 관리종목 지정 중에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의 시행일 변경 및 적용례 추가 (부칙 : 2009/3/30 개정, 4/6 시행)

- 업무규정이 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시행을 2009년 4월 1일에서 2009년 4월 6일로 연기함에 따라 관리종목의 매매거래정지 단축조항의 시행일을 조정(2009년 4월 6일)하고,
- 2009년 4월 3일에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다음 매매거래일(2009년 4월 6일)에 단일가매매가 가능하도록 적용례 추가

□ 결제이행을 위한 유동성공급 제도 보완

(36조의6 : 2009/4/20 개정, 5/4 시행)

- 신용한도의 설정대상 기관에 “증권금융회사” 추가
  -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외에 증권금융회사와도 신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동성 조달창구를 확대
-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결제회원이 결제계좌로 납부한 대금 또는 증권의 처리절차 명시
  - 유동성을 공급한 후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계좌로 납부한 대금 또는 증권을 예탁결제원이 거래소계좌로 지급 또는 인도하도록 하여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상환절차를 간소화
  - 공급하고자 하는 유동성이 결제계좌로 공급되기 이전에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계좌로 대금 또는 증권이 납부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령회원에 대한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방지

□ 결제지연손해금 징수기준 조정

(36조의11 : 2009/4/20 개정, 5/4 시행)

- 결제지연손해금 손해율을 1만분의4(연 14.6% 수준)에서 1만분의2(연7.3% 수준)으로 인하
  - \* 결제지연손해금 : 결제지연금액 × 손해율
- 결제지연손해금 손해율의 예외적 조정
  - 신용한도로 유동성을 공급한 경우 신용한도 금액에 대한 그 발생 비용의 비율(조정률)이 손해율보다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조정률을 손해율로 함
- 결제지연손해금 납부 지연시 가산금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지연납부에 따른 부담금 수준을 완화
  - “결제지연대금”에 대한 손해율 자체를 납부지연기간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방식
    - “결제지연손해금”의 일정률(1만분의6, 1만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일수마다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하는 방식

□ 회원청산결제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내역 통보

(36조의2 2항 : 2009/4/20 개정, 5/4 시행)

- 거래소시스템에서 회원사시스템으로 결제내역 전송방식(인터페이스에 의한 전송) 외에 웹(Web) 기반의 청산결제 정보제공 화면(회원청산결제단말기)으로 회원이 결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

□ 결제회원별 공동기금 사용액 산출방식 조정

(35조의3 : 2009/4/20 개정, 5/4 시행)

- 증권금융의 유통매매거래 결제불이행시 결제회원별 분담액중 1만원 미만 금액의 절사 및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미달시 공동기금 사용액 산출방식 조정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발동예고 요건 추가

(14조 1항 : 2009/7/1 개정, 7/6 시행)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요건에 “선물거래대상지수가 동일방향으로 3%이상 변동될 것”을 추가함에 따라 발동예고에 이를 반영

기 준	개 정
선물가격이 $\pm 6\%$ 변동	선물가격 $\pm 6\%$ & 선물거래 대상지수 $\pm 3\%$ 변동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발동예고해제 요건

(14조 2항 : 2009/7/1 개정, 7/6 시행)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요건에 “선물거래대상지수가 동일방향으로 3%이상 변동될 것”을 추가함에 따라 발동예고해제에도 이를 반영

□ 증권의 종류별 제출가능한 호가의 종류

(7조의3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시장 개설과 함께 회원이 증권의 종류별로 할 수 있는 호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펀드 :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또는 최우선지정가호가
  -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 지정가호가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호가 입력 제한

(8조 5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의 입력을 금지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호가수량 단위

(18조 1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1 증권·증서”로 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 결정시 2개 이상의 합치가격이 있는 경우의 가격결정방법

(20조 4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가격이 호가가격단위 미달시에는 호가가격단위로 절상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 대한 랜덤엔드

(Random End) 적용 배제 (22조 5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 대해서는 랜덤엔드(Random End)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시가 및 장종료시 가격결정의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하지 않음

**랜덤엔드(Random End)**

단일가 결정 직전 예상 체결 가격 등이 급변하는 종목의 단일가 매매참여 호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30조 2항 : 2009/12/29 개정, 2010/1/4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 및 그 재개는 해당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적용함

## 9.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1조, 2조 4항, 25조 등 : 2009/1/28 개정, 2/4 시행)

- 최대주주 산정시 제외대상인 법인세법상 기관투자자 개념을 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 개념으로 전환
-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상장주선인 자격 개선
  - 금융투자업이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으로 재편됨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상장주선업을 허용

### □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종목 지정특례

(28조 13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신규상장연도에는 매출액 발생이 곤란한 점을 감안, 동연도에 매출액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배제

### □ 상장법인 해산에 따른 상장폐지 근거 마련

(38조 1항 5호 : 2009/1/28 개정, 1/29 시행)

- 법인격이 소멸하게 되는 해산사유에 대한 상장폐지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운영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제고

### □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 심사요건 마련

(16조의2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함
  - 당해 증권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는 “1만증권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잔존권리행사기간은 상장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함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의 액면이 5천원인 경우를 기준
  -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다만, 주주에게 당해 채권의 인수권이 주어진 경우는 제외
-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 심사요건 마련 (16조의3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함
    - 당해 증권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상장신청일 현재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주인수권증서는 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총수는 신주의 액면이 5천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1만 증서 이상”이어야 함
  - 유통기간이 단기인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가능기간은 5일 이상이 되도록 함
-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일괄상장신청 근거 마련  
(18조의3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예정 주식을 일괄하여 상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세부적인 상장신청 절차는 세칙에서 마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폐지 사유  
(44조의2~3 : 2009/10/21 개정)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 공통되는 상장폐지 요건
    - 발행회사의 상장주권이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거래소가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증서의 상장을 폐지함

- 신주인수권증권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만료되거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완료되면 당해 증권의 상장을 폐지함
- 신주인수권증서의 신주청약개시일의 5일전이 된 경우에는 당해 증서의 상장을 폐지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2조 28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모집을 통해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정의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 4항 14호)상 기업인수목적회사 정의 준용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 심사요건

(7조의3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 주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기업규모 :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원으로 완화)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 주식의 분산 : 소액주주수 200인 이상
  - 발기인 금융투자업자의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 발행주식총액의 5% 이상
  - 질적심사 : 현행 주권의 질적심사 기준을 준용
- 기업인수목적회사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사업목적, 공모자금 예치·신탁·반환에 관한 사항, 재무활동 제한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심사요건

(19조의4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등(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심사청구를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의 상장요건을 규정
  -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의 규모 :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30 억원 이상일 것,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이거나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등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상대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합병시 관리종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질적심사 : 현행 주권의 질적심사 기준을 준용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폐지요건

(38조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일반 상장법인의 상장폐지요건을 적용하되, SPAC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상장폐지 요건을 추가하고 일정 요건은 적용을 배제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신설 상장폐지요건
  - 임원의 자격요건 미달, 자금예치의무 및 재무활동 제한 위반, 합병상장심사 미청구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후 미해소시
- 상장폐지요건 적용 배제사유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대해서는 일반우회상장관련 상장폐지규정과 주된영업정지시 상장폐지규정의 적용 배제

## 10.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전문투자자의 범위 규정 (2조 11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최대주주 산정시 제외대상인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규정
  -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

□ 파산신청 관련 관리종목 기간 명시

(26조 1항 14호의3 : 2009/2/3 개정, 2/4 시행)

- 규정상 파산신청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 신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간 명시
  - 지정시기 : 확인된 날의 익일
  - 해제시기 : 법원의 기각결정일의 익일

□ 관리종목 이의신청제도 개선 (27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공시규정상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운영에 따른 절차 중복 방지를 위하여 불성실공시에 따른 관리종목의 경우 이의신청 제외대상에 포함

□ 매매거래 정지기간 정비 (2009/2/3 개정, 2/4 시행)

- 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시행(2009/4/1)에 따른 투자자의 주의환기 효과가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

(29조 1항 1호: 2009/4/1 시행)

- 사유확인일 및 익일 정지 → 사유확인일만 정지
- 관리종목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적용을 제외하여 투자자의 거래제한을 해소 (29조 1항 5호: 2009/3/2 시행)
  -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파산신청 등은 별도규정

□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상장폐지 기준 명확화

(33조 11항 3호 나목 : 2009/7/3 개정, 7/6 시행)

- 회계처리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이상의 증권발행제한, 일정금액 이상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 또는 합병시 예비심사청구 제출서류

(3조의3, 19조의4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 또는 합병의 경우 예비심사청구를 위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4조의3 1항, 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동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추가적 제출서류를 정함
- SPAC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상장법인의 상장신청 서류에서 일정서류를 추가 및 배제함
  -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주거래은행 의견서, 벤처기업확인서,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는 제외
  - CB등 채무증권 발행·인수조건확인서류 추가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규상장신청시 제출서류

(12조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상장신청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1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함
  - 예치기관등이 발행한 자금예치·신탁확인서, 발기인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발행총액확인서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 지정·해제기준 및 시기

(26조 1항 15호의2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 지정·해제기준 및 요건별 지정·해제 시기를 명시함

- 임원의 자격요건 상실, 주식분산기준 미달, 자금 예치의무 위반, 상장 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등 각각의 경우 지정·해제의 시기를 별도로 정함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매매거래 정지·재개시기

(29조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결의·결정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시기를 명시
  - 합병대상법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예치의무 및 재무활동 위반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관리종목사유 해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자 범위

(33조 2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상장부적격법인과 합병에 있어 합병제한 특별이해관계법인을 구체적으로 규정
  - 발기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임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상술한 금융투자업자,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상술한 금융투자업자,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법인)의 대주주, 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이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 금융투자업자,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한 회사

□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신규상장시 제출서류

(17조의2~3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신규상장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3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 제출서류를 명시함
  - 신규상장신청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권종별 견양 2매 또는 통일규격증권발행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

(29조 4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목적주권의 매매거래정지시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수수료 면제

(38조 3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수수료 등을 거래소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변경 등으로 인한 신주인수권증권의 변경상장수수료,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 상호변경 등 자본금이 증가되지 않는 복수의 변경상장사유 발생시 신청 접수일이 동일한 경우 1건으로 간주하여 수수료 부과

## 11.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공시규정 개정

(39조 2항 5호, 42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상장법인 수시공시 유보제도 도입
  - 공시항목 중 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일부내용에 대하여 공시유보 허용
  - 공시유보 신청 전 사전협의 의무화 및 유보조건 해제시 유보항목 즉시 공시
- 상장법인 수시공시 부도정보 수신
  -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상장법인의 부도정보 수신시 공시

□ 수시공시 항목의 개선 및 자율공시 확대

(6조 1항 2호~3호, 45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공시환경 변화로 중요성이 높아진 사항을 의무공시 대상에 추가
  - 어음 위·변조 사고신고 (회사의 부도 회피, 횡령 은폐 목적의 허위신고 방지)
  - 부도의 선제적 단계로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은 중요한 투자정보이므로 일정기준 이상 회사채 원리금 미상환(누계)금액
  - 중요한 기술도입·이전계약 및 시설외투자 결정
  -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발생 가능한 당해 법인의 신청행위 및 법원의 결정행위 등
- 중복공시 및 중요도가 낮은 공시의무사항을 자율공시로 전환
  -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및 특허권 취득
- 의무공시 항목 조정: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표현 명확화를 위해 기업회계기준상 높은 위험회피 효과 달성시 공시의무 면제
  - 다수의 거래 존재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계약기간이 다수의 사업 연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손실규모는 당해 사업연도로 한정
- 국내 법인의 해외 공개매수시 공시시기 조정
  -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외국기업 발행주식 등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해외거래소 등에 공개매수신고서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타법인 출자 공시 면제

—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축소

- 시장조치 대상 상장법인만 반기검토(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 내부정보관리체계 상시공표 의무화

(45조 2항 : 2009/1/28 개정, 9/1 시행)

- 상장법인의 “내부정보 관리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투자참고사항 형태로 상시공표

□ 공시위반 제재금 도입 (34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공시의무 위반 유형별로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별점부과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 가능

□ 자산재평가 관련 사항의 공시규정 도입

(6조 1항 2호 : 2009/4/15 개정, 4/16 시행)

— 동일내용 공시의무 부담 최소화

- 주기적 재평가 수행 및 엄격한 재평가모형 변경 등을 감안하여 “유형 자산 분류별”로 최초 재평가결정만 공시

—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공시의무를 한정하여 정보제공 효율성을 제고

- 재평가차액이 자산총액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인 경우 공시의무를 부과
-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아 재평가 감소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시의무 부과

□ 주식배당 예고기한 신설

(6조 1항 2호 마목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그 예정내용을 “사업연도말 10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

- 상장법인의 주식배당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주식배당 예고제도를 공시규정에 반영

□ 상장법인의 중복 공시제출의무 개선

(6조 1항 2호~3호 : 2009/7/1 개정, 7/6 시행)

- 상장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사외이사 선임·해임·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인한 퇴임” 공시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동법 165조의17 1항·3항)에 해당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시규정에 열거되어 있던 동일한 공시의무를 삭제
  -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융위(DART)로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KIND)로 자동전송되어 시장에 공표토록 하여 중복 공시제출의무 경감

□ 현금배당 결정시 시가배당률 산식 반영

(6조 1항 2호 마목 : 2009/7/1 개정, 7/6 시행)

-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배당신고는 세척이 정하는 시가배당률에 의하도록 명확화
  - \* 시가배당률 :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

□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 정지

(37조 4항 : 2009/10/21 개정)

- 주권에 적용되는 품문 등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재개의 기준 및 절차를 신주인수권증권·증서에도 그대로 준용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도록 함
  - 품문 등과 관련하여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때,
- 사업보고서등 신고서 제출기간을 위반한 때,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의무사항

(9조의2 1항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SPAC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장법인과 동일한 공시관리 방법·절차 등을 적용하되, 일반상장법인과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특성 등을 반영하여 고유한 공시의무사항을 규정함
  - 정관 변경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 임원 선임·해임 결의(당일공시) 및 임원의 사임(익일공시) 등 경영진 변동 사실
  -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예치(신탁) 계약내용 및 예치(신탁)비율의 변경(익일공시)
  -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의 인출사실이 발생한 때(당일공시)

□ SPAC의 합병 이사회 결의 관련 공시의무 신설

(9조의2 2항 1호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합병 이사회 결의 공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합병 대상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음을 투자자에게 당일공시하도록 함
  -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된 금액의 80%미만
  - 관리종목 지정
  -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으로서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신설합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 SPAC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 관련 공시의무 신설

(9조의2 2항 2호 : 2009/12/18 개정, 12/21 시행)

— 합병 주주총회 결의 공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투자자에게 당일공시하도록 함

- 합병 후 일정기간 공모전 주주등의 매각제한 사실
-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여부
- 합병 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행사 여부
- 합병 대상법인이 부적격법인과의 합병제한 요건 해당 여부

## 12.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 수시공시 항목의 합리적 개선 및 자율공시 확대

(14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의무공시를 자율공시로 전환

-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 또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신산업 공시수요 반영

- 바이오산업의 경우 중요한 임상시험 단계별 진행사항
- 인터넷광고, 게임산업의 경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과금체계 변경

— 자율공시

-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결과 확정
- 공시의무사항에서 정하는 비율기준에 미달하는 사항

□ 공시위반 제재금 부과기준 등

(17조 1항~2항, 별표1 : 2009/2/3 개정, 2/4 시행)

- 공시규정에서 위임한 공시위반제재금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부과 방법, 납부기한을 정함
  - 관리종목지정법인 또는 별점 이외에 제재금 추가 납부를 통한 제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추가 부과 대상으로, 별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부과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대체부과 대상으로 함
  - 부과방법 :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통지서” 통보
  - 납부기한 : 제재금 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

□ 전문투자자 및 시설외 투자 범위

(3조, 6조 : 2009/2/3 개정, 2/4 시행)

- 전문투자자 범위
  -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및 그에 준하는 투자자
- 시설외 투자 범위
  - 게임·영화제작, 프로그램 개발 등 신규시설투자에 준하는 투자

□ 매매거래정지제도 개선 (18조 : 2009/2/3 개정, 3/2 시행)

- 중요내용공시 등 매매거래정지시간 단축(60분→30분)
- 중요도가 낮은 매매거래정지 항목 삭제
  -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로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확인된 경우
  - 최대주주 변경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및 탈퇴
  - 물적분할

□ 현금배당 신고의 기준이 되는 시가배당률 산식 마련

(6조의2 : 2009/7/3 개정, 7/6 시행)

— 시가배당률 = (주당배당금/과거 1주일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100

\* 과거 1주일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

주식배당 예고기한 계산방법 구체화

(23조 2항 : 2009/7/3 개정, 7/6 시행)

— “사업연도말 10일전까지”의 기간계산은 매매일이 아닌 역(calendar)에 의하여 계산함을 명확화

공시위반제재금 부과기준 명확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별표1 : 2009/9/25 개정, 9/28 시행)

— “관리종목지정법인(공시위반 제외)”은 공시위반제재금의 추가부가 대상이 아니라, 공시위원회에서 제재금 추가부과 결정시 판단요소로 고려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함

**공시위반제재금 및 대체부과제**

자본시장법의 시행(2009/2/4)으로 수시공시가 거래소로 일원화됨에 따라, 상장회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거래소가 별점 이외에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 상습적 위반 등 공시위반 유형별로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부과함. 한편, 코스닥시장에는 대체부과제도를 도입하여 별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하는 것이 공시위반행위의 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점을 제재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시위반제재금 대체부과 요청권 부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공시서식1 : 2009/9/25 개정, 9/28 시행)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법인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시, 원하는 경우에는 별점 대신 제재금을 부과받는 대체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공시위반제재금 절차를 개선함
  - “공시위반제재금 대체부과 요청 및 그 사유”를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18조 1항 9호 : 2009/12/21 개정 · 시행)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시규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관련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함
  - 합병 결정 이후 동 결정이 취소·부인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공시규정 9조의2 1항 4호) 또는,
  - 합병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행사 제한 등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공시규정 9조의2 2항 2호 나~라)

### 1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 통화선물거래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인하 (44조 : 2009/3/4 개정)

- 중소기업들이 통화선물거래를 환헤지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를 종래의 1/5로 인하
  - 5만 → 1만

□ 통화선물 결제월 수 확대 (45조 : 2009/3/4 개정)

- 통화선물의 거래기간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결제월 수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분기월 이외의 결제월의 거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도입 (75조, 75조의3 : 2009/3/4 개정)

- 외환 현물보유자들이 선물거래를 통하여 원활하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포지션을 조기에 인수도하는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 도입
  - 선물포지션을 보유한 당사자가 해당 포지션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그 기초자산의 조기 인수도를 조건으로 하는 비경쟁방식의 거래제도
- 선물거래는 협의대량거래제도와 유사한 “협의거래”로 거래를 체결
  - 다만, 원활한 기초자산의 조기 인수도를 위해 협의대량거래(최소 200계약)와 같은 최소 수량제한을 하지 않음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도입

(3조, 64조의2~5, 75조, 75조의4, 76조, 83조, 96조 등 : 2009/3/4 개정)

-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이 표준화된 미국달러선물거래와 별도로 거래당사자가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을 협의할 수 있는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도입
  - 기초자산, 거래단위, 거래수량단위, 1계약의 금액, 거래승수, 가격의 표시 등은 미국달러선물거래와 동일
  - 미국달러선물시장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미국달러플렉스선물시장도 거래를 중단
- 종목의 구분
  - 결제월로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협의한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으로 종목을 구분
- 최종거래일
  - 플렉스선물협의거래 신청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미국달러선물 연속 6개 결제월종목 중 마지막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까지의 거래일 중 매 거래일별로 선택
  - 다만, 미국달러선물 각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 및 전후 3거래일은 제외

— 최종결제

- 미국달러선물거래와 동일한 실패결제방식(최종결제일 : T+2일)과 주식상품과 같은 현금결제방식(최종결제일 : T+1일) 중 선택
-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협의거래 신청시간 종료 직전 30분간 (14:25~14:55)의 현물시장 거래량가중평균환율

— 거래체결방법

-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방법(플렉스협의거래)” 적용하여, 지정가호가에 의한 신청만 인정

— 당사자간 협의거래만 인정되므로 “시장조성상품 및 유동성관리상품” 대상에서 제외

□ 장개시 전 거래시간 신설 (4조 : 2009/3/18 개정, 3/23 시행)

- 정규거래시간(09:00~15:15)으로는 EUREX에 상장된 코스피200옵션 선물의 최종결제를 위한 코스피200옵션 인수도거래 수용이 곤란하여, 정규시장 개장 전에 인수도거래를 위한 “장개시전 거래시간” 신설
  -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 협의거래유형 추가 (75조 : 2009/3/4 개정)

- 코스피200옵션의 인수도거래를 협의거래로 체결할 수 있도록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협의거래의 유형에 추가
  - \* 협의거래 : 경쟁거래로 체결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 체결

□ 장개시전협의거래의 참가자 제한 등 (75조의5 : 2009/3/4 개정)

- 장개시전협의거래 참가자를 EUREX 코스피200옵션선물 최종결제수량 보유자로 제한

- 협의거래 신청은 장개시전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척에서 정하는 시간 동안에 당사자간 협의된 종목·수량으로 회원이 신청
  - 신청시간은 7시 30분부터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증거금 부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장 가능
  - 신청가격은 당일 해당 옵션종목의 기준가격(전일종가)

□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시간 신설

(4조의2 1항·3항 : 2009/9/23 개정, 11/16 시행)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코스피200선물 글로벌거래)**

해외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CME)와의 협약을 통해 정규거래가 종료한 후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지는 코스피200선물의 연계거래를 말함.

거래에 대한 매매체결(matching) 및 호가접수 서비스는 CME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전자거래시스템인 Globex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의 법률 및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이므로 한국거래소가 거래제도, 청산·결제 및 시장운영을 담당함

- 정규거래 종료 후 야간시간에도 CME의 Globex를 통해 코스피200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거래시간(이하 글로벌거래)을 신설함
  - 정규거래시간 종료 후 청산·결제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익일 정규거래의 준비시간을 감안하여, 1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를 글로벌거래시간으로 정함
  - 정규거래시간은 9시부터 15시15분까지로 종래와 동일함
- 거래소는 정규거래시간이 변경되거나 거래시스템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글로벌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글로벌거래 제도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 마련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3편 2장의2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제도는 정규시장의 코스피200선물 거래제도와 대부분 동일하나, 현물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 및 CME Globex에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일부 제도는 정규거래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가격제한폭, 호가한도수량, 거래체결 방식 등에 관한 사항

— 글로벌거래의 호가 및 거래체결 제도를 정규거래와 구분한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여 투자자의 글로벌거래제도에 대한 이해편의를 제고함

- “제3편 거래의 체결”에 “제2장의2 글로벌거래의 특례” 신설

□ 글로벌거래 휴장일 (4조의2 2항, 5조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휴장일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글로벌거래 시간이 속하는 2일 중 거래시간 개시 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휴장일을 적용함

- 글로벌거래의 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및 거래시스템 운영 정지 등으로 CME가 휴장할 경우에는 글로벌거래를 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의 임의적 중단 및 정지

(82조의9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거래소시스템 또는 회원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정규거래의 필요적중단제도(Circuit Breakers)는 도입하지 않음
- 거래의 중단·정지 후 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함

□ 글로벌거래 호가접수시간 (82조의4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호가는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간부터 종료 전까지 접수하며, 해당 글로벌거래의 종료 때까지 효력을 지속함

□ 호가의 취소 및 정정방법의 개선

(82조의5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외국인 투자자의 글로벌거래 참여에 따른 거래편의를 위하여 호가의 취소 및 정정방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 호가수량의 일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수량 전부취소만 가능하나, 이미 제출한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으로 정정하는 수량정정은 가능
  - 일부수량에 대한 가격정정도 불가능하며, 전체수량의 가격 정정만 가능
  -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호가수량 및 가격을 동시에 정정할 수 있는 가격수량정정을 신설

<호가의 취소·정정방법 비교>

구 분		정규거래	글로벌거래
취소	전부수량	가능	가능
	일부수량	가능	불가
정정	전체수량 가격정정	가능	가능
	일부수량 가격정정	가능 (잔량 우선권 유지)	불가
	수량정정 (수량증가 포함)	없음	가능
	가격수량정정	없음	가능

□ 글로벌거래의 호가한도수량 및 가격제한폭

(82조의6~7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 호가한도수량을 1호가당 100계약으로 정함
  - 글로벌거래의 안정적인 시장운영 및 회원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규시장(1호가당 1,000계약)의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할 것임

- 글로벌거래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상하 5%로 함
    - 다음날 정규거래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야간시간대 거래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10%)보다 축소
  -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다음 거래일의 정규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함
    - 정규거래의 기준가격은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주로 종가)이므로, T일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T일 정규거래의 종가가 됨
- 글로벌거래의 거래체결방법 (82조의8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거래체결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접속거래)의 방법에 의함
    - 정규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단일가거래)는 도입하지 않음
    - 거래중단 후에도 접속거래로 거래를 재개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세칙에서 정함
- 우선호가수량 공표 (82조의11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는 호가한 수량이 있는 가격대(호가잔량)별 연속 5개의 우선호가 가격 및 수량을 공표
    - 정규거래의 경우 호가가격단위(tick)로 연속 5개의 우선가격(호가수량 존재 여부 불문)을 공표
  - 호가잔량 기준으로 우선호가를 공표하므로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 수량은 공표하지 않음
- 과다호가의 접수 제한 (156조의2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과도한 호가제출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소가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호가접수 처리를 위한 접속회선 별로 일정한 기준 초과시 호가접수를 제한하며, 세부기준은 세칙에서 정함
- 접속회선은 회원별로 다수가 배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다호가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접속회선만 호가접수를 거부함

#### □ 글로벌거래 체결분의 결제

(88조, 96조~98조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에서 체결된 거래는 단독으로 일일정산하거나 청산·결제를 하지 않고, 직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합산 결제함
  - 글로벌거래 종료 후에 별도의 결제 및 거래증거금 확인 등의 결제업무 처리는 없음
  - 글로벌거래에 대한 일일정산(당일차금 및 갱신차금)은 익일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실시하며, 정산가격은 정규거래의 정산가격을 사용
  -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의 충족 확인은 정규거래 종료 시점에 1일 1회만 실시하며, 글로벌거래 종료 후에는 확인하지 않음

#### □ 글로벌거래의 수탁제도

(114조의2, 134조~136조, 137조, 140조 : 2009/9/23 개정, 11/16 시행)

- 위탁자가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위탁자와 증권·선물사는 계좌개설과 별도로 글로벌거래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글로벌거래 참여 계약은 참가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서면 이외에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도 계약체결을 허용함
- 글로벌거래의 사전위탁증거금과 관련하여 위탁자에 대한 위탁증거금의 산출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주문시마다 산출하여 적용함
  - 위탁증거금률, 계약당증거금률 등은 정규거래와 동일

- 사후위탁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의 산출은 매일 정규거래 종료 후 1회 실시하며, 글로벌거래 종료 후 별도로 위탁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가 야간거래 시간대에 이루어지므로 위탁자가 파생상품 계좌에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등의 인출을 제한함
    - 세부적인 제한 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회원과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간 연결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 제정 근거 마련 (160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회원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방법 등을 거래소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연결기준 제정·변경시 거래소의 회원 통지 의무
    - 회원의 기준 준수 의무 명시
- 채무인수할 거래의 확인 절차 신설
- (93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청산결제 업무절차의 명확화를 위해 거래의 성립 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기에 앞서 거래소가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거래를 확인하도록 함
    - 착오거래의 정정 등으로 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거래를 확인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2조의2)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28조의2)과의 일치 도모
- 결제내역의 회원통지 절차 신설
- (103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확정된 결제내역(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내역)을 거래소과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과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과생상품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회원의 결제 준비 시간 확보를 용이케 하고 관련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과의 일치 도모

□ 차감결제현금 등의 수수방법 개선

(104조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를 일반적인 결제절차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납부회원이 거래소에 차감결제현금 등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에 거래소가 수령회원에게 지급·인도하는 방식으로 변경

□ 결제지시 절차 명시 (105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령회원에 대한 지급·인도를 위해 결제은행 등에 대한 거래소의 결제지시 절차를 규정함
  - 결제지시의 대상은 차감결제현금의 경우 결제은행,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경우 세척이 정하는 자로 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2·6),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의2·6)과의 일치 도모

□ 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제도 신설

(105조 : 2009/12/29 개정, 2010/2/1 시행)

- 결제회원이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소가 결제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함
  - 차감결제현금에 대한 결제이행 보증함으로써 수령회원의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고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

-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등은 세칙에서 정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4),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의4)과의 일치 도모

□ 차감결제현금에 대한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신설

(105조의3 : 2009/12/29 개정, 2010/2/1 시행)

-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도록 하는 결제지연 예방 장치를 마련함
  - 다만,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은행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유동성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은 세칙에서 정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9),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의9)과의 일치 도모

□ 거래소의 결제위험 파악·관리제도 신설

(104조의2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대처를 위해 결제회원은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도록 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5조의3),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1조의3)과의 일치 도모

□ 결제불이행의 정의 명확화 (107조 2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결제불이행)”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함
  -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6조 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2조 2항)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결제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

□ 결제불이행시 거래정지 조치 범위의 명확화

(107조 1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불이행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 외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결제불이행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래정지시 거래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미결제약정을 증가시키는 거래 등 일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76조 1항 2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33조 1항 2호)과의 일치를 도모하고 결제불이행에 대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결제불이행시 지급정지 조치 범위 명확화

(107조 1항 2호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지급정지 대상에 “거래증거금 그 밖에 당해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을 추가하여 거래소와 거래정지회원 간 채권채무관계의 형평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

□ 결제불이행시 지급정지 차감결제현금 등의 사용

(107조 3항~4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지급정지 회원은 장래 수령할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과의 상계를 통해 일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의제
- 지급정지한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지급정지된 금전에 의한 차감결제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결제불이행시 관련 조치시 해당 결제회원에 대한 통지

(107조 5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결제불이행 관련 조치시 위탁자보호를 위해 해당 결제회원은 조치 내용 및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거래정지회원의 자발적 미결제약정 해소절차의 신설

(109조 1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거래정지회원이 자발적으로 미결제약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미결제약정의 정리 :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매수,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
  - 다른 결제회원으로서의 미결제약정의 인계

□ 거래소의 미결제약정 강제해소

(109조 2항~6항 : 2009/12/29 개정, 12/31 시행)

- 자발적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거래소가 정한 기간 이내에 거래정지회원이 자발적으로 미결제약정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강제적으로 해소하도록 함

- 거래정지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미결제약정인 경우에는 거래소가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정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소
  - 거래정지회원의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인 경우에는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정리”하게 하거나 다른 결제회원에게 “인계”시키는 방법으로 해소
- 거래소가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강제적으로 미결제약정을 정리하는 경우 당해 다른 결제회원과 거래정지회원간에 위임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
  - 거래정지회원은 위탁자 미결제약정의 해소와 관련한 조치내용 등을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함

## 14.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 계좌번호 체계 및 자리수 변경

(48조, 114조 : 2009/3/18 개정, 3/23 시행)

- 회원영업소번호와 투자자번호로 구분되던 “파생상품계좌번호”의 체계를 “회원영업소번호”와 “투자자계좌번호”로 분리
  - 계좌번호는 회원이 열두자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회원영업소번호(3자리→5자리)는 별도로 입력

### □ 회원 착오거래정정 신청방법 다양화

(77조 : 2009/3/18 개정, 3/23 시행)

- 착오거래 신청방법을 기존의 신청서 제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통한 제출 이외에 회원파생상품시스템으로 직접 거래소시스템에 제출하는 방법을 추가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신고방법 변경

(93조 : 2009/3/18 개정, 3/23 시행)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신고방법을 기존의 회원과생상품단말기에서 회원과생상품시스템을 통한 제출로 변경

□ 통화선물스프레드거래 종목 수 확대

(46조 : 2009/4/6 개정, 4/27 시행)

- 통화선물의 결제월수 확대(6개→8개)에 따라 통화선물스프레드거래 종목 수를 확대
  - 5개 → 7개

□ 거래승수 인하 관련사항 조정

(70조, 99조, 별표18 : 2009/4/6 개정, 4/27 시행)

- 통화선물 거래승수 인하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정한 협의대량거래 최소·최대수량을 그에 상응하게 조정
  - 협의대량거래의 규모를 최소 1천만달러·최대 1억 5천만달러(미국달러 기준, 기존 수량의 5배)가 되도록 최소·최대수량을 조정
    - \* 최소수량: 200계약 → 1,000계약
    - \* 최대수량: 3,000계약 → 15,000계약
- 매도옵션에 대한 거래증거금 산출시 적용되는 선물·옵션승수배율 변경
  - 미국달러선물·옵션간 거래승수 차이(선물 5만, 옵션 1만)를 감안하여 5배로 하고 있는 미국달러선물·옵션승수배율을 동일하게 1배로 변경
    - \* 선물·옵션승수배율 : 매도옵션에 적용되는 조정옵션거래증거금 관련 선물·옵션미결제약정을 감안 순매도옵션미결제약정을 산출하기 위한 선물·옵션간 상쇄 비율
- 통화선물 증거금산출 변수 중 1계약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변수에 대하여는 1/5로 축소

구 분		기 존	개 정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증거금액	거래	30만원	6만원
	위탁	50만원	10만원
	유지위탁	30만원	6만원
계약당선물스프레드 주문위탁증거금액		50만원	10만원
계약당최소증거금(거래/위탁)		5만원	1만원

□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  
(67조의2, 72조의2~4, 77조, 118조 : 2009/8/21 개정, 8/31 시행)

— 신청수량

- 신청수량은 협의대량거래와 동일하게 15,000계약을 한도로 하였으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대량거래와 달리 최소 수량제한은 두지 않음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Exchange of futures for physical)란?**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란 양 거래 당사자가 선물계약과 이에 상응하는 현물을 동시에 맞교환하는 거래로서 선물 매수자는 현물 매도자가 되고, 선물 매도자는 현물 매수자가 됨.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는 선물계약 당사자인 외환의 실수요자들이 만기 전이라도 선물계약을 만기 전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을 제공함

— 신청내용 및 방법

- 회원이 거래상대방 회원과 협의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소 시스템에 신청
- 신청시 입력사항 : ①종목, ②선물가격, ③수량, ④계좌번호, ⑤매도/매수, ⑥상대회원 및 계좌번호, ⑦협의완료일 및 시각, ⑧현물가격(실물인수도가격), ⑨기타
- 양 당사자간 협의완료 후 10분 이내에 거래소에 신청하며, 회원은 EFP주문 수량이 고객의 보유미결제약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당일 중 형성된 현물환율(실물인수도가격)이 없는 경우 신청 거부

- 실물인수도가격(환율) :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제공하는 환율로서 협의 완료시각 직전 현물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

— 취소·정정 및 착오거래정정 제한

- 회원이 EFP거래를 신청한 이후에는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 거래체결 즉시 인수도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착오거래의 정정 대상에서 제외

— 실물인수도 및 대금의 수수

- 회원이 EFP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고 거래가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지체없이 실물인수도 이행하고, 실물인수도는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미국달러와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실시
- 위탁자는 EFP거래 신청 전에 회원에게 해당 기초자산(미국달러) 또는 현금을 예탁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47조의2~3, 55조, 72조의5~7, 168조의2 : 2009/8/21 개정, 8/31 시행)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FLEX, Flex Exchange)란?**

미국달러선물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및 결제 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을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거래제도를 말함. 거래소가 구축한 협의거래 상대방 탐색 시스템을 통해 조건이 맞는 상대방을 찾아 협의 후 성사되는 방식으로 거래되며, 동제도에 의해 현행 달러선물시장과 별도로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만기를 원하는 날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결제방식도 실물인수도방식과 현금결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거래일

- 당해 플렉스협의거래 신청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표준물 최원월 연속 6번째 결제월물 만기의 2거래일전 까지의 거래일 중 선택

- 다만, 표준물(미국달러선물) 각 결제월물 만기일 및 만기의 인접거래일 ( $\pm 1$ 거래일)은 제외

—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플렉스거래 신청시간 종료전 30분간(2시25분~2시55분) 서울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 현물시장의 거래량 가중평균 환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용
- 다만, 동 시간 중 체결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 신청시간 종료 직전 체결된 최종 5건에 대하여 거래량 가중평균을 적용하고, 당일 체결 건수가 5건 미만인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다음날 지정·고시되는 매매기준을 사용

— 기준가격

-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기준가격은 항상 선물이론가격을 사용

— 신청기간

- 최종거래일 및 평일 모두 9시10분~14시55분 중 표준종목의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
-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11시20분~11시30분)은 거래 가능

— 가격범위 및 신청수량

- 신청가격범위 : 플렉스협의거래기준가격 $\pm$ (플렉스협의거래기준가격 $\times 1.0\%$ )  
\* 플렉스협의거래기준가격 : 표준물기준종목의 협의완료 직전 약정가격 + (당해 플렉스종목의 전일 정산가격 - 기준종목의 전일 정산가격)
- 신청수량 : 10계약 이상 ~ 1,000계약 이하

— 미결제약정의 인수에 대한 특례

- 거래상대방 미확보 등으로 반대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사가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자기거래로 인수
- 추가증거금예탁 불이행 또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한 날에 당해 반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원의 자기거래인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위탁자로부터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거래일부터는 일정한 가격으로 회원이 자기거래로 인수 가능

- 파생상품시장 호가제도개선 (50조, 54조 : 2009/8/21 개정, 8/31 시행)
  - 상·하한가 조건부지정호가 입력 제한
  - 지정호가에 한하여 허용되는 호가의 조건(일부충족조건·전량충족조건)을 시장가·최유리지정가에도 확대 허용
  - 최유리지정가간 또는 지정가와 최유리지정가간의 호가정정이 가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가정정을 거부
  
- 파생상품시장 장 종료 후 업무처리시한 단축  
(23조, 26조, 38조, 77조, 106조, 153조, 157조 : 2009/8/21 개정, 8/31 시행)
  - 실물인수도 선물상품(통화선물, 10년국채선물, 금선물)의 최종결제수량 신고 폐지
  - 10년국채선물 및 금선물의 신고시한을 장종료 후 1시간 이내에서 30분 이내로 단축
    - 통화선물의 신고시한 폐지
  - 착오거래정정 신고시한 및 권리행사 신고시한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
  
- 글로벌거래 호가입력내용 (79조의2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호가입력내용은 정규시장의 호가입력내용(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48조~49조)과 동일함
    - 다만, 호가의 입력내용 중에서 국적의 구분, 투자자의 구분, 대용주권 계좌번호 등 투자자정보에 관한 사항은 호가를 입력할 때마다 제출하지 않고 글로벌거래의 전까지 거래소에 일괄하여 제출 가능
  - 호가를 제출한 때 호가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의제함

□ 글로벌거래 호가입력의 제한 (79조의3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에서는 지정가호가의 입력만 가능
  - 시장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및 최유리지정가호가 입력 제한
  - 시장조성계좌, 옵션매수전용계좌 및 거래증거금할인계좌에서의 호가 입력 금지
  - 일부충족조건 또는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조건부여정정호가의 입력 금지

□ 글로벌거래 호가접수시간 (79조의4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호가접수시간은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간부터 종료 전까지로 함
  - 18시부터 익일 5시까지(한국시간)
-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하여 호가를 접수함
  - 다만,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 거래소 착오거래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호가를 접수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 호가의 정정 (79조의5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 호가는 수량의 일부취소가 불가능하며 수량의 전부취소만 가능함
  - 정규거래의 경우 수량전부취소 뿐만 아니라 호가수량 일부취소(잔량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도 가능
- 글로벌거래 호가는 전체수량에 대한 가격정정만 허용하며, 일부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은 허용하지 않음
  - 정규거래는 전체수량에 대한 가격정정뿐만 아니라 일부수량에 대한 가격정정(잔량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도 가능
-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호가의 수량과 가격을 동시에 정정할 수 있는 “가격수량정정”을 신설함
  - 가격정정과 동시에 수량정정이 가능하며 가격정정 없이 수량정정만 하는 것도 가능

- 호가의 가격변동 없이 수량만 감소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시간우 선순위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함
- 호가의 수량정정시에는 반드시 체결포함기준 또는 호가잔량기준 중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여야 하며, 기준 선택 이후에는 이에 대한 변경 불가능함
  - 호가잔량기준 : 거래가 체결된 수량에 관계없이 정정 후 체결되기를 바라는 총 호가수량을 제출하는 것
  - 체결포함기준 : 거래가 체결된 수량을 포함하여 정정 후 체결되기를 바라는 총 호가수량을 제출하는 것

□ 글로벌거래 호가의 가격제한 및 호가한도수량

(79조의6~7, 별표14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다음 거래일의 정규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함
  - 정규거래의 기준가격은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주로 종가)이므로, T일 글로벌거래의 기준가격은 T일 정규거래의 종가가 됨
- 글로벌거래의 상하한가의 가격제한폭은 정규거래(10%)보다 축소하여 기준가격의 상하 5%로 함
  - 상한가 및 하한가 : 기준가격  $\pm$  가격제한폭(5%)
- 글로벌거래 호가한도수량을 1호가당 100계약으로 정함
  - 글로벌거래의 안정적인 시장운영 및 회원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규시장(1호가당 1,000계약)의 10분의1 수준으로 축소

□ 거래중단 후 재개하는 경우 취소호가 제출시간 부여

(79조의8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거래소·회원시스템 장애등으로 거래가 임의적으로 중단된 후 재개하는 경우에는 취소호가에 한하여 호가를 접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함

- 글로벌거래는 정규거래와 달리 거래중단 후 재개 시에도 접속거래(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방식에 의하며, 단일거래는 도입하지 않음

### **접속거래(Continuous Auction)**

단일가거래방식이 적용되는 시점 이외의 시간 동안에 거래체결 조건이 맞는 호가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시간우선 및 가격우선(저가 매도호가 우선, 고가 매수호가 우선)의 원칙에 따라 즉시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을 말함. 매매거래시간 중에 계속적으로 복수의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라고도 함

### **단일가거래(Periodic Call Auction)**

매매거래 전 비거래 시간이 존재하거나, 시장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일정시간 동안 접수한 호가를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시키는 방법으로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시키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가격을 도출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됨. 주로 시가 또는 종가 등을 결정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 시장의 정지 또는 중단 후 재개시 최초의 가격, 정리매매종목의 경우에 이용됨

#### 글로벌거래 착오거래 정정 신청

(79조의9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와 관련한 착오거래의 정정신청은 다음 거래일의 장 종료 후 30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 선물거래 정산가격 결정시 글로벌거래 제외

(103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선물거래의 정산가격 결정시 글로벌거래의 약정가격은 감안하지 않음
  - 글로벌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이론정산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함

□ 글로벌거래 참여계약 미체결 위탁자에 대한 수탁 거부

(119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은 위탁자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를 위탁받을 경우 글로벌거래에서는 이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도록 함
  - 정규거래시에는 이에 대한 수탁을 허용함

□ 글로벌거래의 대용가격 임의산출

(126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당일 장종료 후 거래소가 대용가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회원이 자체적으로 당일 종가를 이용하여 대용가격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당일체결순손실상당액에 글로벌거래 체결분을 포함

(137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당일체결순손실금액 적용범위를 “직전 거래일의 글로벌거래 개시 시간부터 당일의 장종료 때까지”로 설정함으로써 당일선물순손실금액 산출시에 직전 거래일의 글로벌 거래분을 포함시킴

□ 위탁자의 예탁불이행시 글로벌거래시간 중 반대거래 제한

(152조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회원은 추가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를 정규거래시간 중에만 실시하고 글로벌거래시간 중에는 금지함

□ 글로벌거래의 과다호가 접수제한

(164조의2 : 2009/10/26 개정, 11/16 시행)

— 글로벌거래의 경우 호가접수 처리를 위한 접속회선 별로 일정한 기준을 초과시 거래소가 호가접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동 기준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해제하도록 함

- 3초간 초당 평균 750건 초과할 경우 : 취소호가만 접수

(신규·정정호가의 접수 거부)

- 3초간 초당 평균 1,000건 초과할 경우 : 모든 호가의 접수 제한

□ 10년국채선물,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의 차감결제기초자산 등의 수수절차 개선 (25조, 28조, 41조 : 2009/12/30 개정, 12/31 시행)

— 10년국채선물,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의 최종결제시 납부회원이 거래소에 차감결제기초자산 및 차감결제대금 등을 거래소에 납부하고 그 이후에 거래소가 수령회원에게 결제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차감결제기초자산 인도 결제지시의 대상

(112조의3 : 2009/12/30 개정, 12/31 시행)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105조의2)에서 거래소의 결제지시 절차를 규정하여 세칙에 위임하고 있는 결제지시의 대상을 정함

- 통화선물거래 및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 결제은행
-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경우 : 한국예탁결제원
- 금선물거래의 경우 : 창고업자

□ 유동성공급을 위한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112조의2 : 2009/12/30 개정, 2010/2/1 시행)

- 결제이행보증을 위해 유동성공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업무규정(105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공동기금, 회원보증금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제이행재원
  - 유동성공급을 위한 결제이행재원은 환금성, 신속성 또는 결제이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함

□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

(112조의4 : 2009/12/30 개정, 2010/2/1 시행)

- 파생상품 업무규정(105조의3)에서 위임에 따라 결제지연손해금 산출방법을 정함
  - 결제지연손해금 = 손해율(1만분의 2) × 결제지연대금(결제시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차감결제현금)
- 결제지연손해금을 납부기간(3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 결제지연손해금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결제지연손해금에 가산하도록 함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만분의 6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후에 납부하는 경우 : 1만분의 8

□ 결제불이행시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 정리

(112조의6 : 2009/12/30 개정, 12/31 시행)

- 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을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정리회원)으로 하여금 거래정지회원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정리회원 자신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거래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게 할 수 있음

## 15. 선물시장 업무규정

-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규정체계 변경 (2009/1/14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393조)에서 거래·결제·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모두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기존 「선물시장 업무규정」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 동 업무규정에 수탁편을 포함하고, 기존 「수탁계약준칙」은 폐지
  
- 기본예탁금제도 전 상품 적용  
(124조, 127조 : 2009/1/14 개정, 4/27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국채, 통화, 일반상품 파생상품시장에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예탁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국채등 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국채상품, 통화상품 및 금선물에 기본예탁금 징수
  
- 거래증거금 구분 보관 명확화 (92조 : 2009/1/14 개정, 2/4 시행)
  - 회원으로부터 예치받은 거래증거금은 거래소 재산과 구분 보관

## 16.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규정체계 변경 (2009/1/20 개정, 2/4 시행)
  - 거래·결제·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모두 정함에 따라, 기존 「선물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명칭을 변경

- 동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수탁편을 포함하여 개정하고, 기존 「수탁계약준칙 시행세칙」은 폐지

□ 현금위탁증거금 제도의 전상품 적용

(145조, 148조, 부칙 3조 : 2009/1/20 개정, 4/27 시행)

- 금융시장 급변시 단기자금 경색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방지, 증권회사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개인투자자 증가 대비를 위하여 주식상품에 적용되는 현금위탁증거금제도를 전 상품에 적용하되,
- 기존투자자의 자금부담 최소화 및 회원사시스템 변경 소요시간 확보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
  - 단계적 적용 대상은 금리·통화·일반상품만 거래하는 계좌(주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계좌 및 신규상품 제외)에 한정
  - 단계적 적용 대상 현금위탁증거금은 선물거래의 신규주문현금위탁증거금액 및 전일기준순위험현금위탁증거금액 산출시의 현금비율로 한정

□ 통화상품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 변경

(56조, 58조~59조, 97조, 133조, 150조, 별표14·18 : 2009/1/20 개정, 2/4 시행)

- 환율변동성 증대 및 선물시장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통화상품의 가격제한폭 및 증거금률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

□ 적격기관투자자 범위 조정 (132조 : 2009/1/20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상 전문투자자 중 적격기관투자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추가 편입
  - 국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및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기관에 포함된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집합투자기구 형태 중 자본시장통합법상 추가된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 국내 적격기관투자자에 준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
- 다만, 파생상품시장의 고위험성 및 일반투자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문투자자 중 일부는 적격기관투자자에서 제외
- 주권상장법인, 금융위원회에 전문투자자로 신고한 법인·개인,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투자자문업자

□ 호가한도수량 회원 변경시 보고제도 폐지

(61조 : 2009/1/20 개정, 2/4 시행)

- 거래소가 정한 호가한도수량(선물 1,000계약, 옵션 5,000계약) 이내에서 회원이 낮은 수량으로 정하는 경우의 거래소 보고의무제도 폐지

□ 위탁·결제불이행시 반대거래 호가가격 명확화

(152조 : 2009/4/27 시행 : 2009/1/20 개정, 2/4 시행)

- 위탁자의 추가예탁금 미납 또는 결제불이행시 회원이 위탁자의 포지션을 강제반대거래 함에 있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의 호가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

## 17. 시장감시규정

□ 회원감리 개념 및 관련 조항 정비

(2조 5항, 11조 1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회원감리 개념을 자본시장법에 맞춰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위반여부 확인”으로 한정하고,

- 시장감시 업무내용을 이상거래혐의종목 선정과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의 위반 우려가 있는 거래의 선정으로 구분·명확화함
  
- 연계거래 개념을 구체화 (2조 9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가격 연동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증권의 종목 간,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 또는 증권의 종목과 장내파생상품의 종목간을 연계하는 거래
  
- 투자주의종목 지정대상 증권의 범위 및 감리의 종류별 구체적 실시내용 (5조 3항, 16조 3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투자주의종목의 지정대상 증권의 범위를 세칙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정기 및 수시감리의 구체적 실시내용을 세칙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회원의 일임매매·일임선물거래 결과보고 폐지  
(7조 3항 : 2009/1/28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법에서 일임매매거래 및 일임선물거래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일임매매 관련 사항을 투자일임업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보고제도를 폐지

## 18.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 실효성 제고  
(2조의2 : 2009/2/3 개정, 2/16 시행)
  - 종래 거래소 내부지침 및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예방조치요구와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 조치대상 선정 및 조치방법 등을 세칙에 명시

- 회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준법감시인협의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회원의 업무 편의성 도모 (19조 2항 2호 : 2009/2/3 개정, 2/4 시행)

- 위원회가 회원에게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회원의 처리기한을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

□ 미결제약정수량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

(23조 1항 4호의2, 별표 2 : 2009/3/27 개정, 4/1 시행)

-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미결제약정수량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약식제재금을 부과
  - 약식제재금의 부과에 불구하고 고의적·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수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정식 제재조치

□ 투자주의종목 지정시 주가방향성 반영

(3조 2항~3항, 4항 3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종래에는 소수 계좌로 매수나 매도가 몰리는 경우 주가 등락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 투자주의종목 중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집중종목, 단일계좌집중종목(단일계좌거래량 상위종목)”의 지정시 주가방향성을 반영하여 지정하도록 함
  - 주가 상승시에는 매수부분(매수 관여일, 매수 관여율)을 고려함
  - 주가 하락시에는 매도부분(매도 관여일, 매도 관여율)을 고려함
  -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의 경우 모두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일 때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함

□ 투자주의종목 중 증가급변종목 지정시 유동성요건 강화

(3조 4항 1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종래에는 증가 직전 대비 5% 이상 변동할 때 투자주의종목 중 증가급변종목으로 지정하였으나, “당일 거래량 30,000주 이상일 것”이라는 유동성 요건을 추가함

□ 투자경고종목 지정요건의 완화

(3조의3 1항 1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신규상장종목 및 감자 후 재상장종목의 단기급등시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일로부터의 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라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상장 또는 매매거래 재개일을 포함한 날부터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2일간 연속되는 종목
  - 이 경우 2일째 되는 날의 주가가 최근 20일(또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기간) 중 최고가
  - 또한 2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 종합지가지수 상승률의 6배 이상이어야 함

□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주의종목 유형 확대

(3조의3 1항 3호, 2항 3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종래에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사유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또는 소수계좌거래집중”의 사유로 20일의 기간동안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반복 지정된 경우에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였으나, 종목간의 단계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이 되는 투자주의종목 유형을 확대함
- 투자주의종목 중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동 규정 3조의3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동 규정 3조의3 5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5회 이상 반복하여 투자주의종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증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동 규정 3조 1항~4항) 중 하나에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해당하고,
- 반복 지정된 20일의 기간동안 주가상승률이 100%이상인 경우가 2일간 연속되어야 함

— 5회 이상 반복 지정되는 20일의 기간동안 2일 연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함

— 다만,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을 제외하고는 동 규정 시행(2009/12/14) 후부터 지정되는 투자주의종목부터 적용함

□ 거래 정지 후 매매거래 재개시 투자경고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 해당 대상 확대 (3조의3 3항 3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30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재개된 종목”의 경우에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날부터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이나 지정예고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종래에는 “시가기준종목의 적용을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경우에 한해서 매매거래 재개시부터 투자경고종목 지정 또는 지정예고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음

□ 투자위험종목 지정 대상을 투자경고종목에 한정

(3조의4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예고 대상을 투자경고종목에 한정함으로써 위험정도에 따라 시장경보제도가 단계적으로 발동되도록 함

- 종래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이 해제된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을 투자위험종목 지정 및 지정예고 대상으로 하였으나,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에서 “투자경고종목”으로 투자위험종목 지정 대상을 변경

□ 약식제재금 부과 관련 감면 사유 명확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회원의 귀책사유 없는 신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하는 약식제재금 감면에 있어 해당 요건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서 "자기주식매매 신고의무" 위반행위로 명확히 함

## 19. 시장감시위원회 운영규정

□ 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 (3조 : 2009/1/5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통합법상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에 제도개선 사항 반영
  - 한국증권업협회, 선물협회가 각각 추천하는 1인 →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2인
  -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인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 위원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서 명시

(4조 2항 : 2009/1/5 개정, 2/4 시행)

- 위원장 유고시 1)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자, 2)금융투자협회 추천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 추천기관별 추천자가 복수(2인)임에 따라 추천기관이 동일한 때에는 1)선임일자, 2)선임일자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 대행

## 20. 유가증권시장 공정공시 운영기준

- 공정공시 신고시한의 변경 (7조 6항 : 2009/2/3 개정, 2/4 시행)
  - 매매거래 개시전 간담회 등의 개최시 제공되는 공정공시정보의 제출시한 변경
    - 당일 오전 7시 20분까지 → 당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는 경우 정규시장 매매개시 30분전까지)
  - 전자공시시스템 접수마감 후 발생하는 공정공시 제출시한 변경
    - 그 다음 개장초일 오전 7시 20분까지 → 그 다음 개장초일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열리지 않는 경우 정규시장 매매개시 30분전까지)

## 21. 회원관리규정

- 회원자격의 정의 변경 (4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금융투자업 진입규제가 금융기관별 인가체제에서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거래소 회원의 자격을 변경
    -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유가증권매매업, 위탁매매) 또는 선물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
- 회원의 종류 다양화 (3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자본시장법상 세분화된 상품별 인가단위인 특정상품에 참가하는 전문회원을 신설
    - 지분증권전문회원, 채무증권전문회원,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등

□ 회원의 재무요건 일부 변경 (7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결제회원 가입시 재무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본금" 기준에서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
  - 종전의 결제회원 재무요건 중 자기자본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말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적용

□ 회원의 가입 및 전환의 구분 명확화

(5조 6항, 16조 : 2009/1/28 개정, 2/4 시행)

- 회원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회원의 업무단위 추가 및 제외에 대하여 처리구분을 명확히 하는 규정 마련
  -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회원이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회원이 증권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원가입”으로,
  -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회원간 또는 파생상품시장에 참가하는 회원간 변경은 “회원전환”으로 함

## IV. 금융투자협회 규정

### 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 □ 전문투자자 등록신청시 신분확인서류 확대

(2-12조 1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전문투자자 등록신청시에 개인(외국인 포함)의 경우 여권을,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를 신분확인서류로 추가 인정

#### □ 핵심설명서 교부대상 확대 (2-5조 3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위험도가 높고 구조가 복잡한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 DLS) 이외에, 고위험 거래인 신용융자거래시에도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 □ 광고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2-37조 3항, 2-40조 1항·4항, 2-42조 1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의무표시사항 기재 면제 광고 확대
  - 의무표시사항 기재가 곤란한 광고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휴대전화 및 라디오를 이용한 광고시에도 의무표시사항 기재를 면제하고,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의무표시사항 중 중요한 문구를 표기하도록 함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표시 제도 개선
  - 운용실적 광고시 운용실적 산정 기준일이 불명확하여 실적이 좋은 구간만을 선택적으로 광고하는 등 불공정 사례 발생함에 따라,
  - 집합투자기구(MMF 제외) 실적광고시 운용실적 산정 기준일을 “투자광고계획신고서 제출일 전 10영업일내의 특정일”로 하고, 반드시 1년 수익률을 표시하도록 함

— 협회 심사 면제 대상 확대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광고를 협회심사면제 대상에 포함

□ 재산상 이익 제공 전체 한도 기준 변경

(2-65조 4항 : 2009/2/26 개정, 3/9 시행)

- 재산상 이익 전체한도 기준을 “수수료 수익”에서 “영업수익”으로 변경

□ 파생상품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17조 : 2009/2/26 개정, 3/9 시행)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업무가 금지됨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범위에서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대행을 제외

□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계약규모 보고 근거 신설

(5-3조 1항, 6-8조 : 2009/3/17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투자일임업 이외에 투자자문 및 신탁업의 계약규모 보고의무를 부과

□ 겸영금융투자회사 등의 징계내역보고 범위 조정

(2-69조 : 2009/3/24 개정 · 시행)

- 겸영금융투자회사 등의 징계내역보고 범위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징계 등 전문인력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 한정

\* 겸영금융투자회사 등 : 겸영금융투자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 파생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2-4조 3항~4항, 별표3 : 2009/5/29 개정, 6/10 시행)

— 파생상품등 거래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이외에도 적정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적정성 원칙 :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투자자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자자에게 고지할 의무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의 “금융투자회사 면책조항”을 삭제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에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한 금융투자회사 면책 조항은 위험고지서의 내용으로 부적합하고 오히려 투자자보호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 장외파생상품 위험고지서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요소(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통화위험, 관리위험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2편 7장 : 2009/5/29 개정, 6/10 시행)

— 신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래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통합하여 마련

—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을 “신상품”으로 정의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금융투자상품
- 금융공학 등 신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금융투자상품
- 기존의 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 신상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요업무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임기 2년)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상품 심의를 위해 외부전문가(3인 이내)를 위촉

- 위원회의 심의사항
  - 배타적 사용권 부여대상 신상품 여부 및 부여기간
  -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관한 이의
  -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대한 침해배제
-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8영업일째 되는 날”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 발생
-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취득을 모든 금융투자회사에 서면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통지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공시체계 정비

(7-8조 1항 3호, 7-24조 1항·3항 : 2009/7/21 개정, 11/2 시행)

- 증권회사 보고방식에 의한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공시 조항 삭제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산정을 위한 수익률 보고증권사(10사)의 과중한 부담을 해소
- 채권평가회사(회원 3사) 제출정보에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추가
  - 기존에 제출하는 평가가격에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추가하고 제출시한을 당일 18시로 명시
-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이 시장 참고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시근거 신설

□ 투자광고 정의 명확화 (2-35조 : 2009/7/24 개정, 8/3 시행)

- 일정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투자광고로 정의
  - 광고매체의 종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매체에 준하여 나열
  - 단순한 정보제공 행위는 투자광고에서 제외

- 투자권유와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광고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로 한정

□ 약식광고 규제 폐지 (2-35조, 2-42조 : 2009/7/24 개정, 8/3 시행)

- 약식광고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내용이 없어 투자광고로 보기 곤란하므로 투자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약식광고에 대한 규제를 폐지
- 다만, 회사 이미지 광고는 현재와 같이 계속 심사하되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파급효과가 큰 경우만 협회가 심사
  - 그 밖의 회사 이미지 광고는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심사

□ 특약조건 표기의 적정성 심사 근거 마련

(2-38조 12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일정한 우대조건에 해당시 수익률 등을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 우대조건을 우대 수익률의 표시와 근접하여 표시하고 우대 수익률 글자크기의 2분의 1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함

□ 동일 형식의 반복광고 심사 절차 개선

(2-42조 1항 2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동일 형식으로 기초자산, 수익율 등만 변경하여 반복 사용하는 광고는 협회가 기본적 형식을 심사하되, 매 광고시 변경되는 부분은 준법감시인이 심사

□ 광고매체 단순 추가시 협회심사 면제

(2-42조 1항 1호 마목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로부터 적격통보를 받은 투자광고를 내용의 변경없이 다른 광고매체를 이용할 경우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단순 설명자료 등에 대한 협회심사 면제

(2-42조 1항 7호~9호 : 2009/7/24 개정, 8/3 시행)

- 설명회 참석자 대상의 상품설명자료, 단순한 상품목록, 금융투자회사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광고는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상품명칭 변경 시 협회심사 면제

(2-42조 1항 1호 바목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 심사필 광고를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상품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심사로 대체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펀드명이 변경되는 경우 등

□ 심사필 표시 개선 (2-47조 1항 : 2009/7/24 개정, 8/3 시행)

- 협회 심사필 광고의 부분변경 광고 및 동일 형식의 반복광고의 경우 협회 심사필을 표시하도록 함
  - 투자광고의 크기·색상·배열, 전화번호, 주소, 지점명, 판매회사, 수탁회사, 수익율, 기준일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진입규제 강화

(3-29조 : 2009/8/28 개정, 9/7 시행)

- 위탁증거금을 거래단위당 미화 2천 달러 이상으로 하던 것을 미화 5천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레버리지를 50배에서 20배로 축소함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자본시장법(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5조 3호~4호)에 의해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또는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로, 선물회사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하고 표준화된 계약단위, 소액의 증거금 등을 적용함으로써 통화매매를 통한 환차익과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차이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여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의미함. 자본시장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 위탁증거금은 거래대상 통화와 관계없이 정액(미화)으로 징수
- 종래에 위탁증거금의 2분의 1로 설정하고 있던 유지증거금을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미화 3천 달러(2천 달러에 상당하는 Buffer 인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다만, 투자자로 하여금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거나 예탁금 추가납부를 위한 기간 보장이 필요하므로, 동 규정은 2009년 10월 5일부터 시행함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복수 FDM 호가정보 제공 의무화

(3-30조 : 2009/8/28 개정, 2010/4/5 시행)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 Forex Dealer Member)이 제시하는 호가정보의 투명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복수 FDM의 호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 호가제공시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의 축소를 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하도록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함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부적합한 설명 및 교육 금지

(3-31조 : 2009/8/28 개정, 9/7 시행)

- 투자경험·지식·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매매거래기법 등의 설명이나 교육행위를 금지함

-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객에 대해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하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투자기법 등의 교육은 부적합 투자권유행위에 해당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설명의무 강화

(3-32조, 별표2-1 : 2009/8/28 개정, 9/7 시행)

-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와 관계없이 FX마진거래에 따른 투자위험, 투자 구조 및 성격 등을 고지하고 확인을 받도록 함
  - 자본시장법상 적정성원칙의 구체화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2-5조 3항 : 2009/8/28 개정, 10/5 시행)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 위험도 및 수익구조 등 해당 상품의 핵심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핵심설명서의 교부의무를 신설함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광고 심의기준 강화

(2-37조, 별표9 : 2009/8/28 개정, 9/7 시행)

- 인터넷 배너를 이용한 투자광고시 위험고지 화면을 5초 이상 정지토록 의무화함
- 유사통화선물거래의 고유 위험에 대한 사항을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광고 의무기재사항에 추가함
  - 원금초과손실 가능성, 유지증거금 미달시 미결제 약정 처리 방법 및 유사통화선물거래시 위탁수수료 이외 별도의 거래비용 발생 사실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임직원 등에 대한 사전 제공 금지

(2-28조 3항 : 2009/9/25개정, 10/1 시행)

- 회사는 공식적인 승인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조사분석결과를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토록 할 수 있으나,
  - 이러한 제3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와 무관한 임직원과 조사분석 대상법인을 제외함

□ 이해관계 고지대상 법인 확대

(2-29조 2항 : 2009/9/25개정, 10/1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업무 수행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고지의무를 부과함
  - 대상법인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 인수의 경우 해당 주식 가격변동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손익 변동 등
  - 고지 기간 : 모집주선 또는 인수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 경과 전

□ 애널리스트의 24시간 매매거래 제한의 예외 허용

(2-31조 3항 : 2009/9/25개정, 10/1 시행)

-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미미한 경우에는 애널리스트의 24시간 매매제한 및 7일 동일방향 매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고유계정에 적용되는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사항을 애널리스트의 자기계산 매매에 대해서도 적용함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제도 도입에 따른 광고규정 정비  
(2-42조 1항 : 2009/9/25개정, 10/1 시행)
    - 협회 심사필을 받은 집합투자증권 투자광고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협회의 광고심의를 면제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으로 환매금액 수령시기, 환매수수료, 판매수수료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시 제출 서류 변경  
(2-19조 1항 : 2009/9/25개정, 10/1 시행)
    - 투자권유대행인의 협회 등록 제출서류 중에서 신원증명서를 삭제함
  
  - 100억 이상 펀드에 대한 별도의 비교·공시조항 마련  
(4-83조 : 2009/10/27 개정)
    - 펀드에 대한 비교·공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인 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용실적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함
- 종류형집합투자기구(Class Fund)**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해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뜻하며(자본시장법 231조), 통상 멀티클래스펀드(Multiple - Class Fund)라고 함
-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표되는 운용실적비교공시부터 적용함
    - 운용실적 비교·공시의 공시주기는 1개월임
- 
- 순위표시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변경 (4-85조 : 2009/10/27 개정)

-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펀드의 운용실적에 대한 비교·공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순위표시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선정 기준 중 운용경과기준 및 운용규모기준을 통일시킴
  -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집합투자기구는 평가일 현재 설정원본이 100억 이상(규모기준)이고 운용경과일수가 1년 이상(운용경과기준)이면 순위 표시 대상으로 함
- 그 밖에 순위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요건을 추가함
  - 평가대상 집합투자기구가 10개 이상일 것, 과거와 동일한 유형을 유지하고 있을 것, 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닐 것, 국내투자형이고 추가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표되는 운용실적비교공시부터 적용

**모자형 집합투자기구(Master-Feeder Fund)**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 동일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지는 다수의 펀드(자펀드)의 자산을 하나의 펀드(모펀드)에 모아서 통합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펀드구조라 할 수 있음.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주체가 동일해야 하며,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증권을 취득해서는 안 되며, 자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자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없음

□ 순위표시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등급표시를 삭제

(4-86조 : 2009/10/27 개정)

- 종래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대한 표시방식(AAA~BB)이 신용평가사의 등급표시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펀드수익률에 관한 순위만 표시하고 등급 표시는 삭제함
  - 2009년 12월 1일부터 발표되는 운용실적비교공시부터 적용

□ 토지신탁수익의 선지급 한도 신설

(2-65조 6항, 별표15 : 2009/12/14 개정, 2010/1/4 시행)

**토지신탁**

신탁회사가 신탁의 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유효시설(건물, 택지, 공장용지 등)을 조성한 다음, 처분·임대 등 부동산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신탁을 말함.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차입형과 사업비의 조달(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이 있음

- 토지신탁의 신탁종료 전 지급하는 선지급의 범위가 토지비를 추가한 “신탁수익(신탁이익, 토지비)”으로 확대되는 한편, 신탁수익의 과도한 선지급을 규제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 신탁사업 실적 및 토지신탁 종류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될 수 있도록 재산상 이익 한도 규정에 “선지급 금액 한도 기준”을 마련함
  - 선지급 조건, 선지급 금액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동규정 별표15)하고 해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선지급을 금지
  - 금융투자회사의 일반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용되는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 및 금융투자회사 연간 총 한도의 적용은 배제

□ 집합투자증권의 대고객 통보 내용 개선

(2-11조 : 2009/12/14 개정, 2010/4/1 시행)

- 종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에 대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내역 및 평가금액 등에 대한 통보의무만을 부담(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1조)하고 있었으나,
-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펀드규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대고객 통보사항에 “순자산총액, 설정원본 및 적용법률”을 추가함

- 펀드규모는 집합투자회사가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 및 본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왔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회사의 통지내역에도 추가

##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 소규모 회사에 대한 주요 경영상황 공시의 완화

(별지 2호 : 2009/5/20 개정 · 시행)

- 주요 경영상황 공시사항 중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일 기준 자기자본 10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3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공시하도록 완화함
  -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 이상 타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집합투자기구 영업보고서 및 자산운용보고서

(별지 6호·9호 : 2009/5/20 개정 · 시행)

- 집합투자기구 영업보고서의 제출주기를 연장
  -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 “ 2월 ” (자본시장법 적용펀드에만 적용)
- 집합투자기구 자산운용보고서의 제출주기를 연장
  - 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 → “ 2월 ” (자본시장법 적용펀드에만 적용)

###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삭제

(51조 2항~3항 : 2009/7/21 개정, 11/2 시행)

- 채권종류별 잔존만기별 시장수익률 공시중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 채권평가회사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제출서식 규정

(55조, 별지 44호 : 2009/7/21 개정, 11/2 시행)

- 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포함되는 채권의 종류와 잔존만기를 별지 서식으로 지정

### 3.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 제출 범위의 구체화 (10조 : 2009/2/26 개정, 3/9 시행)

- 고객의 추가예탁금 미납 또는 결제불이행시, 회사가 고객의 포지션을 강제 반대매매함에 있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의 호가 제출 범위를 구체화함

□ 약관 등 중요사항 변경시 고객 통지의무 강화

(12조, 19조, 22조, 28조 등 : 2009/2/26 개정, 3/9 시행)

- 예탁금 이용료 지급 기준, 결제조건 등의 변경, 약관의 변경 등의 경우에 “영업점과 전자통신매체” 모두에 게시하도록 함

□ 국채등 상품도 기본예탁금제도 적용

(5조~7조 : 2009/4/24 개정, 4/27 시행)

- 기본예탁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는 국채등 전용계좌를 폐지하고, 국채상품, 통화상품 및 금선물에 기본예탁금을 징수

\* 국채등 상품 : 3, 5, 10년 국채선물, 통안증권선물, 통화선물·옵션, 금선물

□ 약관변경 권고 거절시 제정·변경 의사 철회 간주조항 삭제

(8조 4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의 약관변경 권고를 거절하거나 그 수락 여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을 삭제

□ 약관 변경시 인터넷홈페이지 등 공시의무 부여

(별표1 15조, 별표2 28조, 별표3 13조, 별표4 16조 등 : 2009/8/28 개정, 9/1 시행)

-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하던 종래의 직접 통지 의무 이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의무를 추가 부여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별표2 20조 4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거래내용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10거래일 이내로 제한하고 동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하던 조항을 삭제
  - 약관규제법상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를 통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에 해당

□ 증권 대차거래 약관 (별표5 8조 5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주식 대차거래시 담보비율을 130%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던 조항을 삭제
  - 대차 거래시(전문투자자간 거래 제외) 최저 담보비율 100% 조항은 유지

2008년 9월 금융위원회가 증시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함에 따라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도 담보비율을 130%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에 마련함. 그러나 2009년 5월 증시가 안정화되자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해지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주식 대차거래시 130% 이상 담보비율 유지 조항도 폐지함

□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약관

(별표6 9조 1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투자매매업자등은 고객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통장 또는 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에게 조건부매도증권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

□ 수익증권판매회사의 저축금 이용료 지급의무 부여

(별표11 6조 4항 : 2009/8/28 개정, 9/1 시행)

- 수익증권판매회사가 저축금 이용시 그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을 개정

□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 약관

(별표13 5조·17조 : 2009/8/28 개정, 9/1 시행)

- 종래에는 고객의 대리인 변경 통지 도달 이전에는 종전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한 거래를 고객의 지시에 의한 거래로 간주하였으나, 금융투자회사가 대리인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간주조항 적용을 배제함
- 주문체결결과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결제대금의 추가납입 등의 통지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기간 및 기타 회사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기간 제한규정을 삭제
  - 이의제기기간 제한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문에 해당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 약관

(4조~5조, 8조~9조 : 2009/8/28 개정, 9/1 시행)

- 위탁증거금 및 유지증거금 징수기준을 명확화

- 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고지 의무 부여
  - 투자자가 FX마진거래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일중매매거래 관련 위험을 고지하도록 명시
-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여

□ “일정금액 인출식” 저축계약 신설 및 환매수수료 우대사유 추가

(별표11 5조 3항 1호 : 2009/9/25 개정, 10/5 시행)

- 거치식 저축의 종류에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할 수 있는 ‘일정금액 인출식’ 저축계약을 추가함
  - 인출금은 수익금이 발생한 범위 내로 함
  - 일정금액 인출식 저축계약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 증권 환매시 환매수수료를 면제

□ 적립식저축의 저축기간 및 목표식저축의 목표금액 조정 허용

(별표11 5조 3항 : 2009/9/25 개정, 10/5 시행)

- 적립식저축의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 없이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저축기간의 연장 또는 저축금액(저축목표금액)의 감액 또는 증액을 허용함
  - 적립식저축 :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저축기간의 만기 도래와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기간도 일정기간 이상으로 하여 만기개념을 없앴
  - 목표식저축 :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저축목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저축자의 요청에 따른 저축기간·저축금액·저축목표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별도의 고객 정보확인 절차는 생략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또는 저축금액을 정하는 경우는 저축자의 자율적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세금 정산목적 환매·재매입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별표11 9조 6항 : 2009/9/25 개정, 10/5 시행)

- 세금 정산 목적의 환매·재매입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및 판매수수료를 면제함
  - 재매입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 기산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기산

□ 약관의 불리한 변경시 고객과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표준약관 공통 : 2009/11/4 개정, 11/16 시행)

-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는 반드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를 통지하도록 함
  - 변경 내용을 통지받는 고객의 수신가능성 및 편의성 향상
- 이러한 개정 사항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기재된 표준약관에 반영
  - 매매거래설정약관(15조),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28조),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13조), 신용거래약관(16조),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14조),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7조) 등

□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글로벌거래 수탁거부 사유로 지정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5조 1항 8호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회사가 정한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를 통하여 코스피200선물시장의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도록 함
  - 회사는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예탁총액 및 예탁현금, 미결제약정 수준을 감안하여 일별로 글로벌거래참여계좌를 지정하여 거래소에 통보해야 함

-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수탁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항 4호)

□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신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별첨 2조~6조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글로벌거래 참가신청 방법 명시

- 위탁자가 글로벌거래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한국거래소 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14조의2 2항)에 따른 “글로벌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고객의 거래편의를 위해 서면 이외에 공인전자서명의 방법으로도 계약체결을 허용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114조의2 2항)**

- ① 글로벌거래 참여에 관한 사항
- ② 글로벌거래 관련 예탁총액·현금에 대한 인출 제한에 관한 사항
- ③ 글로벌거래의 주문의 수탁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글로벌거래 관련 인출제한의 기준 명시

- 정규거래 종료 후 회사가 정한 시간동안 글로벌거래와 관련하여 기본 예탁금액과 파생상품계좌에 위탁증거금 소요액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등에 대해서는 인출을 제한함
-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전 회사가 정한 시간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일별 글로벌거래 참여계좌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도록 함

— 글로벌거래 주문의 수탁방법

- 고객은 전자통신방법 중 컴퓨터통신(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한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함

— 글로벌거래 참가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의 동의

- 글로벌거래의 참가고객이 회원공동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글로벌거래의 개장 및 운용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거래소가 제공받음에 있어서 해당 고객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함

— 글로벌거래의 중단사유

- 거래소시스템 또는 회원시스템 장애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음
- 회원의 과도한 호가제출로 거래소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글로벌거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가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탁한 해당 주문은 체결되지 않음

□ 글로벌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의 산출시점 명시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9조 1항 : 2009/11/27 개정, 12/14 시행)

- 글로벌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을 글로벌거래 종료 후 별도로 산출하지 않으며, “당일 정규거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산출함

#### 4.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외국증권예탁증권에 대한 대표주관계약 체결 의무 부과

(3조 1항 : 2009/2/28 개정, 3/9 시행)

- 주식 이외에 외국증권예탁증권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시에도 대표주관계약 체결의무 부과

□ 채권발행시 실적공시 확대 (18조 1항 : 2009/2/28 개정, 3/9 시행)

- 채권 발행시 사모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채권발행 주선인의 경우에도 실적공시 의무화

□ SPAC 주관회사의 수수료 수취 방법 제한

(3조 2항 : 2009/12/23 개정, 12/24 시행)

- 발기인인 금융투자회사가 SPAC의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관회사의 수수료 중 50% 이상은 SPAC의 합병 성공이후 수취하도록 의무화함
  - 원칙적으로 대표주관계약에서 주관업무 수수료는 발행회사와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별도의 규제가 없으나, 수수료 취득만으로 목적으로 하는 SPAC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한 것임

□ SPAC에 대한 주식 주관회사 제한의 예외 인정

(6조 1항 : 2009/12/23 개정, 12/24 시행)

-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기업공개 및 장외법인 공모시 주관회사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 SPAC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식 주관회사 제한규정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도록 함
    - 발기인 투자매매업자가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지고 SPAC 투자를 주도하도록 하는 취지를 살리려는 조치의 일환

□ SPAC에 대한 공동주관회사 제한 예외 인정

(6조 4항 : 2009/12/23 개정, 12/24 시행)

-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자신과 자기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5% 이상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및 장외법인을 공모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와 이해관계 등을 가지지 않은 다른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SPAC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공동업무수행규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함
  - SPAC 관련 know-how가 경쟁사로 유출될 우려를 방지하고, 받기인이 책임지고 IPO까지 진행시키는 SPAC의 특성을 고려한 것임

## 5.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사유의 합리적 조정

(2-15조 : 2009/3/24 개정, 4/6 시행)

- 금융투자전문인력에 대한 제재의 정합성 및 명확성 제고를 위해, 제재사유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본시장법령 등으로 한정
  -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무관한 법령위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제재사유를 삭제

### □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정의 (1-3조 : 2009/7/10 개정 ·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52조의2)상 파생상품펀드 관련 근거조문의 신설 사항을 반영하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정의를 개정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취소 후 재접수 허용 (별표 6 : 2009/7/10 개정 ·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인력 수급 및 응시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자격시험의 원서 접수기간내에서는 접수 취소를 한 후에도 재접수 허용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협회 등록 유예기간 확대

(1-4조 : 2009/8/28 개정 · 시행)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교육대상이 아닌 자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협회 등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 증권펀드투자상담사의 교육대상이 아닌 자 : 펀드판매 예비인가신청 준비회사의 임·직원 및 일반인
  - 비 교육대상의 경우 시험합격 후 2년 이내에 협회등록시에만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등록기한내 미 등록시 자격요건이 소멸됨

□ 투자권유자문인력제도 개편

(1-3조 1호, 1-4조 1호~4호, 3-1조 1호, 부칙 3조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Investment Advisor)**

일반적으로 “투자상담사”라 하며,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종래에 8개로 세분화되어 분류되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겸영사, 전업사의 영업현실을 고려하여 펀드, 증권, 파생상품의 3종류로 단순화하여 분류함
  -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재분류함
  - 종래의 투자자문상담사는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에 포괄하고, 전문투자자문상담사는 투자상담사(증권, 파생)에 포괄하여 운영하도록 함

기 준	개 정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투자상담사(펀드 or 증권 or 파생)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상담사(증권 or 파생)

- CMA 투자권유자격 단일화( : 2009/12/1 개정 · 시행)
  - 종래에는 CMA 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의 자격을 별도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증권투자상담사”로 통합함
- 시험의 종류를 펀드, 증권, 파생상품의 3종류로 단순화하여 시행함
  - 증권펀드 · 파생상품펀드 ·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펀드투자상담사시험”으로 통합하고,
  -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에 대한 시험은 유지
- 경과조치
  -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보유자는 통합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더라도 증권펀드 취급을 허용하되, 통합자격 보유를 위한 전환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 펀드투자상담사시험 사전판매교육의 폐지

(1-4조 1호, 5-2조 3항, 부칙 3조 5항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종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던 의무 사전교육은 폐지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등록교육으로 전환함

□ 투자운용인력제도 개편

(1-3조 3호, 1-4조 5호, 3-1조 4호, 부칙 9조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종래에 4개로 세분화되었던 투자운용인력을 “투자자산운용사(펀드 매니저)”로 명칭을 통합함

- 명칭을 일원화 하되, 투자운용을 하는 대상 자산(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에 따라 등록요건을 달리함

기 존	개 정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 투자 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의 시험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으로 통합함

- 일임투자자산과 집합투자자산운용사(금융투자상품자산운용사)간에 업종 전환시에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의 부분 응시를 통해 통합자격을 부여함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투자운용사의 자격요건(시험, 경력, 교육)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제도 개편

(1-3조 2호, 1-4조 4호, 1-5조 3항, 5-1조 2항, 5-2조 5항, 5-5조 1항 2호, 부칙 8조 2항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Certified Investment Advisors Manager)**  
 “투자상담관리인력”이라 하며,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해당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소속된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 투자상담관리사에 대한 별도의 시험 폐지

- 별도의 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증권)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을 전부 취득하도록 하고,
  - 다른 보수교육주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상담관리사 등록자에 대해서는 등록교육 및 연 1회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함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에 대한 등록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선정하여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 경과규정
- 동 규정의 시행 당시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에 합격한자는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간주하고, 투자상담관리인력에 관한 보수교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면제함
  - 다만, 시행 1년 이내(2011/2/4)에 투자상담관리인력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투자상담관리인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투자분석사제도 개편

(1-3조 4호, 1-4조 6호, 3-1조 5호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금융투자분석사(Certified Research Analyst)**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애널리스트”라고 함

- 자격시험을 유지하되, 금융투자분석사의 준법의식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요건을 확대함
- 종래에는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만을 금융투자분석사의 자격요건으로 하였으나,
  - “금융투자분석사 시험 합격자,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보조업무 종사자,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자,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분석교육과정 수료자”로 확대함

□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제도 개편

(2-15조 1항, 2-16조, 부칙 13조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펀드관계회사인력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금융투자회사 인력이 아닌 펀드관계사 인력이므로 금융투자회사 전문 인력에서 제외함

기 존	개 정
집합투자재산계산사	펀드사무관리인력
집합투자기구평가사	펀드평가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자산평가분석사	채권평가인력

□ 재무위험관리사제도 개편

(4-1조 1항~2항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재무위험관리사에 대한 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어렵고 관련 전문 인력이 시장에 충분치 않아 업무영위를 위한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자율자격시험으로 전환함

□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

(3-11조, 부칙 12조 : 2009/12/1 개정, 2010/2/4 시행)

-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의 자격시험의 유효기간을 도입함
  - 시험합격 또는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험의 재응시를 강제화

□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의 등록제도 도입

(1-4조 2호 다, 5-5조 1항 1호, 부칙 5조: : 2009/12/1 개정·시행)

-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 없이 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의 자체로 이루어지는 등록 교육을 통해 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 6.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 협회의 통지기간 명시 (13조 4항 : 2009/4/24 개정 · 시행)
  -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종결사실에 대한 통보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
    - 분쟁조정 절차상 협회는 당사자의 자진취하 등의 사유 발생시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종결처리하고 그 결과 및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함
  
-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의 자료 제출 및 보완기간 명시 (12조 1항 : 2009/4/24 개정 · 시행)
  -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사실조사를 위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그 자료의 제출 및 보완 기간을 명시함
    -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기간 : 14일 이내
    - 당초 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 : 7일 이내
    -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연장 가능

## 7.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설치 (8조의2 1항 : 2009/3/24 개정 · 시행)
  -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자율규제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자율규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8조의2~3 : 2009/3/24 개정 · 시행)

- 자율규제자문위원회는 협회 정회원의 대표이사, 학계·연구기관의 외부전문가 등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율규제 관련사항에 대해 의견 제출

□ 신상품 보호 (5조 2항 : 2009/5/29 개정, 6/10 시행)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신설된 “신상품 보호(2편 7장)”를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규정으로 추가

## 8. 장외주식의 호가증가에 관한 규정

□ 계좌설정시 위탁자정보 추가 (17조 2항 : 2009/3/20 개정, 3/23 시행)

-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확인하는 사항을 반영
  -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 보유 여부, 국내거주 여부 사항 등

□ 호가 제출사항 추가 (25조 2항 12호 : 2009/3/20 개정, 3/23 시행)

- 국내거주 여부 사항 및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의 보유 여부 구분 반영

□ 투자자분류코드 세분화 및 변경 (별표3 : 2009/3/20 개정, 3/23 시행)

- 투자자 속성과 무관한 외국인투자자분류코드(9000) 폐지
  -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속성(은행, 보험, 개인 등)에 따라 구분코드 입력·관리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7000)와 기타법인(7100)을 별도 코드로 구분 관리